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Child Handover Orders

– *Focusing on Child Return Proceedings under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nd Child
Handover Proceedings under the Family Litigation Act in Korean* –

연구책임자: 심 병 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연구참여자: 김 성 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양 승 욱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정 관 선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4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xii
Abstract	xi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개요, 범위 및 방법	5
I. 연구의 개요	5
II. 연구 범위	6
1.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과 인도집행의 개념 정립	6
2. 국내 법제 및 현황 분석	6
3. 비교법적 고찰	6
4. 구체적인 집행 사례와 인터뷰 분석	7
III. 연구 방법	7
1. 문헌 연구 및 실무자 인터뷰	7
2. 비교법적 분석 및 정책 제언	7
 제2장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	 9
제1절 개관	11
I.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와 집행	11
II.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유아의 인도 의무’의 의미	12
제2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14
I.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집행의 필요성	14
II.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성립	16
1.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16
가. 양육자의 지정	16
나. 인도청구권의 성립	17
2.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인도청구권	18
가. 한국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18

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가 간 적용	20
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	20
라. 헤이그아동탈취법 및 부속법령의 주요 내용	23
제3장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권의 이행확보수단	27
제1절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29
I.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	29
1. 사전처분	30
가. 의의	30
나. 성질	32
다. 시적한계	33
라. 필요성	33
마. 재판 및 불복	34
바. 사전처분의 효력	34
사. 실효성의 확보	36
2. 이행명령	36
가. 의의	36
나. 성질	38
다. 이행명령의 요건	38
라. 이행명령의 재판	39
마.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40
II. 강제집행	42
1. 강제집행의 국가구제원칙	42
2.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 형태	43
가. 직접강제	43
나. 대체집행	43
다. 간접강제	43
3. 집행기관	44
가. 집행관	44
나. 집행법원	45
다. 제1심 법원	45
4. 미성년 자녀 인도의 집행방법	45
가. 유아인도집행예규(개정 전)	47
나. 유아인도집행예규(개정 후)	52

Ⅲ. 국내 가사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현황	56
1. 개설	56
2.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집행사건	57
가. 집행사건 접수건수	57
나. 집행사건의 집행권원	58
다. 집행사건의 현황 및 진행결과	60
라.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	62
3.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형식 및 내용	63
4. 향후 변화 예상	67
제2절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68
I. 헤이그아동탈취범의 규율	68
1. 사전처분, 이행명령	68
가. 사전처분	68
나. 이행명령	69
2.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인한 유아인도집행예규 적용	69
3.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 불능 등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	70
II.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제정	71
Ⅲ.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 현황	76
1. 개설	76
2.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집행사건	79
가. 집행사건 접수건수	79
나. 집행사건의 현황 및 진행결과	80
다.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	82
제3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사례 분석	84
I.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84
II. 일본의 경우	85
제4절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유아인도집행예규에 대한 고찰	88
I.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및 유아인도집행예규 개정으로 인한 변화	88
1. 제정 및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	88
2.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의 타당성 평가	90
II.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92

제4장 비교법적 고찰	95
제1절 개관	97
제2절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	97
I.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의 내용	97
1. 효율적인 강제집행제도의 정비	98
가. 강제집행 수단의 유형	98
나.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정비	98
다. 가집행 여부	99
2. 집행의 실시	99
II. 모범사례가이드의 요약 및 시사점	101
1. 요약	101
2. 시사점	102
제3절 일본의 법제 및 실무	103
I. 일본의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의 변화	103
1.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실무의 태도	103
2.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과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	104
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	104
나. 헤이그조약실시법 제정의 경위	105
다. 헤이그조약실시법에 의한 제도의 구축	105
3. 집행의 실효성 문제 지적	106
II.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자녀 인도 강제집행의 규율	107
1. 기본적인 방향	110
2. 개정 민사집행법의 내용	110
가. 직접적 강제집행 채택	110
나. 간접강제전치 구조의 신설과 직접적 강제집행의 예외적 허용	111
다.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112
라.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 부적용	112
마. 집행장소 선택의 확대	112
바. 집행관 권한의 명문화	113
사. 집행관에 의한 위력행사의 제한	114
아. 자녀의 심신에 대한 배려의 명문화	115
자. 사전준비 작업 명문화	116
3. 자녀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116
III. 헤이그조약실시법 등의 동반 개정	117

IV. 시사점	118
제4절 독일의 법제 및 실무	120
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120
1. 국제협약과 이행법률 등	120
2. 중앙당국으로서의 연방법무청	121
II. 법원이 아동반환을 명한 경우의 이행확보	122
1.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체계	122
2. 자발적인 반환조치	122
3. 강제집행	122
가. 가정법원의 역할	123
나. 간접강제	123
다. 비례성의 원칙	123
라. 직접강제	125
4. 자녀 탈취에 대한 처벌	128
III. 시사점	129
제5절 프랑스의 법제 및 실무	131
I.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131
1.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관련 법률	131
2. 중앙당국	132
가. 법무부	132
나. 중앙당국의 역할	132
3.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이행확보	133
가. 간접적 수단	133
나. 직접강제	135
4. 탈취 부모에 대한 제재	140
가. 형사상 제재	140
나. 친권 박탈	141
II.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143
1. 개관	143
2.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적 수단	144
가. 강제금(astreinte)	144
나.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145
3. 직접강제	146
4. 인도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147
III. 시사점	147

제5장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개선방향	149
제1절 법률 규정 신설의 필요성	151
제2절 법률 개정 방안	154
I. 가사소송법의 개정	154
1.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명시	154
가. 기존 ‘유아’의 개념 불명확	154
나. 독립된 사건 유형으로 규정	156
2. 집행개시 허가	157
3. 집행개시 허가 요건	159
가. 간접강제 우선	159
나. 직접강제 개시 허가 시 고려사항	161
다. 필요적 심문	162
4. 불복권 보장	163
5. 과태료의 실효성 강화	165
6. 개정안 제안	166
II. 민사집행법 개정 방안	169
1. 가사소송법 개정안과의 관계	169
2. 유아인도집행예규 반영	170
가.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170
나. 집행관의 권한 등	170
3. 제3의 장소에서의 인도집행 허용	172
4. 채권자의 집행 현장 참석	173
5. 강제력 행사	173
6. 강제집행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강제집행의 조화	175
7. 대법원 규칙에 위임	177
8. 개정안 제안	177
III. 헤이그아동탈취법의 개정	181
제3절 관련 규칙의 개정	183
I.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183
1. 개정의 필요성	183
2.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될 사항에 대한 검토	183
가.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	183
나. 집행실시 신청서	184
다. 제3의 장소에서의 미성년자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	184

라. 대리출석 허가 신청서	185
마.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186
바.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187
사. 통역인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참여	187
아.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188
자. 집행조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189
차. 비밀준수의무	189
카. 개정안 제안	190
Ⅱ.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의 개정	198
제4절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 대한 검토	200
제5절 집행 현장에서의 개선방안	202
Ⅰ. 집행 현장에서의 미성년 자녀 복리 우선 및 설득 노력	202
Ⅱ. 집행사건의 관리 현황 및 조서 작성 개선	204
 제6장 결 론	 205
 참고문헌	 209
 부록	 221
[부록 1]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221
[부록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32
[부록 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6
[부록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39
[부록 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	241
[부록 6]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244
[부록 7] 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247

표 목차

[표 1] 집행의 종류와 집행기관	45
[표 2] 연도별 접수건수	58
[표 3] 집행권원의 종류	59
[표 4] 사건 유형별 강제집행 비율	60
[표 5]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 처리현황	61
[표 6] 집행불능 사유 및 비율	61
[표 7] 접수 당시 집행대상 자녀 나이별 인원 및 비율	62
[표 8] 법무부 접수 아동반환지원 연도별 사건 수(2025. 2. 기준)	78
[표 9] 연도별 접수건수	79
[표 10] 헤이그아동반환집행사건 처리현황	80
[표 11] 헤이그아동반환집행사건 집행 시도 현황	81
[표 12]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전 집행 시도 기준 집행불능 사유 및 사유별 비율	81
[표 13]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집행 시도 기준 집행불능 사유 및 사유별 비율	81
[표 14] 접수 당시 집행대상 아동 나이별 인원 및 비율	82

그림 목차

[그림 1] 인도집행조서(집행불능의 경우)	64
[그림 2]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1	65
[그림 3]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2	66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 인도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자녀 인도집행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한국 법제에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산·부동산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82년 제정된 유아인도집행예규를 통해 민사집행법의 동산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 예규는 미성년 자녀의 단순한 거부 의사만으로도 집행을 중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그 결과 한국은 2022년부터 미국 국무부로부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국가’로 지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법원은 2024년 4월,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를 제정·시행하여, 기존 유아인도집행예규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집행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후 2025년 2월부터는 국내 가사사건에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적용되면서, 국내외 사건을 불문하고 집행의 실효성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보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제도 변화의 경과를 분석하고, 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의 입법례 및 집행 실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실효성과 자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규에 따른 규율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입법적 정비が必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가사소송법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집행 개시 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사집행법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 집행관의 권한, 자녀 관련 전문가의 참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대법원 규칙은 이러한 입법을

보완하고 실무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헤이그아동탈취법과 부속법령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단순한 집행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 가족관계의 변화, 국제적 협약 이행이라는 다층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 구조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관련 법제 정비 논의에서 실질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아인도, 자녀인도, 아동반환이행확보, 강제집행, 직접강제, 집행관, 집행법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헤이그아동반환사건,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Abstract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Child Handover Orders - *Focusing on Child Return Proceedings under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nd Child Handover Proceedings under the Family Litigation Act in Korean* -

Shim, Byungjun
Research Officer, JPRI

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al reforms that prioritiz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child handover enforcement procedures, which frequently arise in disputes following divorce or separation. This study further compares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to ensure effective resolution and a child-centered legal framework.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the enforcement of handover orders involving minor children fundamentally differs from property enforcement, as it targets individuals rather than objects. Nevertheless, there are no clear statutory provisions specifically governing such cases. The Child Handover Enforcement Rules, enacted in 1982, stipulat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concerning the delivery of movable property would apply *mutatis mutandis* to child handover cases. However, these rules significantly undermined enforcement effectiveness by stipulating that execution shall be suspended solely due to the child's refusal to comply. This structural flaw also manifested in Hague Child Return Applications under th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nd as a result, Korea was designat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as a “non-compliant country under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starting in 2022.

Accordingly, in April 2024, the Supreme Court of Korea enacted and implemented the

Hague Child Return Enforcement Rules, which apply exclusively to Hague Child Return Applications under the Child Abduction Convention. These rules excluded the previous Child Handover Enforcement Rules, clarified the authority of enforcement officers, and institutionalized the involvement of child-related professionals, among other measures design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procedures. Beginning in February 2025, a revised version of the Child Handover Enforcement Rules—with provisions nearly identical to the Hague Child Return Enforcement Rules—was formally applied to general domestic family cases. This policy shift, which expanded the scope of enforcement regardless of whether cases were domestic or international, marked a step-by-step institutional reform aimed at addressing persistent problems of weak enforceab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progression of the abovementioned institutional changes and conducts a comparative review of the legislative frameworks and enforcement practice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Germany, and France.

The study concludes that current rules alone are insufficient to ensure effective enforcement of child handover orders an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highlighting the need for the following legislative reforms.

First, the Family Litig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establish a statutory basis for child handover enforcement and to require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family court before execution begins. Second, the Civil Execution Act should explicitly codify the procedures for enforcing child handover orders, including—but not limited to—the authority of enforcement officers and the involvement of child-related professionals. Third, the Supreme Court Rules should be revised to support these legislative changes and to ensure consistency and stability in judicial practice. Fourth,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nd its subordinate rules should also apply *mutatis mutandis*.

In conclusion, the enforcement of child handover orders is not simply a matter of procedural execution, but a multifaceted aspect shaped by the child's psychological stability, evolving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is study analyzes these complex issue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and proposes a legislative direction for reform. It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legal framework.

Keywords: child handover, securing enforcement of child return orders, compulsory enforcement, direct enforcement, enforcement officer, enforcement court,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ague Child Return applications, Family Litigation Act, Civil Execution Act

국내외 법률, 규칙 등 약어표

가사사건절차법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독일)
국제가사사건절차법	국제 가족법 분야 특정 법적 수단의 이행 및 시행을 위한 법률(독일)
법정질서규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유아인도집행예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 (개정 전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헤이그아동탈취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
헤이그조약실시법	국제적인 자녀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조약의 실 시에 관한 법률(일본)
협약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라 별거 중이거나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혼의 증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녀를 둘러싼 분쟁은 늘어나며 분쟁의 강도 역시 세지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자녀탈취문제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재판 및 강제집행절차에까지 나가게 된다. 이때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탈취한 경우라면 한국이 2012년 가입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이라 한다) 등이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다.

한편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미성년 자녀를 인도받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과는 달리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절차이므로 기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과는 차이점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집행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종래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헤이그아동탈취법 등에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강제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국내 가사사건 및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인도(또는 반환)를 명한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¹⁾에 관하여는 1982년 제정된 재판예규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이하 ‘유아인도집행예규’라 한다)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위 예규는 유아(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를 인정하면

1) 민사집행법은 직접강제 방식의 인도집행을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제257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제258조) 등과 같이 ‘청구의 집행’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자녀 인도와 관련된 강제 집행 절차를 보다 간결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인도청구의 집행’은 ‘인도집행’, ‘반환청구의 집행’은 ‘반환집행’이라 한다.

서도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집행현장에서 미성년 자녀가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집행관에게 표시하는 경우 집행불능으로 처리되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완료율이 저조한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를 이유로 한 국내의 인도집행불능 또는 집행지연의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고 미국 국무부는 이를 이유로 2022년부터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한국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국가로 등재하였으며 국내외 언론에서도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물론이고 국내 가사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불능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종전 유아인도집행예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이하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라 한다)를 제정해서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위 예규가 적용되는 아동반환사건의 집행절차에는 집행 현장에서 아동의 인도 거부 의사 유무를 묻던 집행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종전 유아인도집행예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집행관이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갖는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아동 인도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집행보조자 규정을 마련하였다. 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시행 이후 그동안 아동의 인도 거부 의사를 이유로 집행불능 또는 집행지연되었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중 일부가 집행에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만으로 충분한 규율일 수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은 2013년 「국제적인 자녀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조약의 실시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조약실시법’이라 한다)의 제정,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 및 헤이그조약실시법의 개정을 통해 자(子)의 인도의 집행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관한 규율을 정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집행관들도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물론이고 국내 가사사건에서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도 법률로 명확하게 규율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래의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종래의 유아인도집행예규를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이제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만을 이유로 집행불능 처리하는 국내 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 가사사건 및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비교법적 고찰 등을 통해 미성년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입법론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개요,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개요

본 연구보고서는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과 인도집행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이혼이나 친권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법적 권리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관련 법령과 실무를 분석하여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법적 기반과 실무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 및 일본, 독일, 프랑스의 법제 및 실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문상 용어 ‘유아’를 ‘미성년 자녀’로 명확히 하고 가정법원을 집행법원으로 정하는 등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집행관의 권한 및 자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

하는 방안 등과 민사집행규칙에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도 준용하도록 하였다.

II. 연구 범위

본 연구보고서는 네 가지 범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1.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과 인도집행의 개념 정립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권의 법적 개념과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국내 가사소송 및 집행 사례, 헤이그아동탈취법에 의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조명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2. 국내 법제 및 현황 분석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관련 이행확보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최근 10년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례의 통계를 분석하여,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집행관의 실무 운영 방식도 검토하여 법제상 미비점과 실무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3. 비교법적 고찰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모범사례가이드를 참고하여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집행에 있어서의 국제적 사례를 확인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관련 법제 및 집행 실무를 비교하여 이들 나라의 법률과 제도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으며 강제집행이 미성년 자녀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강제집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4. 구체적인 집행 사례와 인터뷰 분석

실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집행관,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자녀 관련 전문가,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상담위원 등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 법률 및 정책 분석, 인터넷 사이트 검색, 실무자 인터뷰 등을 결합한 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1. 문헌 연구 및 실무자 인터뷰

국내외 법률 및 판례,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본 법무성, 독일 연방법무부, 프랑스 법무부 등의 공식 법률 사이트에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하였다.

실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자녀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행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2. 비교법적 분석 및 정책 제언

일본, 독일, 프랑스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김성화 조사위원이 일본의 법률과 제도를, 양승욱 조사위원이 독일의 법률과 제도를, 정관선 조사위원이 프랑스의 법률과 제도를 각각 조사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인도집행 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제 2장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분쟁

제1절 개관



I.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와 집행

혼인관계의 파탄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방식과 책임 분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 대한 쟁탈전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쌓인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복수심이 결합되면, 분쟁은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법적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 간 대립으로 인해 부모 자신도 심리적 고통을 겪지만, 무엇보다도 부모 사이의 자녀 쟁탈전 속에서 미성년 자녀는 자신을 두고 벌어지는 부모의 갈등을 목격하게 되고, 이는 안정적인 정서적 환경을 제공받아야 할 시기의 자녀에게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자녀는 한쪽 부모와의 이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며,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자존감은 하락하고, 심리적 건강 역시 크게 위협받게 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기 어렵다. 한쪽 부모가 다른 부모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자녀는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며 자신이 어느 한쪽 부모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신뢰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를 둘러싼 쟁탈 분쟁은 단순히 친권, 양육권 문제를 넘어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부모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처럼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 및 그 집행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리의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는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등의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부부간 자녀

탈취 사안에서는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등에 부수하지 않고 유아인도 심판청구와 같은 독립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에 수반하여 국제결혼의 파탄도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의 파탄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자녀를 탈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은 부모에 의한 자녀의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²⁾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헤이그아동탈취법³⁾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II.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유아의 인도 의무’의 의미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학계와 실무에서는 ‘유아인도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유아(幼兒)⁴⁾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⁵⁾을 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유아의 인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감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 불이행의 유형으로 ‘유아의 인도’ 의무 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인도청구의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비교적 어린 나이의 미성년인 자녀이고, 가사소송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유아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1980. 10. 25.에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을 채택하였다. 이 다자간 조약은 아동이 국경을 넘는 불법적인 강제 이주 및 그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신속한 반환 절차와 접근권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child-abduction> (2025. 6. 23. 최종 확인).

3) 이 법은 2012년 12월 11일에 법률 제11529호로 제정되었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아(幼兒)는 ①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 ② 나이가 적은 아이. = 어린아이를 말한다.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5. 6. 23. 최종 확인).

5) 법률에서 이렇게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을 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쟁 해결이 지연될 경우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의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⁶⁾⁷⁾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유아의 인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인도청구나 집행의 문제가 단지 '유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가사소송규칙 제99조의 제3항은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아'만 인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고⁸⁾ 최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에서도 판결 및 결정에서 가집행을 명하는 인도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이행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의 인도 의무'를 '미성년 자녀의 인도 의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점⁹⁾ 등을 고려하면 인도청구권의 대상을 사전적 의미의 '유아'로 한정하는 종래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 실무에서는 가사소송법상 '유아'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 또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인도를 명하는 주문을 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즉 가사소송법상 '유아'는 사전적 의미의 '유아'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 실무상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사전적 의미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 단계에 적용되는 유아인도 집행예규에서도 유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인도심판, 유아인도집행 등의 용어는 실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용어이며 이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에게 인도하는 절차 전반을 지칭하는 익숙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가사소송법

6)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494.

7) 이러한 의견에 따르는 하급심 판례로는, 예를 들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2. 28. 선고 2011드합119 판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아의 인도 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사건본인들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은 유아가 아니며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연령에 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가정법원 2014. 10. 29.자 2013노단 3878 결정 “미성년인 자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권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데, 사건본인은 ... 현재 만 14세에 이르렀고 심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의 사건본인 인도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4. 12. 19.자 2014즈기195 결정 “사건본인은 ...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유아인도청구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이 있다.

8) 김운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고찰”, 실무연구 -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자료집 Ⅷ, 서울가정법원 (2002), 171.

9) 정부가 2022. 11. 10. 제안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의 내용이며, 위 법률안은 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다만, 이하의 논의에서는 여전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라는 용어를 미성년 자녀 또는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집행에 있어서는 2024년 제정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가 적용되고 기존의 유아인도집행예규는 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는 유아인도,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아동반환으로 집행 절차에 있어서 용어가 구별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유아’를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의 개정이 있기까지는 국내 사건의 경우 종래에 사용하던 유아인도라는 용어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아동반환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두 유형의 사건을 통칭하는 용어로는 미성년 자녀 또는 자녀,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외의 국제협약 등에서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협약과 관련된 설명에 있어서는 편의상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2절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I.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집행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을 전후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쟁탈 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부부 간 합의 없이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이동, 유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탈취하는 행위가 약취·유인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바 있지만¹⁰⁾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이동하거나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취·유인행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¹¹⁾ 이처럼 미성

1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1)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

년 자녀 탈취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상의 제재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도 탈취 부모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가 미성년 자녀 탈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한편 가사소송법 및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사전처분, 가처분,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의 제재 등 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탈취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한 미성년 자녀 탈취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¹²⁾ 결국 미성년 자녀의 탈취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성년 자녀를 탈취당한 피해 부모가 탈취된 미성년 자녀를 탈취 부모로부터 다시 반환받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부모가 자력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결국 미성년 자녀의 인도는 재판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실현된다 할 것이다.¹³⁾¹⁴⁾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이 문제되는 경우는 국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를 명하는 재판 또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에서 아동반환을 명하는 재판이 각 인용,¹⁵⁾ 확정된 경우 등이다(확정 전 가집행이 붙은 경우를 포함).¹⁶⁾

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12) “법정서 전처 9번 이기고도 아들 못봐” 4년째 생이별 아빠의 눈물”, 중앙일보 (2023. 8. 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675#home> (2025. 6. 23. 최종 확인).

13) 하성우, “특정주제 집중연구 최종보고서[연구주제 : 미성년 자녀 탈취에 대한 제재, 구제수단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4), 2-4.

14)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부모 중 일방이 혼자 가출하여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가출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처분 결정 등도 포함한다.

16) 제3자가 자녀를 탈취한 경우에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데[송덕수, 제16판 신민법강의, 박영사 (2023), 1639]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민사소송 사안의 경우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II.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성립

1.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

가. 양육자의 지정¹⁷⁾

이혼 및 혼인취소,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824조의2, 제864조의2). 다만 위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3항).¹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는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민법 제837조 제2항).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위 사항들 및 양육기간의 결정,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의 자녀의 인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부모 사이에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제4항). 부모 중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지정하는 자를 동시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부모가 모두 양육을 원하고 자녀도 공동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부모 양쪽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직권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양육사항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항상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때는 국가가 개입하여 양육에 관한 협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심사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양육자 지정청구 사건은 이혼 소송 등에 부수하여 제기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1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재요 가사[Ⅱ] (2021), 1467-1470.

18)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국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청구¹⁹⁾는 양육에 관한 처분 중 하나로서 부모 일방인 양육자가 다른 일방인 비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3항). 이때 제3자는 부모의 한쪽인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육을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자녀를 탈취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²⁰⁾

양육자 지정청구는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인지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변론종결 시까지 병합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의 변경도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법원의 심판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837조 제3항에 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초의 심판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²¹⁾

나. 인도청구권의 성립

양육자 지정 심판(이혼 사건 등에 부수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보호 아래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²⁾

미성년 자녀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의 하나이므로,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그들 사이에서는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자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은 자녀의 인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한쪽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 또

19) 법원이 자녀를 인도하라고 명하는 것은 심판으로도 판결로도 할 수 있다[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493].

20)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495.

2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참조.

22) 주문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변경청구와 함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²³⁾

2.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인도청구권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과정,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 국내의 헤이그아동탈취법과 부속법령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후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인도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한국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부모 중 일방이나 조부모 등과 같이 아동²⁴⁾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아동이 국제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되고 이로 인해 아동과 보호자가 분리되는 것을 국제적 아동탈취(International Child Abduction)²⁵⁾라고 하는데 다문화혼인의 증가에 수반하여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적 아동탈취의 사례가 늘고 있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적으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1980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²⁶⁾을 채택하였는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의 불법한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아동²⁷⁾의 본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12. 12. 13. 가입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89번째 체약국이 되었고 협약은 조약 제2128호로 2013. 3. 1. 한국에서 발효되었다. 협약의 이행을 위한 헤이그아동탈취법과 부속법령도 제정되어 2013. 3. 1.부터 시행되었다.

2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495.

24)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제4조 제2문).

25) 권재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263.

26) 2022. 11. 14. 기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은 103개국이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24> (2025. 6. 23. 최종 확인).

27)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적용된다(제4조 제2문). 따라서 아동의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까지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던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아동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아동이 16세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절차는 중단된다.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Explanatory Report by Elisa Pérez-Vera, HagueConferenceon PrivateInternationalLaw, Actesetdocumentsdela Quatorzième session, vol.Ⅲ, 1980, 425-427).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1996년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우리 법상 아동의 반환은 아동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친권, 보다 정확히는 양육권의 문제에 속하는 사항인데, 국제적으로는 이처럼 특별히 취급되고 있다.²⁸⁾

국제적 아동탈취의 사례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아동을 탈취한 경우,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을 탈취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아동을 탈취한 경우, 탈취당한 부모는 외국에서 자력으로 아동을 찾아내고 해당 외국이 정한 법령에 따라 아동을 되찾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은 탈취당한 부모에게는 낯선 이국의 땅인 반면, 탈취 부모에게는 홈그라운드 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법적 다툼은 탈취 부모에게 유리하고, 탈취당한 부모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먼저 탈취한 쪽이 이기기 쉬운 구도가 되어 실력행사를 조장할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을 탈취해 온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²⁹⁾

불법적인 유괴는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도 문제이다. 아동의 나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은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 같은 또래의 아동들과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보육사, 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이웃 주민들에 둘러싸여 성장해 간다. 아동을 탈취하는 것은 아동이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종래 거주하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이 필요하다.³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불법적인 납치 등이 있을 경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원칙적으로 아동을 우선적으로 상거소국³¹⁾으로 돌려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설령 부모 사이에 양육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상거소국에서의 해결에 맡

28) 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0.

29) 이때 부부의 국적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66].

30)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65.

31)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협약에서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종래 한국에서는 상거소를 “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로 보는데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탈취협약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5].

겨야 한다는 것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불법으로 데려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상거소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법적인 탈취를 억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²⁾³³⁾

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가 간 적용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³⁴⁾을 선언한 체약국³⁵⁾³⁶⁾ 간의 관계에서만 유효하다. 즉, 아동이 서로 가입을 수락한 체약국 간에 탈취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비소급효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령 아동이 일단 비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에 그 국가가 나중에 동 협약에 가입하고 서로 가입을 수락한다고 해도 그때까지의 이동 혹은 유치는 동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³⁷⁾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나라에서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본안판단, 즉 친권자 지정이나 친권행사 방법에 관한 결정 절차를 거쳐 아동반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³⁸⁾

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요 내용

(1)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구성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전문과 총 45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 협약의 범위(제1조 ~ 제5조), 제2장 중앙당국(제6조 ~ 제7조), 제3장 아동의 반환(제8조 ~ 제20

32) 그러나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항상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피탈취 부모에 의한 배우자 폭력과 아동학대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도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나목).

33)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65.

34) 2024년 현재 한국의 가입을 수락한 나라는 총 66개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확인된다. <https://www.hcc.hk/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acceptances/?mid=1204> (2025. 6. 23. 최종 확인).

35)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미체약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에는 아동반환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아동탈취가 사실상 용인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아동을 협약 미체약국인 외국으로 아동이 일시 출국시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동을 탈취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부모도 아동을 데리고는 자신의 모국에 다녀올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36)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적은 가장 많은 나라 순으로 베트남, 중국, 태국이었고, 한국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적은 가장 많은 나라 순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이었다. 그런데 베트남, 중국의 경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미가입 상태이고 태국은 체약국이긴 하나 상호 간에 가입의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인 남편의 혼인종류/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 한국인 아내의 혼인종류/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에 대하여는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easyViewStatis/customStatisIndex.do?vwcd=MT_TM2_TITLE&menuId=M_03_02 참조 (2025. 6. 23. 최종 확인).

37) 석광현/이병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13.

38) 권재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법무부 (2018), 9.

조), 제4장 면접교섭권(제21조), 제5장 일반규정(제22조 ~ 제36조), 제6장 최종조항(제37조 ~ 제4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 전문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하고, 불법한 아동의 이동과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과 아울러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하였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주된 규율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아동반환과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각 체약국 중앙당국의 행정적 지원과 사법 또는 행정당국(이하 편의상 ‘법원’이라 한다)에 의한 아동반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탈취당한 부모는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해 양육권이 침해된 자로서 아동소재지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중앙당국을 통해 아동반환신청이나 그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당국의 지원과 별개로 탈취당한 부모는 현재 아동소재지국의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³⁹⁾ 법원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정하는 반환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리한 후 아동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아동소재지국의 법원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규정된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을 종전 상거소국으로 신속하게 반환하라는 결정⁴⁰⁾을 내려야 한다. 이처럼 중앙당국은 아동반환 절차 전체의 주도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법원은 반환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⁴¹⁾

39) 한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중앙당국을 통해 아동반환신청이나 그에 관한 지원을 받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아동반환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소재파악, 탈취 부모와의 중개, 재판 외에서의 분쟁해결, 반환명령 확정 후의 반환지원 등을 고려하면 먼저 중앙당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0) 다만, 한국의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41) 광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9.

(2) 아동반환의 예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제13조는 아동반환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아동의 일신보호를 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점 또는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각각 입증된 경우와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아동 반환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환 예외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3) 형사적 제재에 관한 규율 부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탈취된 아동의 반환 등에 관한 민사적 측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아동을 탈취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환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탈취 부모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적 아동 탈취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²⁾

(4) 강제집행에 관한 규율 부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반환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환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아동반환을 명하는 중국재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동 탈취 부모의 자발적 이행 또는 강제집행이 실현되지 않는 한 궁극적인 반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환지연은 탈취당한 부모의 가족생활에 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반환이 지연되면 될수록 아동과 소재지국의 유대가 점점 강해지게 되어 결국 아동 반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⁴³⁾ 이처럼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 있어서 신속

42)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범죄구성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4장 비교법적 고찰 중 프랑스, 독일 부분 참조.

43) 권재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264.

하고 확실하게 반환재판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반환의 집행에 관하여는 체약국에 맡기고 있고 별도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단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발간한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강제집행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비교법적 고찰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라. 헤이그아동탈취법 및 부속법령의 주요 내용

(1) 개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2012. 12. 11. 헤이그아동탈취법이 제정되어 2013. 3.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은 제1장 총칙(제1조 ~ 제4조),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제5조 ~ 제10조), 제3장 재판절차(제11조 ~ 제14조), 제4장 보칙(제15조 ~ 제17조)과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3. 2. 28. 제정되어 2013. 3.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총 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이 2013. 5. 1. 제정되어 2013. 5. 1.부터 시행(단, 2013. 3. 1.부터 적용됨)되고 있는데, 이는 총 9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중앙당국의 아동반환 지원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당사자의 아동반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체약국에 중앙당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법무부장관이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있고(헤이그아동탈취법 제4조) 법무부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업무를 담당한다.⁴⁴⁾

44) 국제적 아동탈취와 관련된 법무부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법무부, “국제 아동탈취”, <https://www.moj.go.kr/moj/304/subview.do> (2025. 6. 23. 최종 확인).

(3) 아동반환사건의 재판⁴⁵⁾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의 청구인은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가 된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1항). 상대방은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의 주체로서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한 자(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제2조 제1항)인데 그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제2조 제2항).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상 부모 일방, 후견인, 그 밖의 가까운 친족 등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유괴 등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아동탈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상 반환 대상 아동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아동반환청구 당시 대상 아동이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아동이 16세에 달한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이 종료되므로(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제4조 제2문) 아동반환사건의 심리 중 아동이 16세에 달하게 되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아동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하게 이동 또는 유치된 경우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던 아동이 다른 국가로 탈취된 경우는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의 아동반환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아동이 일단 대한민국으로 탈취되었다가 다시 다른 국가로 탈취되어 아동반환사건의 심판 당시 국내에 부존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1조). 이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므로(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2항)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심리에 있어서는 마류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하며 신속한 심리⁴⁶⁾⁴⁷⁾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규정이

4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177-1185.

46) 협약의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한다(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제2조).

47) 가정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준용되므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⁴⁸⁾ 법원은 아동반환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지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제4조 제2항).⁴⁹⁾

아동반환사건의 제1심 중국재판은 심판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⁵⁰⁾

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헤이그아동탈취법 제14조), 위 기간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또한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한 법원은 심판일·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제5조).

48)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가급적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지향하며 우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제7조). 따라서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구하는 재판이 제기되었더라도 합의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72].

4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79-81.

50)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 제 3장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권의
이행확보수단

제1절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사건에 있어서 가사소송법상 특유한 사전처분, 이행명령 등과 같은 이행확보제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강제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

이행확보제도란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의미한다. 순수한 민사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사건의 재판이나 조정 등은 신분법상의 일정한 법률관계의 확인·형성·변경·소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집행력이 없음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41조, 제59조 제2항 단서 참조).

더욱이 이들 가사사건은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이해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재판의 확정·조정 등의 성립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즉시⁵¹⁾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재판이나 조정 등에 집행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 감정적인 이유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호 간에 불화의 골을 깊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그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형성·변경될 법률관계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 그 실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과 가압류·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의 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 등이다.⁵²⁾

51) 협약의 제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제2조).

5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297.

이 중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와 관련된 사전처분, 이행명령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⁵³⁾

1. 사전처분

가. 의의

가사사건에서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특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조치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명하거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한다.⁵⁴⁾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관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기능한다. 사전처분은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 전의 처분(민사조정법 제21조)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가사조정절차에서는 민사조정법보다 가사소송법 제62조가 우선 적용된다.⁵⁵⁾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인도청구(이혼 사건 등에 부수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의 지정 및 자녀를 임시로 인도하라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사전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53)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이행확보와 사후적 이행확보로 분류된다. 사전적 이행확보는 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되기 전에 그 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신분법상의 일정한 의무 내지 지위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보전적 조치를 취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이 여기에 속한다. 사후적 이행확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등이 성립된 후에 그에 의하여 형성된 의무 내지 지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확보제도를 의미하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금전의 임치 등이 이에 속한다[법원공무원교육원, 가사소송실무 (2025), 168-169].

54)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본안사건이 항소·즉시항고에 의하여 항소심·항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항소심·항고심 법원에서도 이를 할 수 있으나, 본안이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해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법원이 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2. 4. 24.자 2002조합4 결정 참조);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04.

5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298.

과될 수 있다.⁵⁶⁾

사전처분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사건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시양육자의 지정 및 자녀를 임시로 인도하라는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본안의 선취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효과는 본안 재판의 결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조치이다. 특히 자녀가 일단 부모 중 한쪽에게 인도되어 양육되면, 그 상태가 본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상태 유지가 자녀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인도 명령 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판례는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⁵⁷⁾

(사전처분 예시, 신청에 의한 경우)

○○ 가 정 법 원 결 정

사 건	20○○즈기○○○ 사전처분
신 청 인	김갑순 서울 노원구 월계로 ○
피신청인	홍길동 서울 노원구 월계로 ○
사건본인	홍갑돌 서울 노원구 월계로 ○

주 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드합○○○ 사건의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56)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재요 가사[Ⅰ] (2021), 315.

57) 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대법원 2014. 8. 14.자 2014스51 결정 등 참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 . . .부터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임시로 인도하라.

이 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 ○ ○ 인

주의: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성질

사전처분제도의 본래 취지는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사건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가사사건에서의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함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사항을 본안으로 하여서도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본안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며,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보전처분은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처분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고,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서는 이를 할 수 없다.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인 이상 그 시기에 제한이 없고, 그 결정에 집행력이 있다. 결국, 사전처분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처분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본질에 관하여는 이론이 있으나 이행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특수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⁵⁸⁾

다. 시적한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즉,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재판·조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위 내지 권리가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사건에 강한 부수성을 갖는데 그 본안사건이 접수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지위 내지 권리가 형성될 개연성, 즉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의 제기 등이 있는 때부터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소장부분이 송달되기 전에도 사전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판결의 선고나 심판의 고지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으나 상소나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기 전에는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⁵⁹⁾

라. 필요성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사전처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는 그 가사사건에 관한 청구나 조정신청 등이 어느 정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유사한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소명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건 및 사전처분의 다양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라는 것은 사전처분 위반에 과태료의 제재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나 필요성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이다.⁶⁰⁾

5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299-300.

5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03.

60)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03-304.

마. 재판 및 불복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사전처분을 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사전처분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한다.⁶¹⁾ 즉시항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사전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사전처분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뜻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무상 결정문 말미에 ‘주의 :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후에 이 결정에서 정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전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전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전처분을 통하여 앞선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한다.⁶²⁾

바. 사전처분의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와 종기

사전처분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가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판례도 확정시절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 78996 판결 참조). 사전처분의 결정 자체에서 효력의 종기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됨은 당연하다. 실무의 다수는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처분을 할 때 그 종기를 본안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선고 또는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다.⁶³⁾

(2) 효력의 내용

사전처분에 형성력이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된

61) 대법원 2008. 12. 24.자 2006오2 결정; 대법원 2008. 12. 24.자 2008오3 결정 등 참조.

62)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06-307.

6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12-313.

다.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⁶⁴⁾ 따라서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서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사전처분이 있으면 대상자가 그 자녀를 인도할 의무가 생긴다.⁶⁵⁾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⁶⁶⁾ 따라서 상대방이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가사소송법이 사전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집행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⁶⁷⁾ 실무에서는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범위 내에서 사전처분을 하거나 본안재판 과정에서 사전처분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기도 한다.⁶⁸⁾

가사조사관 A

당사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설령 미성년 자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판부에서도 사전처분으로 인도를 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가사조사관 B

양육에 관한 문제 특히 누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감정적 싸움으로 치달는 경우가 많다. 가사조사관들이 양육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좋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는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자녀 인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를 인도하지 않아 강제집행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6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65) 이제정,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실무상 문제점 -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을 중심으로 -”, 실무연구 -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 자료집 VIII, 서울가정법원 (2002), 242.

66)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에서는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 배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법률신문 (2020. 8. 24.), <https://www.lawtimes.co.kr/news/163673?serial=163673> (2025. 6. 23. 최종 확인).

67) 이제정,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실무상 문제점 -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을 중심으로 -”, 실무연구 -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 자료집 VIII, 서울가정법원 (2002), 243.

6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14.

사. 실효성의 확보

(1) 과태료의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요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의 주체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사전처분의 대상자를 가리킨다. 즉, 사전처분에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자를 말한다. 위반행위는 사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는 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⁶⁹⁾

2. 이행명령

가. 의의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하며,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은 재산상의 의무 등의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 등의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⁷⁰⁾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중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는 집행력이 있으며

6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재요 가사[I] (2021), 315.

70) 이행명령은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20.자 2017오519 결정).

로(가사소송법 제41조),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의 두 가지 권리실행의 길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⁷¹⁾⁷²⁾

(이행명령의 예시)

○○가정법원 결 정

사 건	20○○즈기○○○○ 이행명령
신 청 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피신청인	김갑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사건본인	홍갑돌

주 문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 . . .자 20○○느단○○○호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사건의 확정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를 인도하라.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 ○ ○ 인)

주의: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71)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64.

7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명령 등의 순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 제도는 병존하고 채권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387].

나. 성질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의해 이미 성립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민법상의 이행의 최고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권리자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⁷³⁾ 다만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다.⁷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행명령을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게 절차를 우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후견적 지위에 있는 가정법원이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자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행명령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유아 인도와 같이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집행에 많은 제약과 저항이 따르며, 그 자체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서는 강제집행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행명령은 일정한 실효성과 의미를 지닌다.⁷⁵⁾

다. 이행명령의 요건

(1)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 범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한한다.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신분상의 의무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 신분상의 의무는 강제이행에 부적당하고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⁷⁶⁾

(2) 당사자 - 권리자와 의무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즉 권리자는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하여진 권리주체 및

73)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65.

74) 대법원 2016. 2. 11.자 2015오26 결정 참조.

75) 김연, “가사소송법상 효율적인 이행확보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0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17-18.

76)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65.

그 승계인이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⁷⁷⁾

이행명령의 상대방, 즉 의무자는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 비부담조서, 재판상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 의무를 명령받은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⁷⁸⁾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권리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⁷⁹⁾

라. 이행명령의 재판

유아의 인도 의무의 경우 이행명령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 신청에 대한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이행명령을 한다. 이 명령의 성질은 결정이다. 이행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이행명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77) 대법원 2020. 5. 28.자 2020오508 결정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오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78)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66.

79)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67.

이행명령의 발령 여부, 이행명령의 범위 등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 성질상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물론, 신청을 인용하여 하는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의하여 정해진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행명령에 붙인 기한은 실체법적으로 의무이행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 한 이행명령도 잔여 부분에 대한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⁸⁰⁾

마.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러나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는 가정법원 스스로 알기 어려우므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태료 사건은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감치⁸¹⁾

감치를 명하는 재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감치를 명하는 재판사건은 이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이행명령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아니한 때의 두 가지이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감치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②의 유형에 있어서 과태료의 제재와 감치의 제재가 순차로 이루어진다. 즉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자가 그 후에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감치를 명할 수 있다.

80)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70-371.

81)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1), 374-378.

의무자가 감치의 재판기일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를 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를 명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치 결정에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1항). 감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할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이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61조 제3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하 ‘법정질서규칙’이라 한다) 제2조]. 이 재판은 고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감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36조 제3항)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를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감치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은 재판장이 집행명령서를 법원 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교부하고 의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함으로써 한다(법정질서규칙 제21조, 제23조). 감치시설의 장은 수용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가정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법정질서규칙 제23조 제7항).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명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의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감치시설의 장은 의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바로 그 사실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법정질서규칙 제23조 제7항).

실무에서는 감치결정이 집행불능된 경우 동일한 이행명령을 근거로 다시 감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다수의 실무는 새로운 의무이행 위반에 관하여 이행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기다려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⁸²⁾

82)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실제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회 감치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

II.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이 채무자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이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의 공적인 문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는 청구권의 내용과 집행의 당사자가 기재되며,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다.⁸³⁾ 대표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가장 전형적인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중국판결⁸⁴⁾과 가집행선고 있는 중국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미성년 자녀를 인도하라’와 같은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확정 전이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이 집행권원이 된다.

1. 강제집행의 국가구제원칙

강제집행은 자력구제가 아닌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한 집행기관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권자는 집행관 등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한 강제집행에 의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채권자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긴급한 경우(예를 들면 민법 제209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⁸⁵⁾ 따라서 자녀 인도를 명하는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도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집행기관을 통한 강제집행에 의해서 자녀를 인도받아야 한다.

83) 이로 인해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84) 대표적인 집행권원이며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은 주로 판결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판결에 관한 집행규정은 나머지 집행권원에 대하여서도 준용된다[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117].

8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5.

2.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 형태⁸⁶⁾

강제집행을 집행의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이는 강제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이다. 전통적으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가.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집행기관이 그 집행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집행행위로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직접강제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물건인도의무의 강제집행에 적당하다.

나. 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대체적·부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얻어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내용을 실현케 하고, 채무자로부터 그에 관한 비용을 금전으로 추심하는 방법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이는 의무내용을 채무자 자신에게 하도록 시키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가령 건물철거, 차량 수리 등)의 집행에 적당한 방법이다.

다.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86) 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23), 45-46.

는 집행방법이다. 채무 성질상 부대체적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에 어울린다.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의 학계 및 실무의 입장이었다(간접강제의 보충성). 그러나 간접강제 보충성에 대하여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2013년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도채무 내지 하는 채무 일반에 관하여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이행의 길을 열어두었다(일본 민사집행법 제173조 참조).⁸⁷⁾

3. 집행기관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강제집행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의 실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집행기관에는 각기 관할 사항을 달리하는 집행관,⁸⁸⁾ 집행법원, 제1심 법원, 그 밖의 집행기관이 있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각각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상하관계는 아니다. 다만,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감독을 집행법원이 한다.⁸⁹⁾

가. 집행관

민사집행법은 제2조에서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라고 하여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원칙적인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의 가장 고유한 집행업무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또한 동산·부동산·선박의 인도집행도 집행관의 직무이다. 그리고 집행관은 집행 이외에도 문서의 송달 등을 직무로 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집행관에 의한 집행실시는 채권자의 집행위임⁹⁰⁾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으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채권자는 집행위임을 함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

87) 김형석, “강제이행 - 특히 간접강제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63-267.

88) 2022. 12. 31.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집행을 실시하는 전국의 집행관 인원은 450명이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3), 564].

89) 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23), 26.

90)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3조 등에서 집행위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위임이라기보다는 강제집행 신청을 뜻한다[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56].

행관에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나. 집행법원

집행법원은 민사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맡긴 권한, 즉 집행행위의 실시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 등을 그 직분으로 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집행법원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으로(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대부분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하고 있고(그렇다고 사법보좌관이 고유의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재산명시신청절차, 강제관리 등의 업무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 제1심 법원

현행법은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므로 판결기관인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예외적이다. 가령 비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등이 그 예외로 제1심 법원의 직분이다.

[표 1] 집행의 종류와 집행기관⁹¹⁾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법원
실력행사 수반 사실행위	관념적 재판인 채권집행 담당	본안을 고려하여 집행방법 결정
복잡하지 않은 동산집행 담당	복잡한 부동산집행 담당	대체집행·간접강제

4. 미성년 자녀 인도의 집행방법

이혼 사건 등에 부수하여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인용되어 확정(또는 확정 전 가집행이 붙은 경우)되거나 유아인도심판⁹²⁾이 인용되어 확정(또는 확정 전 가집행이 붙은 경우)된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

91) 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23), 26.

9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으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는데(가사소송법 제41조),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에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한 점(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제3항)에 비추어 유아의 인도의무도 위 집행권원에서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본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498].

지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⁹³⁾⁹⁴⁾

그런데 현행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을 어떠한 방법에 의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일본 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있어서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었다.⁹⁵⁾

① 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대해서는 자녀를 유체동산에 준하여 인도할 의무를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의 인도는 동산에 준하여 집행관이 자녀를 억류하고 있는 자의 지배로부터 빼앗아 친권자에게 인수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직접강제설,⁹⁶⁾ ② 미성년 자녀의 인격존중의 면에서 출발하여 자녀를 유체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인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인도청구는 방해배제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친권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로 이해하여 부작위채무의 강제집행으로 대체집행에 의하여 배상금의 지불 등 장애를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거나 간접강제에 의해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는 간접강제설, ③ 일반적으로 직접강제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자녀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는 절충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⁹⁷⁾⁹⁸⁾

국내 집행실무상으로는 일본의 학설 중 직접강제설과 같이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

93)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유아의 인도의무’에 관하여는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중구재판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이며 재판 확정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지연과 남상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곧바로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호)[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2023), 64].

94) 비록 피고가 상소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그 집행력에 의한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 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2016), 122].

95) 국내의 경우 주로 일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일본의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

96) 직접강제설은 다시 ① 자녀의 의사능력 유무를 불문한다는 견해로 자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령이 있다면 집행 기관이 자녀의 의사능력 유무를 집행현장에서 판단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 유무에 대해서는 채무명령의 성립의 재판 절차 중에서 문제삼아야 한다는 견해, ② 자녀의 의사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긍정하는 견해, ③ 자녀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현재 보호자와의 관계가 사물에 대한 지배관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는 견해(이 견해는 영아의 단계만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는 견해, 2~3세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6~7세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10세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등으로 세분된다)가 있다.

97) 김운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고찰”, 실무연구 -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자료집 VIII, 서울가정법원(2002), 183-185.

98) 정지원, “가사사건과 강제집행”,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2014), 89.

인도 절차를 유추적용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⁹⁹⁾을 생각할 수 있었으나, 자녀를 단순한 ‘물건’처럼 취급하여 집행하는 데는 한계와 우려가 있고 자녀의 심리적 충격이나 신체적 안전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반 강제집행과는 다른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1982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유아인도강제집행을 의뢰한 사건에 있어 집행관이 유아인도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수원지 법을 통해 대법원에 질의하였고¹⁰⁰⁾ 대법원은 1982. 6. 7. 직접강제설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아인도집행예규를 제정하였다. 1982년 당시 법률로 직접 구울하기에는 시일이 소요되고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예규 형태로 신속히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집행관이 통일된 기준 아래 집행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제정 경위에는 입법의 공백 보충, 실효적 집행수단 마련, 자녀의 인격과 안전 및 복리 고려 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가. 유아인도집행예규(개정 전)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집행관에 의한 유체동산인도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실무상의 혼란과 당사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이 바랍니다.

다 음

1. 집행의 방법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¹⁰¹⁾¹⁰²⁾에 준하여 집행관이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99) 실제로 유아를 직접강제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유아를 강제차압 실무슬하로 송환”, 동아일보 (1934. 7. 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072000209203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4-07-20&officeId=00020&pageNo=3&printNo=4891&publishType=00020> (2025. 6. 23. 최종 확인).

100) “승소한 「낳은 정」 아들 찾게 됐다/「유아인도」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서 유권해석”, 중앙일보 (1982. 6. 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39932#home> (2025. 6. 23. 최종 확인).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2.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이하 생략함)

1982년 제정된 유아인도집행예규는 조문 형식으로 자녀 인도집행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법상 동산 인도집행 절차 준용 : 유아인도집행예규는 자녀 인도집행을 민사집행법이 정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집행절차에 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지 등에 가서 자녀를 찾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문을 여는 등 동산집행과 유사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직접강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집행상의 특별한 주의 : 자녀 인도집행 시에는 일반 동산집행과 달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명문화하였다. 자녀는 물건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강제 수취할 때 자녀의 정서와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한 것인데 이 조항을 통해 집행관들에게 자녀를 다룰 때 폭력이나 과도한 강압을 피하고, 자녀의 안정감을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유아의 거부 시 집행 불가 조항 : 유아인도집행예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이다. 즉, 자녀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이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유아인도집행예규에서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 집행불가 규정을 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집행이 자녀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¹⁰³⁾ 낯선 집행관에

101)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02) 제정 당시에는 민사소송법 제689조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민사소송법상 민사집행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인 민사집행법으로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689조는 그 내용 중 ‘수취하여’ 부분이 ‘빼앗아’로 변경되어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편입되었다. 유아인도집행예규도 이를 반영하여 민사소송법 제689조를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개정하였다.

103) 1982년 유아인도집행예규의 제정에 있어서 검토 자료나 제정 이유 등은 찾을 수 없었다.

의해 강제로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은 자녀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상당한 연령과 판단능력을 가진 것인데, 이러한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경우 자녀의 복리에 반할 소지가 크다. 1982년 유아인도집행예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강제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자녀의 인격권을 우선하였다는 점은 시대를 앞선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간접강제와 직접강제의 구분 : 유아인도집행예규 자체는 강제집행(직접강제)에 대한 절차를 다루고 있으나, 위 예규 자체에도 직접강제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간접강제의 활용이 권장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유아인도 이행 명령 신청사건 계속 중에 신청인이 강제집행으로 유아에 대한 인도집행을 단행하여 유아를 인도받아 간 사건에서, 직접강제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행명령의 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⁰⁴⁾

한편 집행관의 직무는 독립적인 집행행위와 집행법원에 부수되는 집행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유아인도집행예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은 유체동산의 인도집행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독립적인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행기관은 집행관이 된다.¹⁰⁵⁾¹⁰⁶⁾

유아인도집행예규의 제정 이후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위 예규에 따라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위 예규가 직접적으로 집행현장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집행실무상 집행관들은 집행현장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지를 묻고 있었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현재의 양육자와 살겠다는 의사, 즉 인도거부 의사를 밝히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있었다.¹⁰⁷⁾¹⁰⁸⁾

104) 대법원 2002. 11. 28.자 2002오4 결정.

105)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1), 16.

106) 집행관에 의한 집행실시는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의하여 개시된다.

107) 집행관이 자녀에게 누구와 살 것인지를 묻는 한국 집행실무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단독] ‘딸 뺏겼다’ 프랑스 엄마의 도움 요청, 한국 검찰은 2번이나 외면했다”, 로톡뉴스 (2019. 10. 22.), <https://lawtalknews.co.kr/article/IZA6WF2R689B> (2025. 6. 23. 최종 확인).

108)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를 이유로 한 집행관의 집행불능 처리와 관련하여, 과거 한 채권자가 아이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아이의 나이는 6세 3개월로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며 “아이가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5.자 2013타기 273 결정 참조); “법원 ‘아이 거부하면 유아인도 강제로 못해’”, 조선일보 (2013. 2. 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1/2013021100131.html (2025. 6. 23. 최종 확인).

채권자(모)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실패한 사건의 채권자임)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은 저를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게 아이들에게 안 보이는 곳에 있으라고 한 후 어린 아이들에게 누구와 살 것인지를 거칠게 물었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조모는 왜 우는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냐고 항의했으며 집행관은 집행불능을 선언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아이들과 만났지만 우는 아이들을 달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집행을 해달라고 집행관에게 간청했지만 집행관은 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때 정말 말 자녀 인도집행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집행관 A

채권자에게 유아를 인도해주기 위해 집행을 실시했지만,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유아인도집행예규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아이도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할 권리나 인격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불능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집행관 B

그동안 인도집행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유아인도집행예규로 말미암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인도당하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관이 자녀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작정 인도집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집행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번거롭고 민원인이 경찰이나 법원에 고소, 민원을 제기하면 집행관이 이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법원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곤하고 그에 대해 일일이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집행관은 4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적당히 하다 물러간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전문적인 집행지식의 축적에도 어려움이 있다.¹⁰⁹⁾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지 못한다. 집행 현장에서 침례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건에 있어서도 일단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만일 채무자 등이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굳이 오래 하지도 않을 집행관 생활을 하면서 후임 집행관들을 위해 선례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109) 같은 취지로,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53.

결국 유아인도집행예규와 집행관들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시 자녀의 의사를 묻는 방식의 실무가 복합적인 원인이 됨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재판보다 우위에 서고 재판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도 미성년 자녀의 인격권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불능에 대한 학계나 실무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미성년 자녀 인도의 집행불능, 집행지연의 문제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 협약의 불이행의 문제로 불거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한하여는 위와 같은 집행불능, 집행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집행에 있어서는 기존의 유아인도집행예규의 적용을 배제¹¹⁰⁾하는 내용의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를 제정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¹¹¹⁾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한하여 적용되며,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는 여전히 종전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적용되었다.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A

2024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에 참여를 했다. 자녀가 7살 정도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을 집행 장소로 해서 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아이의 모(채무자)가 오기 전에는 아이를 보여 줄 수 없다고 해서 오랜 시간 기다린 후 아이의 모가 온 후 아이를 인도받아 모와 좀 떨어진 장소에서 인도 의사를 물었는데 모와 살고 싶다고 해서 집행불능으로 처리했다.

한편,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국내 가사사건의 집행에서도 일부 집행관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도입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상의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국내 유아인도집행에 있어서도 적용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현장에 참여시키려고 시도한 사례, 그리고 실제로 참여시킨 사례가 있었다.

110) 대법원은 기존의 유아인도집행예규의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해 집행불능, 집행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위 내용은 새로 제정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에는 넣지 않았다.

111) 이와 관련해서는 제3장, 제2절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B

미성년 자녀 인도 강제집행은 해본 적이 없고 또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헤이그 아동반환집행예규가 제정된 후 미성년 자녀 인도 강제집행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이후 2024년에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에 참여를 했다. 비록 국내 가사사건의 자녀 인도집행이라 아동 관련 전문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채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채권자는 비용 문제 때문인지 거부를 했다.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C

2024년에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에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사건이지만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에 참여했다. 솔직히 집행을 나갈 때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갔는데, 현장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채권자 쪽으로 왔고 아동 관련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며칠 시간을 주면 인도를 한다고 해서 당일은 집행불능으로 처리했고 나중에 약속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아이를 인도해서 마무리되었다.

국내 사건에는 국제협약에 따른 긴급성과 외교적 의무가 없지만, 미성년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제 사건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국내 사건에 적용되는 유아인도집행예규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유아인도집행예규를 개정하여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나. 유아인도집행예규(개정 후)¹¹²⁾**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개정 2025. 1. 15. [재판예규 제1894호, 시행 2025. 2.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예규 내용의 전부가 아닌, 실무상 의미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①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아의 연령, 유아의 양육 및 생활상황,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유아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유아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유아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유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아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유아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유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유아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9조(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유아의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기존 예규를 개정하는 이유로 유아인도심판 등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 유아의 안전과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권한, 집행보조자로서의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조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개정예규와 기존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이며 이외에도 대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규정하고(제3조),¹¹³⁾ 집행관이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규정하고(제4조),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위촉, 해촉,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제5조, 제6조), 집행관의 수수료, 비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제7조),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며(제8조),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제9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아인도집행예규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적용되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아동’을 ‘유아’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유아 관련 전문가’로 바꾸고 그 외의 조문의 내용은 사실상 같다고 보이며 다만 제3조 제2항 “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즉,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과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동일하게 규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예규의 시행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지닌 미성년 자녀의 인도청구 사건에 대해서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했다.¹¹⁴⁾ 즉, 아동의 반환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우선 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는 결국 아동의 복리일 수밖에 없고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전문은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아동의 복리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이든 국내 가사사건이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

113)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자녀의 인격권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는 개정 전 유아인도집행예규의 ‘그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에서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자녀의 인격권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를 통해 자녀의 인격권을 중시하던 종전 예규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114) 김상용,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6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24), 14.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¹¹⁵⁾ 일본의 경우 헤이그아동반환사건과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관의 행위가 사실행위로서 공통점이 있고 인도 대상인 미성년 자녀의 인권 존중 등의 요청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두 사건의 기본적 성격의 차이¹¹⁶⁾를 들어 집행절차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법규제상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실무상 가능한 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¹¹⁷⁾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내 가사사건은 헤이그아동반환사건과는 다르게 국내 환경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아동의 복리만미가 아니라 탈취협약의 목적, 즉 직전 상거소국으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여 그곳에서 양육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가사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사건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¹⁸⁾

대법원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유아인도집행예규를 통합하여 하나의 예규로 만든 것은 아니나 그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 집행실무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예규를 통합하여 하나의 예규로 규율하지 않은 것은, 각각이 서로 다른 법적 배경을 가진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타당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III. 국내 가사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현황

1. 개설

국내 가사사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유아인도청구는 마류 가사

115) 김상용,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6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24), 14.

116) 아동반환사건은 양육권 본안재판과 구별되는 임시적·사전 절차로서의 성격이 있어 국내 가사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등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곽민희,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57].

117)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6, 122.

118) 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00.

비송사건으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미성년 자녀의 인도청구는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인지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그 변론종결 시까지 병합청구할 수 있고¹¹⁹⁾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의 변경도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관련이 있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¹²⁰⁾

미성년 자녀의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이므로,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한쪽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청구와 함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혼한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자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은 자녀의 인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¹²¹⁾

2.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집행사건

가. 집행사건 접수건수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집행관 사무소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위하여 접수되었던 사건의 수는 54건¹²²⁾이었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119)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 중 대부분은 이혼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되고 있고 이 경우 판결로 미성년 자녀 인도를 명하고 있다.

120)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496.

121)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1494.

122) 법원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에 가사사건 중 접수연도 2013년 ~ 2024년, 주문 '사건본인 인도하라', 사건명 '유아인도', '자녀인도', 사건부호 '드단'을 입력하여 추출한 사건과 주문 '사건본인 인도하라', 사건명 '이혼', 사건부호 '드단', '드합'을 입력하여 추출한 사건 및 주문 '사건본인 인도하라', 사건명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입력하여 추출한 사건들 중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사건들을 다시 추출한 후 이를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에서 각각 집행사건조회 검색하여 접수건수를 확인하였다.

[표 2] 연도별 접수건수

접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 건수	1	1	1	6	5	3	4	8	12	6	3	4	54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2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이하게도 2020년부터 2~3년 사이에 자녀 인도집행에 착수한 사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을 전후하여 가사 관련 법률에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거나 양육권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회적 요인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의 증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 전염병 경보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이혼 또는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뉴욕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자녀 양육권 분쟁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육권 및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갈등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부모와 자녀에게 장기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고 한다.¹²³⁾

나. 집행사건의 집행권원

각 접수된 사건들의 집행권원을 보면 40건은 이혼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사건, 10건은 유아인도 심판청구사건, 4건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의 재판이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123) “Parents Face New Custody Conundrums in Midst of COVID-19 Pandemic”, <https://www.gdblaw.com/Parents-Face-New-Custody-Conundrums-in-Midst-of-COVID> (2025. 6. 23. 최종 확인).

[표 3]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	접수건수
이혼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사건	40
독립된 유아인도 심판청구사건	10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사건	4
합계	54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되어, 2024. 12.까지 선고된 유아인도 심판청구사건의 1심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한 사건은 총 62건이다.¹²⁴⁾ 이 중 집행관에 위임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건은 10건이므로 약 16% 비율로 강제집행에까지 나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되어 2024. 12.까지 선고된 이혼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의 1심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한 판결은 합의, 단독 사건 모두 합해 총 560건¹²⁵⁾이었다. 이 중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의 수는 40건이므로 약 7% 비율로 강제집행에까지 나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되어 2024. 12.까지 선고된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의 1심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한 사건은 총 92건으로 이 중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의 수는 4건이므로 약 4% 비율로 강제집행에까지 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유아인도 심판청구사건이나 이혼에 부수한 사건에 비해 인용된 사건의 직접강제 착수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경우, 당사자가 새롭게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합의에 이르거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와 살던 미성년 자녀가 비양육친과 살고 싶다는 의견이 강한 경우, 또는 양육친이 학대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법원이 친권자, 양육자 변경(지정)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에 미성년 자녀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124) 법원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에 가사사건 중 주문 '사건본인 인도하라', 사건명 '유아인도', '자녀인도', 접수연도 2013년 ~ 2024년, 사건부호 '드단'을 입력하여 추출한 내용을 기초로 한 통계인데, 판결문검색시스템에 올라 있지 않은 사건도 있으므로 법원에 접수되어 1심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한 결정 모두를 추출한 것은 아니지만 통계로서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25) 법원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에 가사사건 중 주문 '사건본인 인도하라', 사건명 '이혼', 접수연도 2013년 ~ 2024년, 사건부호 '드단', '드합'을 입력하여 추출한 내용을 기초로 한 통계이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되어 2024. 12.까지 선고된 혼인취소청구 사건 및 친생자인지청구 사건의 1심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한 것이 각 1건이 있으나 강제 집행을 위해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자녀의 인도를 명한 사건 전체 중에서 강제집행에까지 나간 사건의 비율을 사건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이혼에 부수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7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및 인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보여준다. 독립한 형태의 유아인도 심판청구사건은 약 18.9%를 차지하며, 이는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면접교섭 등의 과정에서 자녀를 데려가 양육자에게 인도하지 않음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에 부수한 경우는 약 5.6%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있는 이후에도 사정변경에 따라 친권자(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 유형별 강제집행 비율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사건 유형별 강제집행 비율

사건 유형	비율(%)
이혼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경우	75.5
독립된 유아인도 심판청구의 경우	18.9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에 부수하여 자녀 인도를 청구한 경우	5.6

다. 집행사건의 현황 및 진행결과

접수된 54건 중 1차 집행착수 전에 취하하거나, 집행에 착수했으나 집행불능된 후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¹²⁶⁾ 다음으로 집행에 착수하여 집행완료된 사건은 14건, 집행불능된 사건은 13건, 기타 진행 중인 사건이 1건이었다. 이를 접수 사건 대비 비율로 보면 취하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48.1%로 매우 높았고 집행완료된 사건의 비율은 25.9%, 집행불능된 사건의 비율은 24.1%로 나타났다.

한편 접수된 54건 중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결정을 받은 사

126) 이는 아마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인도했거나 채권자가 집행불능 이후 신청취하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은 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6건은 곧바로 직접강제로 나갔는데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의 취하 비율이 48.1%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행명령을 거쳤다면 상당수의 사건이 직접강제 단계까지 오지 않고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의 처리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 처리현황

유형	사건 수/ 총 사건 수	비율(%)
취하로 종결	26/54	48.1
집행완료	14/54	25.9
집행불능	13/54	24.1
진행 중	1/54	1.9

집행완료된 사건의 경우는 유아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채무자도 자녀 인도에 협조한 경우로 나타났다.

집행불능된 사건¹²⁷⁾의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자녀의 인도거부로 인한 불능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녀의 집행현장 부재가 3건, 채무자의 비협조 내지 거부 1건, 채권자의 연기신청이 1건, 집행불능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행불능 사건 대비 비율로 보면 자녀의 인도거부가 53.8%, 자녀의 부재가 23.1%, 채무자의 비협조 내지 거부 7.7%, 채권자의 연기신청이 7.7%,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7.7%로 나타났다. 집행불능 사유 및 비율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집행불능 사유 및 비율

집행불능 사유	사건 수/ 집행불능 사건 수	비율(%)
자녀의 인도 거부	7	53.8
자녀의 집행현장 부재	3	23.1
채무자의 비협조 내지 거부	1	7.7
채권자의 연기 신청	1	7.7
집행불능 사유 불명	1	7.7

127) 집행조서에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다.

라.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는 1~10세까지 범위로 분포되었는데, 1세가 4명, 2세가 8명, 3세가 8명, 4세가 9명, 5세가 7명, 6세가 9명, 7세가 5명, 8세가 6명, 9세가 4명, 10세가 1명이었다.¹²⁸⁾ 이를 자녀 전체 숫자에 대한 비율로 보면 1세가 6.6%, 2세가 13.1%, 3세가 13.1%, 4세가 14.8%, 5세가 11.5%, 6세가 14.8%, 7세가 8.2%, 8세가 9.8%, 9세가 6.6%, 10세가 1.6%로 나타났다. 접수 당시 집행대상 자녀 나이별 인원 및 비율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접수 당시 집행대상 자녀 나이별 인원 및 비율

나이	인원수/ 총 인원수	비율(%)
1	4/61	6.6
2	8/61	13.1
3	8/61	13.1
4	9/61	14.8
5	7/61	11.5
6	9/61	14.8
7	5/61	8.2
8	6/61	9.8
9	4/61	6.6
10	1/61	1.6

이혼사건, 유아인도사건, 친권자(양육자) 변경(지정)사건에서 자녀인도를 명한 경우 자녀의 연령 분포는 1~16세까지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11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까지는 나간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10세의 경우 1명이 있으나 이마저도 취하되어 사실상 자녀의 나이가 10세를 넘으면 부모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집행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 민사집행법 개정 과정에서 인도집행 대상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인도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집행현장에서 자녀의 의사능력

128) 사건 수는 54건인데 자녀의 수는 61명으로 이는 1사건에서 인도 대상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가 7건 있었기 때문이다.

유무를 집행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 실무에서 1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인도 강제집행이 신청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상 자녀의 연령에 상한을 두는 실익이 적어 인도 대상 자녀의 나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 현재 일본은 나이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다.¹²⁹⁾

집행관 C

자녀의 나이가 10세 정도가 되면 자녀가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녀를 강제력을 사용해서도 인도하기 어렵다. 요즘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신체의 발달 정도도 상당하다. 사실상 10세가 넘은 자녀를 자녀의 의사에 반해서 인도집행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가사조사관 C

가사조사를 하다보면 자녀가 아주 어린애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인 경우 부부가 서로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녀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부부도 간혹 있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는 대부분의 부부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에까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물기는 하나 부모의 이혼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싶으면서, 가사조사관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부모도 있다.

3.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형식 및 내용

집행관통합시스템에는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조서 유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자녀 인도집행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아래의 [그림 1] 인도집행 조서(집행불능의 경우), [그림 2]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1과 같이 새롭게 생성한 수작업 처리정보(형식적 조서)에 간단하게 집행의 기본사항과 결과만을 입력하여 등록하고,¹³⁰⁾ 실제 집행 당시 상황이나 집행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서는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조서만 보아서는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집행장소 및 참여자가 누구인지, 집행 당시의 상황, 집행불능 또는 집

129) 일본 법무성 민사집행분과 제1차 회의 참고자료는 <https://www.moj.go.jp/content/001209872.pdf>, 89 (2025. 6. 23. 최종 확인).

130) 일부 집행관의 경우 수작업처리정보(형식적 조서)에 구체적 집행의 경과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행완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집행관에 따라서는 아래의 [그림 3]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2와 같이 유체동산인도집행조서 등 다른 사건에 사용하는 조서 유형에 작성하기도 했다.

[그림 1] 인도집행조서(집행불능의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작업처리정보(불능)	
사	건 : 2014본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집행일시 :	2014.04.03 14:50
1. 위 집행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집행조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	
2014.04.03	
집행관:	
< 1 / 1 >	

[그림 2]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1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작업처리정보(실시)	
사	건 : 2017본
채권자	:
채무자	:
집행권원	:
집행일시	: 2017.01.12 10:30
1. 위 집행은 2017.01.12 11:05에 종료하였다.	
2. 집행조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2017.01.12	
집행관:	
< 1 / 1 >	

[그림 3]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2

울산지방법원	
유 체 동 산 인 도 집 행 조 서	
사	건 : 2016본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 행 권 원 :	
집 행 목적물 :	위 집행권원 주문에 표기된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다.
집 행 일 시 :	2016.12.02 11:32
집 행 장 소 :	어린이집(전하동)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어린이집원장 을(를) 만나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집행 목적물에 대한 인도집행의 뜻을 알린 다음 위 동인과 채권자 을(를)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 에게 인도하였다. 2. 이 절차는 같은 날 12:15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인에게 읽어(보여)주었다. ※ 1.집행장소 어린이집 원장 을 만나 집행권원을 제시하며 설명 및 안내를 한 바 원장 은 사건본인 의 담임 및 부모로부터 재판결과 및 상황에 대하여 들었다고 하였음. (현재 양육중인 부모로부터 12월20일에 어린이집 퇴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후는 사건본인을 친모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하였음) 2.사건본인 은 채권자를 따라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 3.원장 은 현재 보호중인 모 에게 유선상 연락을 취하여 인도 여,부 의사를 확인한 후 협조하겠다고 하여 모 과 유선통화 확인후 인도에 협조하였음.	
2016.12.02	
집 행 관:	
채 권 자:	
채 무 자:	어린이집원장
참 여 자 성 명:	
주 소:	
참 여 자 성 명:	
주 소:	
< 1 / 1 >	

[그림 3] 인도집행조서(집행완료의 경우) 2의 내용은 앞의 [그림 1], [그림 2]의 각 조서에 비해 집행목적물, 집행장소,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집행 당시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집행관들이 자녀 인도집행 과정에서 작성하는 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각 집행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 그림 3의 조서의 내용 중 채무자를 어린이집원장으로 기재한 부분은 기재 오류로 보이며 집행현장에 채무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도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향후 변화 예상

헤이그아동반환사건과 달리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은 여전히 기존 예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인도거부 의사로 집행불능되는 사건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가사사건에 적용되던 유아인도 집행예규가 개정되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동일하게 정비되었고 종전에 문제로 적시되고 있던 유아의 거부의사를 반영하여 집행불능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집행완료되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I. 헤이그아동탈취법의 규율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반환의 집행에 관하여는 체약국에 맡기고 있고 별도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발간한 모범사례가이드¹³¹⁾ 제4부 강제집행에서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는 헤이그아동탈취법과 부속법령에 규정된 아동반환과 관련된 이행확보수단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전처분, 이행명령

가. 사전처분¹³²⁾

법원은 아동반환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3항). 실무상 이용되는 사전처분의 예로는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출국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 사건본인의 여권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사건본인의 여권에 관한 분실신고를 금하는 것¹³³⁾ 등이 있다.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¹³⁴⁾

131) 체약국에 권고하는 내용이며, 체약국이 모범사례가이드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132)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약식의 절차를 통하여 불법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사전처분이 적절한가는 의문이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규정하였다[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11].

133)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를 보면 사전처분으로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아동반환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동반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여권에 관하여, 가. 위 아동반환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여권을 서로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에 각 임치하고, 나. 위 여권에 관한 분실신고, 그 밖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결정하고 있다(실제 사건의 주문 중 일부임).

134)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도 가사[Ⅱ] (2021), 1181.

나. 이행명령

심판 등에 의하여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3조 제1항).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3조 제2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3조 제3항).

위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를 준용한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3조 제4항). 헤이그아동탈취법이 가사소송법의 위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헤이그아동탈취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반환의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외에 이행명령과 감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³⁵⁾

2.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인한 유아인도집행예규 적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반환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법률인 헤이그아동탈취법 등에도 아동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법원의 심판이 있는 경우, 아동(미성년 자녀)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아동반환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도 종래 국내 가사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적용되던 유아인도집행예규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결국 국내 가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래 미성년 자녀의 인도거부 의사로 인한 집행의 불능 또는 지연의 문제가 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에 있어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135)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재요 가사[Ⅱ] (2021), 1181-1185.

3.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 불능 등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자녀를 탈취해 온 후 탈취당한 부모가 수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있었다.¹³⁶⁾¹³⁷⁾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국에서 아동을 탈취당한 뒤 한국에서 아동반환을 명하는 재판을 받았지만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단계에서 자녀의 인도거부 의사를 이유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내외 신문과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자녀 인도집행 불능(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미 국무부는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2022년부터 한국을 협약 불이행 국가로 등재하였다.¹³⁸⁾¹³⁹⁾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미국 측의 연례 보고서는 불이행 근거로 법원의 아동반환심판 사건 처리의 장기화, 법원의 유아인도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법원 재판예규(재특 82-1)가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각급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집행 시에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 재판예규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원과도 재판예규 개정 검토 등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¹⁴⁰⁾¹⁴¹⁾ 또한 헤이그국제아

136) “강남 한복판에서 러닝머신을 걷는 미국 남자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2023. 3. 26.), <https://www.fnnews.com/news/202303261144562452> (2025. 6. 23. 최종 확인).

137) 송미강, “[기고] 실효성 없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처리규정”, 미주 중앙일보 (2023. 9. 21.), <https://news.s.koreadaily.com/2023/09/20/society/opinion/20230920192451317.html> (2025. 6. 23. 최종 확인); “‘전 부인이 내 아들, 한국으로 납치’ ... 시애틀 한인 제이 성씨, 한국 정부 공개 비판 나서”, 미주 한국일보 (2023. 12. 2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226/1495252> (2025. 6. 23. 최종 확인).

138) “자녀 무단 탈취 한국행 ... 애타는 미국 배우자들”, 미주 중앙일보 (2022. 12. 30.), <https://news.koreadaily.com/2022/12/29/society/generalsociety/20221229222604178.html> (2025. 6. 23. 최종 확인); “[단독]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방한 ... “한국, 개선 여지 없다면 내년에도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 코리아헤럴드 (2022. 12. 5.),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5000711> (2025. 6. 23. 최종 확인); 미셸 버니어-토티, “기고 부모 일방의 아이 탈취, 용납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2023. 2. 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296> (2025. 6. 23. 최종 확인).

139) 미 국무부는 2025년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을 4년 연속으로 협약 불이행 국가로 등재했다. “미 국무부, ‘부모의 아동납치 방지협약 불이행 국가’에 한국 포함시켜”, 뉴스1 (2025. 5. 3.),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772812> (2025. 6. 23. 최종 확인).

140) 법무부, (보도설명자료) 모 언론,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 ... 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https://moj.go.kr/bbs/moj/183/570421/artclView.do> (2025. 6. 23. 최종 확인).

141) “한국, 2년째 ‘아동 탈취국’ 오명...“법무부 문제점 개선 노력””, 파이낸셜뉴스 (2023. 5. 3.),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736536644> (2025. 6. 23. 최종 확인).

동탈취협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 집행문제가 2023년 10월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다.¹⁴²⁾

II.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제정

최근 대법원은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불능 또는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를 제정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헤이그아동탈취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청구기각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여(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제4항 제1호)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한 아동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는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집행에 관한 별도의 예규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즉, 새로 제정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한하여 적용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¹⁴³⁾
제정 2024. 1. 10. [재판예규 제1869호, 시행 2024. 4.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

142) “[뉴-리포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미국인 아빠의 호소”, JTBC NEWS (2023. 10. 25.), <https://news.jtbc.co.kr/article/NB12149475> (2025. 6. 23. 최종 확인).

143) 예규 내용의 전부가 아닌, 실무상 의미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다.

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아동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9조(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아동의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 ① 아동반환사건의 경우에는 유아인도집행예규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집행)를 준용하되, 기존의 유아인도집행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② 집행관이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갖는 권한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③ 아동 인도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¹⁴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집행보조자 제도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¹⁴⁵⁾

또한 아동 인도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보조인(아동 관련 전문가)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설득이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집행관 D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를 묻지 않고 동산 인도집행을 하는 것처럼 집행을 신속하게 했다. 만일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적용되었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인도 거부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것이고, 아마도 인도집행은 실패했을 것이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이 안 된다는 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이슈가 있어 대법원에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관한 집행예규만 먼저 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집행관 E

집행관을 하면서 유아인도집행(국내 가사사건 및 아동반환사건 포함)을 한 적은 없다. 다만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적용되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가 새로 제정되었고 그 취지는 더

144) 대법원은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24. 4. 1.부터 시행하였고, 위 예규는 2025. 1. 16. 「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로 개정되었다.

145) 김상용,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6권 제3호, 중앙법학회 (2024), 13.

이상 집행 현장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를 묻지 말고 동산인도집행처럼 그냥 채권자에게 인도해 주면 된다는 의미로 생각되며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향후 미성년 자녀의 인도 집행을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제정 이후 법원행정처는 전국 가정법원 등의 추천을 받아 2024년 38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였고 2025년에는 이 중 30명¹⁴⁶⁾이 재위촉되었다. 현재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년간 법원 사건을 경험하여 고갈등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¹⁴⁷⁾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 관련 전문가(일본의 경우 아동 심리 전문가)가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여하는 아동 심리 전문가를 추천하는 단체로는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이하 'FPIC'라고 한다) 외에 일본 임상심리사협회, 일본임상발달심리사협회의 두 단체가 있으며, 그 외에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행보조를 맡고 있는 전문가도 있다. 이 중 FPIC에 대해서 살펴보면 FPIC는 일본의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부터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여해 왔다. FPIC는 가족분쟁 조정과 비행소년의 갱생에 관여해 온 전직 가정법원 조사관이 중심이 되어 1993년 3월에 설립한 단체이며 그 후, 2011년 6월 1일에 공익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4월 1일 헤이그조약실시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법 제142조에서는 아동 반환의 대체집행과 관련하여 중앙당국이 입회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심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무성 직원이 해방실시에 입회¹⁴⁸⁾하여 전문적 관점에서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의 자녀 인도집행에서도 아동심리 전문가가 집행에 입회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강해졌다. 또한 집행관으로부터도 채무자나 자녀의 언행에 대한 이해, 채무자나 자녀에 대한 설득 방법,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설득의 한계 등에 대해 아동 심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요청이

146) 1명은 2개의 법원에서 동시에 추천된 사람이어서 정확히는 현재 29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가 위촉된 상태이다.

147) 백은형, “아동반환 인도 집행 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 법률신문 (2025. 3. 24.),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479> (2025. 6. 23. 최종 확인).

148) 중앙당국의 입회인 파견은 중앙당국의 협력에 관한 것이므로 입회인은 주로 중앙당국의 직원인 아동 심리 전문가이다[곽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92].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고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2013년 가을부터 FPIC는 자녀 인도집행의 입회인 또는 집행보조자¹⁴⁹⁾로 회원을 참여시키는 시도가 있었고 자녀 인도집행은 자녀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동심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아동 심리 전문가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집행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경우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보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은 집행보조인에게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설명, 자녀에 대한 대응 등을 하게 하거나 집행관이 대응하는 경우 적절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⁰⁾

III.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 현황

1. 개설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의 경우 탈취 부모는 아동을 데리고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¹⁵¹⁾이고 이로 인해 탈취당한 부모는 생소한 외국에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질 뿐 아니라 설령 아동의 소재파악에 성공했다라도 외국의 절차법과 실체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된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체약국이 ‘중앙당국’을 지정하게 하고 각 체약국 중앙당국 간의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하면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는 일단 자국 중앙당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중앙당국이 아동이 탈취당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나라의 중앙당국과 서로 협조하여 아동의 소재파악, 현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안내 등의 방식으로 탈취당한

149) 입회인은 기본적으로 집행관의 직무집행 상황을 관찰하는 역할이며 채무자 등에 대한 설명이나 자녀에 대한 대응 등은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집행보조자는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보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에게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설명, 자녀에 대한 대응 등을 하게 하거나 집행관이 대응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142-143 참조.

150)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140-143.

151) 협약의 기초자들은 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면접교섭권만 가지는 부가 탈취한 상황을 상정하였다고 하나 전 세계적 통제는 모가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70%에 달한다고 한다[석광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4].

부모를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마련한 중앙당국 제도는 각국 중앙당국 간의 협조를 통해 국경과 외국법이라는 장벽을 극복하여 아동의 반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¹⁵²⁾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을 사법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법 또는 행정당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규정방식은 각 체약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당국이 탈취당한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은 할 수 있으나 반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내용상 명백하다.¹⁵³⁾ 아동의 반환청구를 심리하고 탈취자에게 아동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이므로 아동의 반환을 위하여 신청인(피탈취 부모)은 반드시 중앙당국을 경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아동이 소재하는 국가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¹⁵⁴⁾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5. 2.까지 법무부에 접수된 아동반환지원 사건 중 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사건은 총 67건이다. 다만, 법무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수와 법원에 헤이그아동반환청구를 한 사건의 수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탈취당한 부모가 법무부에 지원 요청만 하거나 법원에 헤이그아동반환청구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한 이래 협약상 중앙당국인 법무부에서 아동반환을 지원한 사건의 연도별 사건 수(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된 경우)는 아래 [표 8]과 같다.

152) 권재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법무부 (2018), 8.

153) 권재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법무부 (2018), 75.

154) 권재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법무부 (2018), 8.

[표 8] 법무부 접수 아동반환지원 연도별 사건 수(2025. 2. 기준)¹⁵⁵⁾

접수연도	외국 → 한국 탈취 아동반환지원
2013	0
2014	5
2015	5
2016	7
2017	1
2018	2
2019	7
2020	9
2021	1
2022	9
2023	14
2024	7
합계	67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절차는 원래 한국 국내법에 없었던 새로운 절차이지만 자녀의 거소 지정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양육에 관한 처분(민법 제837조 제4항, 제5항 참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아동의 반환청구를 심리하고 탈취자에게 아동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법원이 담당하고 있고¹⁵⁶⁾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라 아동반환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1조). 이렇게 서울가정법원으로 관할을 집중시키면 법관과 가사조사관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¹⁵⁷⁾

한국에서의 반환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헤이그아동탈취법,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에 특칙이 없는 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155) 법무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2025. 2.), 4.

156)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 중 외국에서 한국으로 탈취되어 온 경우만 한국 법원에서 심리, 재판하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탈취된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심리, 판단하지 않고 아동이 소재하는 나라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서 판단한다.

157) 권재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사건 수행을 위한 실무가이드, 법무부 (2018), 77.

2.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집행사건

가. 집행사건 접수건수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집행관 사무소에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을 위하여 접수되었던 사건의 수는 10건¹⁵⁸⁾이었다. 연도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연도별 접수건수

접수연도	접수건수
2013	0
2014	0
2015	0
2016	1
2017	0
2018	0
2019	0
2020	0
2021	1
2022	3 (이 중 2건은 2021년에 접수된 1건이 다시 중복 신청된 사건임) ¹⁵⁹⁾
2023	1 (2022년에 접수된 1건이 취하된 후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한 사건임)
2024	4
합계	10 (이 중 3건은 같은 집행권원으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실제는 7건이라고 볼 수 있음)

158) 법원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에 가사사건 중 접수연도 2013년 ~ 2024년, 주문 ‘사건본인 반환하라’, 사건명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부호 ‘느단’을 입력하여 추출한 사건들 중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사건들을 다시 추출한 후 이를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에서 각각 집행사건조회 검색하여 접수건수를 확인하였다.

159) 즉, 2021년에 접수된 1건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다시 중복해서 2건을 접수한 것이며 결론적으로 동일한 집행권원의 사건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3건 접수된 것이다.

나. 집행사건의 현황 및 진행결과

접수된 사건 중 집행에 착수해서 집행완료된 사건은 6건(이 중 5건은 헤이그아동 반환집행예규 제정 후 사건임), 집행불능된 사건은 1건이다. 접수사건 수 10건(중복 접수 포함) 대비 집행완료율이 60%, 실제 사건 수 7건(중복 접수 제외) 대비 비율은 85.7%이다.

한편 헤이그아동반환집행 7건(실제 사건 수) 중 6건은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과태료 및 감치결정까지 진행되었는데 국내 사건에 비해 이행명령신청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사건의 처리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헤이그아동반환집행사건 처리현황

유형	중복포함 (사건 수/접수건수)	비율(%)	중복제외 (사건 수/접수건수)	비율(%)
집행완료	6/10	60.0	6/7	85.7
집행불능	1/10	10.0	1/7	14.2

각 사건의 경우 실제 집행을 시도한 총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14회 집행시도 중 6회가 완료되어 42.8%의 집행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전 기준으로 총 7회 시도 중 1회가 완료되어 14.2%의 집행완료율인 반면에 헤이그아동 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기준으로는 총 7회 시도 중 5회가 완료되어 71.4%의 집행완료율을 보이고 있다.¹⁶⁰⁾ 헤이그아동반환집행사건의 집행시도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160) 일본의 경우 2021년 기준 최근 5년 동안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성공률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에 관해 규정이 신설된 일본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2020. 4.) 전과 시행 후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정 후 시행 초기에는 민사집행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独自>子供の引き渡し、強制執行「成功」は3割 最高裁”, 産経新聞 (2021. 2. 20.), <https://www.sankei.com/article/20210222-ZYD3YM2GJVJDFKPFVRL3GAY6YE/> (2025. 6. 23. 최종 확인).

[표 11] 헤이그아동반환집행사건 집행시도 현황

유형	집행완료/집행시도 수	비율(%)
실제 집행시도 기준	6/14	42.8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전	1/7	14.2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5/7	71.4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전에 집행을 시도했으나 집행불능이 된 6회의 시도에 대한 불능 사유를 보면 아동의 인도 거부 5회, 아동의 부재 1회였고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아동의 인도 거부로 인한 불능이 집행불능 사유 중 83.3%, 아동의 현장 부재로 인한 불능이 집행불능 사유 중 16.6%를 차지했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전 집행시도 기준 집행불능 사유 및 사유별 비율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전 집행시도 기준 집행불능 사유 및 사유별 비율

집행불능 사유	사유/불능횟수	비율(%)
아동의 인도 거부	5/6	83.3
아동의 현장 부재	1/6	16.6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의 집행시도 7회 중 5회의 집행완료가 있었고 단지 2회만 아동의 현장 부재로 집행불능되었다. 아동의 인도 거부로 인한 집행불능은 없었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아동의 현장 부재가 집행불능 사유의 100%였고 아동의 인도 거부는 0%였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집행시도 기준 집행불능 사유 및 사유별 비율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집행시도 기준 집행불능 사유 및 사유별 비율

집행불능 사유	사유/불능횟수	비율(%)
아동의 인도 거부	0/2	0.0
아동의 현장 부재	2/2	100.0

다.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

집행대상 자녀의 나이는 접수 당시 기준 1~10세까지 범위로 분포되었는데, 2세가 1명, 3세가 2명, 4세가 1명, 5세가 1명, 6세가 1명, 7세가 0명, 8세가 3명, 9세가 1명, 10세가 1명이었다. 이를 자녀 전체 숫자에 대한 비율로 보면 2세가 9%, 3세가 18%, 4세가 9%, 5세가 9%, 6세가 9%, 7세가 0%, 8세가 27%, 9세가 9%, 10세가 9%로 나타났다. 접수 당시 집행대상 아동 나이별 인원 및 비율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접수 당시 집행대상 아동 나이별 인원 및 비율

나이	인원수(총 11명)	비율(%)
1	0	0
2	1	9.0
3	2	18.0
4	1	9.0
5	1	9.0
6	1	9.0
7	0	0
8	3	27.0
9	1	9.0
10	1	9.0

실제 접수된 사건 중 중복을 제외하면 7건이고 이 중 4건의 사건에서 아동이 각 2명이어서 아동의 인원수는 총 11명인데, 국내 미성년 인도집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10세가 넘는 아동은 1명에 불과했다. 국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고려하여 강제집행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가 시행된 2024. 4. 1. 이후 실시된 6건의 집행에서 2024. 12. 현재까지 5건이 성공을 거두었고 1건은 자녀가 집행현장에 부재하여 실패하였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자녀의 인도거부 의사로 인해 집행불능 처리되었던 사건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시행으로

인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가 인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관계없이 집행을 시도한 결과 실제로 인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녀의 단순한 거부 의사만으로 집행을 포기하지 않고, 일단 집행을 시도하는 방식이 일정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녀가 극심한 정서적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신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집행불능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집행 현장에서의 신중한 판단은 계속 필요하다.¹⁶¹⁾

한편 인도집행에 관한 집행조서는 국내 가사사건의 집행조서와 같이 일부는 집행 당시 상황과 집행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도 있었으나 집행완료이든 집행불능이든 상관없이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것이 더 많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작업처리조서가 따로 존재하고 전산상에는 전산에서 새롭게 생성한 수작업처리정보(형식적 조서)를 등록하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집행관에 따라서는 집행조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행관 사무원 D

동산인도집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도 동산인도집행에 준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규가 새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아동반환사건의 아동 반환집행을 실시했다. 이미 여러 번 자녀의 인도거부 의사로 인해 집행불능된 사건이어서 그런지 채무자가 문도 열어줬다. 바로 들어가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위해 나왔다고 고지하고 채권자가 고용한 사설경호원들을 경비노무자로 사용하여 채무자의 동선을 차단하는 사이에 자녀들을 데리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인도거부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치 않았다.

161) 쓰루오카 겐이치, “일본의 민간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인도 강제집행 보조 -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의 지원활동 -”,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자료집 (2023. 11. 15.), 185,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0&gubun=195&cbub_code=&searchWord=¤t (2025. 6. 23. 최종 확인).

제3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사례 분석



I.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아래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¹⁶²⁾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성공한 사례로 현재 우리의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사전준비 과정 등은 생략하고 채무자의 저항과 자녀의 거부를 어떻게 해결해서 집행완료 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 사례(1)

1. 인도 대상 자녀는 8세 여아임.
2. 채무자(부)는 현장에 없었고 채무자 측 사람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있었음.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열쇠기술자가 문을 열었음.
3. 집행현장은 집행관이 통제를 했고 아동 관련 전문가는 곧바로 자녀의 방으로 들어가 자녀와 대화했음. 자녀에게 왜 000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000국에 가더라도 채무자와 화상통화도 할 수 있다는 등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음.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로 현 상황을 설명해줬음.
4. 자녀는 처음에는 채권자(모)까지 들어와서 자녀에게 같이 가자고 해도 000국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도 강한 저항을 하지는 않았으나, 채무자 측 인물이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자녀도 안 간다고 울면서 저항을 했음.
5. 자녀가 침대를 잡고 버텨서 종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경호원이 자녀를 안아서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음.
6. 채권자는 현장에서 자녀를 인도받았고 자녀와 채권자 등이 탄 차량이 먼저 출발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행관 사무소 앞에 다시 모두 모인 상태에서 아동 관련 전문가가 자녀에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었음. 자녀는 그 사이 많이 안정을 찾아서 거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미리 준비해온 인형들을 들고 채권자와 대화도 잘 나눴음.
7. 다음 날 사진을 보니 자녀는 공항에서 채권자 등과 함께 편안하게 웃고 있었음.

162)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의 시행일이 2025년 2월 1일이어서 개정 후의 사례는 아직 찾지 못했다. 개정 전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적용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이나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도거부의사가 있으면 바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으므로 여기서 따로 분석하지는 않는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 사례(2)

1. 인도 대상 자녀는 3세 남아임.
2.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할 때 안전요원이 자녀를 강제로 채권자(부)에게 인도했음. 자녀는 울기는 했지만 곧 채권자를 알아보고 유치원에 가야 한다거나 일상적인 얘기를 했음.
3. 채무자는 자녀를 안전요원에게 강제로 빼앗긴 상황이라 울면서 소리지르고 항의했음. 집행관을 비롯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에게 매우 심한 비난을 쏟아냈음.
4. 집행 이전은 물론이고 집행 당시 집행관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가 채무자나 자녀와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음. 아동 관련 전문가에게 채무자나 자녀를 설득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자녀는 강제탈취되듯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말할 겨를도 없었음.
5. 채무자에게는 집행 완료 후 집행관이 설명을 했음.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시행 초기여서 집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집행관의 적극적 집행이 엿보이나 이에 반해 신속한 집행에 치중하여 현장에서의 설득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즉,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가 예정하고 있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우선 원칙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예규 제정 당시 예상한 만큼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장을 지휘하는 집행관이 아동 관련 전문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자녀와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집행 사례가 쌓이면 집행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차츰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일본의 경우¹⁶³⁾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사례는 아직 일본의 민사집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례이나 집행 현장에서의 설득 노력이 어떻게 집행완료를 이끌었는지 보여주므로 우리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하다.

163) 大塚慶之, “子の引渡執行の実務”, 新民事執行実務 제15호, 民事法研究会 (2017), 172-175.

【사건 1】 자녀(7세, 둘째 아들)의 인도

집행관은 보조 집행관 및 전 가정법원 조사관에게 보조자로 입회를 요청했다.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 보조 집행관 및 보조자 3명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채무자는 자택에 있었다. 집행 시작 시간은 오후 4시 40분.

집행관이 자녀 인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었으므로 자녀를 인도해 달라고 말하자 채무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과 그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가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보조자와 함께 아이와 면담하고 채무자의 협조도 얻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아이를 채권자 대리인에게 잠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오후 4시 40분부터 종료시간인 오후 6시 10분까지 꾸준한 채무자에 대한 설득행위가 효과를 거두어 자녀 양육에 대한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낸 것이 완료 요인으로 보인다.

【사건 2】 자녀(2세 5개월)의 인도

집행관은 사전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하고 심리치료를 보조자로 선임한 후 경찰관과 보조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자녀를 포함한 채무자가 모두 자택에 있었기 때문에 보조자를 대동하고 건물 내로 들어가 채무자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채무자(할아버지의 내연의 아내)는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는 채권자와 사전에 문제가 생겨 경찰을 부른 적이 있으며, 자녀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녀를 넘겨줄 수 없으니 오늘은 돌아가 달라.”며 전혀 설득에 응할 기미가 없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동인(同人)들의 의견과 심경을 듣고, 집행관으로서 입장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시 저항을 배제해야 하므로 밖에 대기 중인 경찰관 전원을 실내에 들어오게 해야 하고, 만약 아이의 인도를 응할 경우 지금 들은 이야기를 최대한 상세하게 조서에 기재하는 것을 약속한 바, 마침내 설득에 응하여 아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도에 동의했다.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다.

아이를 채권자에게 넘겨줄 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전문가는 아이가 애정을 쏟았던 사람에 대한 이별을 느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하였다.

【사건 3】 자녀(1세)의 인도

채권자는 어머니, 채무자는 아버지. 채무자는 샐러리맨으로 부모 등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집행 전 날 즉시 항고 및 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 정지는 기각되었다.

채무자는 평범한 사회인이므로 완강하게 저항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으나 집행관의 설득에 솔직하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원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 집에 출동했다. 또한 사전에 채무자의 휴일을 확인한 후 기일을 정했다.

채무자는 즉시 항고 중이며 대리인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 열릴 때까지 집행을 기다리기로 하고 그 사이 3시간 정도 채무자 본인과 그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채무자 측의 태도가 누그러져 결국 채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전화로 이야기한 후 임의로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다.

【사건 4】 아동(10세, 8세, 7세)의 인도

세 자녀의 나이, 정신적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집행관은 임상심리 전문가를 보조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집행 현장에서는 채무자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관이 문을 통해 설득을 시작했다. 채무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채무자임을 부인하거나, 완강하게 “아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한다면 문은 열지 않겠다.”고 거둡 말했다. 장시간(1시간 반 정도)에 걸쳐 문을 열도록 설득했지만 집행될 것을 두려워하여 좀처럼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동행한 보조자에게 설득에 동참해 달라고 하고 채무자의 주장도 충분히 들어주고 채권자 본인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등 보조자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채무자는 현관문을 열고 집행관과 보조자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실내에 들어간 후에도 1시간 정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명 등을 듣고, 때가 되면 채권자에게 아이를 넘겨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알리고, 아이에 대한 대응은 사전 협의대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3명의 아이들은 전문가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스로 장난감 등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졌다. 인도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제4절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유아인도집행예규에 대한 고찰

I.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및 유아인도집행예규 개정으로 인한 변화

1. 제정 및 개정 후 예상되는 변화

새로운 내용의 예규로 인해 강제집행 현장의 분위기와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과거에는 집행관들이 자녀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자녀가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면 집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행관이 자녀에게 인도에 관한 의사를 묻지 않고,¹⁶⁴⁾ 곧바로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임하게 된다. 이는 집행의 일관성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전에는 집행관 재량에 따라 어떤 집행관은 몇 번이고 자녀를 달래보고, 어떤 이는 바로 포기하는 등 케이스마다 편차가 컸다. 이제는 규정상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예정된 집행을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현장 집행 방법이 보다 통일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예규의 제·개정으로 강제집행 성공률은 일정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법원이 반환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내렸음에도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는 사례가 다수였지만, 이제는 최소한 자녀의 단순 거부를 이유로 집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¹⁶⁵⁾ 실제로 2024년 4월 ~ 11월에 이루어진 6건의 헤이그아동 반환사건의 집행 중 5건이 집행완료되어 아동들을 상거소국으로 송환하였고 1건만 실패하여, 이전보다 집행완료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⁶⁾ 이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의 직접 효과로 평가된다. 또한 집행관들의 인식 변화도 예상된다. 이전에는 집행관이 ‘자녀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며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

164) 설령 자녀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도 거부 의사만을 이유로 곧바로 집행불능 처리하지는 않는다.

165) 그러나 실제 집행현장에서 자녀의 거부 의사가 매우 강하고 신체적 저항까지 강하게 하는 경우 집행불능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166) 국내 사건의 경우 개정 예규 시행(2025. 2. 1.)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개정 예규를 적용해서 집행에 성공한 사례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집행완료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측된다.

으로 부모와 자녀를 설득하거나, 필요할 경우 경찰 도움을 받아서라도 집행하려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미이행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점이 차츰 개선¹⁶⁷⁾될 것으로 보여, 법 집행관계자들도 사명감을 갖고 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다. 첫째, 자녀의 정서적 충격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종래에도 낯선 집행관 등의 등장과 부모 중 누구와 살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정서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의 울음¹⁶⁸⁾과 거부를 무릅쓰고 집행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클 수 있다.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집행 시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해당 자녀에게 장기적인 정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집행관과 집행보조인의 부담 증가이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직후 일부 집행관은 “물건이 아닌 아이를 상대로 하기에 조심스러운데, 강한 저항까지 있는 현장에서 집행관 개인이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긴 쉽지 않다.”고 토로하였다.¹⁶⁹⁾ 즉 규정은 바뀌었으나, 실제 현장 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 논란이나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집행이 완료되든 불능되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원망과 민원¹⁷⁰⁾도 집행관과 집행보조인¹⁷¹⁾의 몫이기 때문이다.

167) “‘아동 탈취국’ 불명에 뒤늦게 벗어난 사연”, 조선일보 (2024. 5.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1/OFRJTTQDI5CR7PCAN35JW75JKE/ (2025. 6. 23. 최종 확인).

168) 집행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집행관 등 성인 남녀 다수가 한꺼번에 거주지에 들이닥치면 자녀들이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169)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 동아일보 (2024. 9. 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0/126602222/1> (2025. 6. 23. 최종 확인).

170) 실제로 한 사건의 경우 집행을 완료한 후 며칠 뒤 집행을 담당할 집행관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무리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집행관을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 동아일보 (2024. 9. 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0/126602222/1> (2025. 6. 23. 최종 확인).

171) 실무상 채무자가 집행보조인인 아동 관련 전문가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보호문제를 언급한 것으로는 백은형, “아동반환 인도 집행 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 법률신문 (2025. 3. 24.),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479> (2025. 6. 23. 최종 확인).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D

아이를 대상으로 직접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고 집행이 완료되어도 기분이 좋지 않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아이의 의사를 고려해서 정리를 해주고 아이를 법원에 불러서 현장에서 아이를 넘겨주는 방식을 취해주면 어떤가 생각을 한다. 아니면 면접교섭을 할 때를 이용해서 인도를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현장의 실행방법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새 예규 시행 후 어떤 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달래고 설득하여 협조를 얻어냈지만, 다른 경우 집행관이 부모들 말만 듣다가 결국 부모에게 설득을 맡기고 뒷전에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집행에 소요된 시간도 10분에서 2시간까지 들쭉날쭉이었다고 한다. 이는 아직 현장 매뉴얼이 정교하지 않고 집행관마다 경험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²⁾¹⁷³⁾

넷째, 집행불능의 새로운 양상도 우려된다. 자녀의 거부로 인한 집행불능은 줄었지만, 대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아예 잠적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집행일 전에 상대방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라져, 집행관이 시도조차 못 하고 ‘집행불능’ 결론을 내린 일이 있었다.¹⁷⁴⁾ 즉 자녀의 집행현장에서의 거부 의사를 감안하지 않는 집행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은닉, 잠적 등 극단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개정 유아인도집행예규의 타당성 평가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는 국제아동탈취 사건에 한해 적용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법 정책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이행 측면에서 보

172)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 시그널]”, 동아일보 (2024. 9. 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0/126602222/1> (2025. 6. 23. 최종 확인).

173) 다만, 최근 법무부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2025. 2.)”을 만들어 집행관 사무소에 배포하였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전후 집행의 비교, 위 집행 매뉴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중앙당국으로서 법무부의 헤이그아동반환사건 관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Jae Sung Park, “Challenges in Enforcing Convention Cases in Korea and Overcoming Them”, 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 6. 25.), https://www.hcchapweek2025.org/_files/ugd/887f5d_f6763fa1321443e1b5ea5a5d736063fc.pdf.

174)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 시그널]”, 동아일보 (2024. 9. 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0/126602222/1> (2025. 6. 23. 최종 확인).

면, 매우 타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협약은 가입국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아동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랫동안 제도 미비로 반환을 명하는 재판은 있어도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에서 한국을 협약 미이행국으로 연속 지정하며 압력을 가해온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예규를 바꿔서라도 집행을 가능케 한 것은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실제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후 몇 건의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아동 인권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거부권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에서 삭제한 것은 아동 인권 침해이며 이에 따른 영향인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하라는 협약 원칙과 다르게, 최근 판결들이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아동이 학대나 폭력이 두려워서 거부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무시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¹⁷⁵⁾

그러나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은 아동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는 일단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애당초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절차에서 아동의 의사는 결정적 사유가 아니며, 다만 충분한 연령과 성숙도를 갖춘 경우에 제한적으로 고려될 뿐이다. 협약이 정한 반환거부 사유 중 하나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안 재판 단계의 사유일 뿐 집행단계의 일반적 거부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경우 자녀의 인도거부 의사가 있으면 집행불능이라는 규정을 예규에서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본안 재판에서 충분히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반환을 명하였다면, 집행 때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녀의 장기적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 장기간 한쪽 부모에 의해 분리되어 있던 자녀를 빠르게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단기의 눈물보다는 장기의 안정을 택한 결정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함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강제를 우려하는 시각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집행보조인으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녀의 정서를 살피도록 했다. 법원 행정처도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의 복리적 관점에서 아동

175) 이성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서의 ‘아동 거부권’ 삭제는 아동 인권침해, 복원해야”, 국제신문 (2024. 10. 16.),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20&key=20241016.99099004128> (2025. 6. 23. 최종 확인).

인도집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마련과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했다.”고 하여 아동 복리와 집행 실효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⁷⁶⁾ 따라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의 취지는 정당¹⁷⁷⁾하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의 구체적인 운영으로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제아동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고도 의미있는 변화라는 것이 법조계 등의 의견이다.¹⁷⁸⁾

한편 국내 사건에 적용되는 유아인도집행예규가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예규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¹⁷⁹⁾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및 유아인도집행예규 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관련 실무 관행과 평가는 아직 축적되고 있는 중이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지지하면서도 디테일한 보완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II.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유아인도집행예규로 인해 집행완료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같은 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2013년 헤이그조약실시법의 제정, 2019년 민사집행법 및 헤이그조

176) “‘국제아동탈취 사건’ 집행지연 문제 해소될까”, 법률신문 (2023. 12. 14.), <https://www.lawtimes.co.kr/news/194061> (2025. 6. 23. 최종 확인).

177) 대법원에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를 제정한 것은 아동반환사건의 집행불능 내지 집행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상황에서 종래의 입법체계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도 즉시 실행가능한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로는 광민희,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58; 광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106.

178) “‘국제아동탈취 사건’ 집행지연 문제 해소될까”, 법률신문 (2023. 12. 14.), <https://www.lawtimes.co.kr/news/194061> (2025. 6. 23. 최종 확인); “박용진 의원, 국제아동탈취 협약 관련 대법원 예규 제정 환영”, 글로벌뉴스통신 (2023. 12. 14.),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_xno=313186 (2025. 6. 23. 최종 확인).

179)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유아 인도 판결 나오면 “만드시 집행해야””, 법률신문 (2025. 4. 17.), <https://www.lawtimes.co.kr/news/207297> (2025. 6. 23. 최종 확인).

약실시법 개정을 통해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였는데¹⁸⁰⁾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법제화와 자녀 복리 중심의 집행원칙 수립이라는 일본법의 성과를 적극 참고하여 민사집행법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두어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다.¹⁸¹⁾ 또한 일부 집행관들도 민사집행법 등 법률에 집행관의 권한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어야 향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 집행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집행관 F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 법률차원에서 명확히 해주는 것이 집행관 입장에서는 좋다. 또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를 묻지 않도록 한 것은 좋지만, 동시에 집행관에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집행관이 집행현장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강제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해도 된다면 그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집행을 하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속히 법률로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E

아동반환예규가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동반환사건의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위 예규를 적용하여 집행을 할 것인데, 다만, 위 예규만으로는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나 사무원이 어떤 권한이 있고 인도 대상인 자녀에 대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한 면이 있다. 그래도 새로 예규가 제정되었으니 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 자녀 인도집행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180) 일본의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헤이그조약실시법, 민사집행법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4장 비교법적 고찰의 제3절 일본의 법제 및 실무 참조.

181) 이재석, “법조광장 유아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안”, 법률신문 (2021. 11. 4.),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3829> (2025. 6. 23. 최종 확인); 김윤정, “법조광장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법률신문 (2021. 4. 5.),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8855> (2025. 6. 23. 최종 확인).

..... 제 4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반환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발간한 모범사례가이드에서 각 체약국의 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관련 일본, 독일, 프랑스의 법제와 실무를 조사·분석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개선에 참고하기로 한다.¹⁸²⁾

제2절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



I.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의 내용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강제집행(Enforcement)’(이하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로 인용한다)¹⁸³⁾은 각 국의 반환재판 집행에 관한 입법례에 대한

182) 미국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이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이 탈취되어 온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아동반환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됨으로써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교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연방-주 이원 구조, 영미법계(common law) 기반의 소송 및 판결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자녀 인도명령 집행에 있어 민사집행에 특화된 전담 조직이나 절차 중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실제 집행은 관할 법원에 따라 연방마셜(U.S. Marshal) 또는 주 보안관(Sheriff) 등이 수행하지만, 이들은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며, 한국의 집행관과는 법적 지위 및 기능 면에서 제도적 성격이 상이하다. 둘째, 미국에서는 자녀 인도명령 불이행 시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를 근거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셋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을 위한 미국의 국내법인 국제아동탈취구제법(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 약칭 ICARA)은 연방 및 주 법원 모두에 관할권을 부여하지만, 사건 처리 및 집행 방식은 주마다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사집행 구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법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일본·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 비교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제도적 중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구 목적과 비교법적 타당성을 고려한 범위 설정에 따른 것이다.

183)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uide to Good Practice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Part IV – Enforcement, 2010,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pecialised-sections/child-abduction> (2025. 6. 23. 최종 확인).

설문조사와 실태 조사에 기초한 비교법적·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문서이다. 모범사례가이드는 ‘본 가이드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체약국을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지만, 모든 국가는 협약의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거나 이미 당사국인 경우, 본 가이드를 참조하여 협약에 따른 반환 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모범사례가이드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들이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집행 방식과 제도 전반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강제집행’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효율적인 강제집행제도의 정비

가. 강제집행 수단의 유형

체약국들의 법제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금전적 제재 등 경제적 불이익 부과, 둘째, 탈취 부모에 대한 구금, 셋째, 집행관의 물리력을 동반한 직접강제가 그것이다.¹⁸⁴⁾

이 중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대상이 탈취 부모에 한정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에 대한 직접강제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하며,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¹⁸⁵⁾

나.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정비

반환재판의 집행을 위해 일반적인 민사집행보다 추가적인 요건이나 절차적 단계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환재판 후 집행 개시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그만큼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반환 명령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¹⁸⁶⁾

특히 탈취당한 부모가 집행개시를 위해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

184) 아동탈취 또는 법원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법상 처벌은 여러 나라의 법률에 존재하고 있다.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7.

185)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6.

186)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8.

지 못한 경우, 집행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환재판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중앙당국의 신청에 의해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될 수 있다.¹⁸⁷⁾

다. 가집행 여부

일부 국가에서는 반환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가집행의 경우, 불복 절차에서 탈취 부모가 승소하여 반환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집행으로 인해 확정된 재판의 실효성이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⁸⁾¹⁸⁹⁾

2. 집행의 실시

비록 법원이나 중앙당국이 집행 절차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더라도, 실제 반환 집행의 실행은 집행관¹⁹⁰⁾에게 위임된다. 집행관의 자격, 소속, 직무수행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반환재판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탈취 부모의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국가의 입법례에서는 법률상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직접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방식도 인정되고 있다.¹⁹¹⁾

강제수단을 동반한 아동 인도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동에게 심리적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행 시각을 오전, 오후, 또는 저녁 중 언제로 정할 것인지, 집행 장소를 아동의 거주지로 할지 아니면 학교, 어린이집, 통학로 등 제3의 장소로 할 것인지, 그리고 탈취 부모의 입회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집행 현장에서의

187)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8.

188)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25.

189)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제8조는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집행을 붙일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190) 나라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나 편의상 집행관이라 부르기로 한다.

191)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31.

언쟁이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집행관에게 아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수록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관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혼성 조를 이루어 집행을 수행할 경우, 아동의 불안을 완화하고 집행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¹⁹²⁾

반환재판에서 명시된 반환 방법이 탈취 부모 또는 중립적인 임시 보호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상거소국으로 귀환하는 것이라면, 탈취당한 부모가 집행 현장에 직접 입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환재판이 탈취 부모에게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경우에는,¹⁹³⁾ 집행관은 필요에 따라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탈취 부모와 아동을 분리한 후, 탈취당한 부모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⁹⁴⁾ 다만 시간의 경과로 인해 탈취당한 부모와 아동 사이의 애착이 약화되었거나, 면접교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탈취당한 부모를 낯설게 느낄 가능성, 혹은 탈취 부모 측에서 탈취당한 부모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탈취당한 부모가 집행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탈취 부모와 탈취당한 부모가 현장에서 조우하게 될 경우, 감정적 충돌이 격화되어 집행절차에 대한 협조가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에게 친밀감을 주면서도 탈취 부모에게 반감을 유발하지 않는 제3의 대리인이 아동 인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대리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탈취당한 부모가 집행 현장 인근에 대기하면서도 아동이나 탈취 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¹⁹⁵⁾

한편 집행 개시 전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이행법률을 통해 특정 전문가가 어떤 집행 단계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많은 입법례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실제 집행을 수행하는 주체인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례도 존재한다.¹⁹⁶⁾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통역사(아동 또는 탈취 부모가 소재지국 언어로 원활히 의사소

192)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31.

193) 한국의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194)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33.

195)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34.

196)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33.

통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특히 소아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다만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절차 지연의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⁹⁷⁾

II. 모범사례가이드의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헤이그아동반환청구 사건에서 대부분의 계약국들은 금전적 제재, 구금, 직접강제라는 세 가지 수단을 조합하여 집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국가는 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사용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집행 개시는 부모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 또는 중앙당국의 직권 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집행과 같은 확정 전 반환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후속 절차에서 원심이 뒤집힐 경우 아동의 혼란과 절차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채택되고 있다. 실제 집행은 집행관에게 위임되며, 탈취 부모의 저항 시 경찰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 집행 시에는 아동의 정서 상태와 상황에 따라 장소, 시간, 동행자, 입회자 등을 세심히 조율해야 하며, 혼성 집행관 구성이나 제3자 인도자 참여 등의 방식은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환 방식에 따라 집행 전략도 달라지는데, 특히 ‘인도’형 집행에서는 탈취당한 부모가 직접 아동을 인도받게 되므로 아동의 반응과 부모 간 갈등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간접 인도를 활용하고, 탈취당한 부모는 현장에서 비노출 상태로 대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가의 참여는 통역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 또는 집행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 개입이 절차의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197) 모범사례가이드, 제4부, 32.

2. 시사점

모범사례가이드에서도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로 금전제재 등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부모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강제 조치를 선행한다. 한국도 아동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접강제를 우선 적용하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모범사례가이드는 일부 국가에서 집행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반복적 불응, 허위 주장, 아동 은닉 등 고의적 지연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를 넘어 일정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부모의 협조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리상담사, 아동복지사, 통역사 등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모범사례가이드는 이러한 전문가의 참여에 관해 법원이 개입 여부를 판단하거나 집행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도 소개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참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범사례가이드는 아동의 복리 최우선, 신속하고 실효적인 집행,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입법 시에는 단지 절차적 집행 방식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심리를 보호하면서도 보다 실효적인 집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절 일본의 법제 및 실무



I. 일본의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의 변화

1.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실무의 태도

일본의 민사집행법은 청구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녀의 인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은 물론 그 전신인 구 민사소송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실무 운용 및 학설의 논의에 맡겨져 있었다.¹⁹⁸⁾ 이러한 논의의 저변에는 자녀의 인도에 관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집행방법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¹⁹⁹⁾

일본에서의 자녀 인도 실현방법의 실무는 과거에는 인신보호청구를 통해 자녀를 인도받는 방식이 주류였고,²⁰⁰⁾ 그 시기에는, 자녀의 인도를 명하는 재판소²⁰¹⁾의 판결 등은 직접강제를 위한 채무명의(債務名義)²⁰²⁾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1993년 판결²⁰³⁾을 계기로, 자녀 인도를 포함한 양육권 분쟁은 가정재판소가 관할하여 간접강제에 의해 해결하는 방식이 주류가 되었다. 이러한 간접강제는 자녀 인도청구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대체적 작위의 청구이거나, 자녀는 물건이 아니므로 간접강제만 가능하다는 논리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2000년경부터는 직접강제를 원칙으로 하는 실무 운용이 일반화되었는데 민사집행법상 동산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유추적용이 근거로 활용되었다.²⁰⁴⁾

198)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3.

199) 内田義厚, “子の引渡執行の過去・現在そして未来”, 村上正子・安西明子・上原裕之・内田義厚, 手続からみた子の引渡し・面会交流, 弘文堂 (2015), 197.

200)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12.

201) 법원을 의미한다.

202) 집행권원을 의미한다.

203) 最判 平成 5年 10月 19日, 民集 第47卷 第8号 (5099).

204) 園尾隆司監修・杉山初江, “民事執行における子の引渡し”,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37.

2.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과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

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가입

일본은 1990년경부터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하고 국경을 넘어 부모 간 아동을 탈취하는 문제도 증가하면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협약 가입 이전,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는 일본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본으로 아동을 데리고 귀국하는 사안의 대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²⁰⁵⁾

국제사회는 일본의 협약 미가입을 비판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협약 가입 압력이 강해지면서 일본은 국제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아동 탈취 문제의 국제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이는 자녀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전후로 일본은 아동반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협약 준수를 위한 헤이그조약실시법 제정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를 도입했다.²⁰⁶⁾ 헤이그조약 실시법에서는 아동반환을 위한 재판절차와 부모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반환명령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고 있었다.²⁰⁷⁾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체약국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외무성이 중앙당국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탈취당한 부모는 자신의 국가 중앙당국이나 자녀가 있는 국가(자녀가 옮겨진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자녀 반환과 자녀 접근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녀가 일본으로 탈취되어 온 경우 일본의 외무성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녀의 소재를 파악하며 반환 및 방문 또는 접촉을 실현하기 위해 중재를 포함한 우호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법원이 자녀 반환을 결정하면 외무성은 자녀가 상거소국으로 안전하게 반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²⁰⁸⁾

205) 광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41.

206) 광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41-42.

207)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138-139.

208) 外務省, “ハーグ条約と国内実施法の概要” (2024), https://www.mofa.go.jp/mofaj/fp/hr_ha/page22_000843.html#section1 (2025. 6. 23. 최종 확인).

나. 헤이그조약실시법 제정의 경위

헤이그조약실시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자녀 반환명령의 집행을 어떠한 절차로 실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⁰⁹⁾ 초기에는 간접강제에 더하여 가정재판소의 이행권고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반환신청의 상대방인 부모(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을 촉진하는 방식이 주류적 견해였다. 자녀의 반환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하는 채무’(作為債務)로 파악되었고, 재판의 주문은 ‘자녀를 ○○국에 반환하라’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직접강제는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²¹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국내 자녀 인도집행에서 직접강제가 점차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과의 균형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중간 단계의 법안 초안들에서는 간접강제만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강제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법제심의회 후반에 이르러 전환점을 맞았다. 자녀의 반환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 이외의 자에 의한 반환 이행도 가능하다는 전제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반환하기 위한 강제집행수단으로서 ‘대체집행’ 제도를 마련하고, 집행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한 특별한 절차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되었다.²¹¹⁾

다. 헤이그조약실시법에 의한 제도의 구축

2014년 헤이그조약실시법이 시행되었을 당시, 자녀 반환명령의 집행절차는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단계에서는 제1심 재판소인 가정재판소가 집행재판소의 지위를 가지며, 채권자에게 수권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녀를 상거소국에 인도할 ‘반환실시자’를 지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해방실시자’로서 집행관을 지정한다. 제2단계에서는 지정된 집행관이 자녀를 채무자의 지배로부터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조치를 수행한다. 이러한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²¹²⁾

209) 村上正子, “条約実施法の施行とその影響”, 村上正子・安西明子・上原裕之・内田義厚, 手続からみた子の引渡し・面会交流, 弘文堂 (2015), 21.

210)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집행관이 자녀를 상거소국까지 데려가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211)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139.

212) 山本和彦, “ハーグ条約の概要と子の返還執行手続”, 新民事執行実務 第12号, 民事法研究会 (2014), 33.

첫째, 간접강제전치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체집행에 앞서 반드시 간접강제를 거쳐야 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심신에 가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행수단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간접강제의 선행을 의무화할 경우 집행절차가 지연될 우려는 있으나, 자녀를 감호하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반환함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중시되었다.

둘째,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즉,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로부터의 자녀의 해방은 자녀가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채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다. 이는 채무자의 협조를 얻은 상태에서 자녀의 반환을 실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채무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자녀를 상거소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채무자가 부재한 장소에서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 자녀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포나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되었다. 아울러 헤이그조약실시법은 해방 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관의 권한, 전문가 등의 입회, 집행재판소 및 채무명의 작성기관인 가정재판소와 집행관의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은 후속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²¹³⁾

3. 집행의 실효성 문제 지적

헤이그조약실시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사건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을 전제로 한 집행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국내 사건에서는 간접강제의 전치가 요구되지 않았고, 직접강제의 집행기관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담당하였다. 또한 기존 실무에서 강조되던 사전 준비의 철저한 이행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동시에 자녀와 채무자의 동시존재원칙이 적용되면서, 집행장소 선정에 관한 기존의 운용이 재검토되는 계기가 되었다.²¹⁴⁾

그러나 헤이그조약실시법의 반환명령의 강제집행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²¹⁵⁾

213)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140.

214)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14; 渡邊隆浩・片山真一, “東京地方裁判所執行官による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の実務運用について”,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65.

215) 織田有基子, “ハーグ子奪取条約の履行確保の一側面 - 条約実施法等改正を中心に -”, 国際法外交雑誌 第

간접강제의 전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할 경우 집행 운용이 경직될 우려가 있으며, 채무자 동시존재의 원칙 적용은 오히려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채무자가 자녀를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고의로 집을 비우는 방식으로 자녀와의 동시존재 상황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채무자가 집행장소에서 격렬히 저항하거나,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자녀의 심신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었다.²¹⁶⁾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내외에서는 관련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국내 자녀 인도집행에서도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 적용이 집행을 완료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²¹⁷⁾ 실제로 2017년 자녀 인도에 관한 직접강제 집행사건 중 약 40%가 집행불능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중 채무자의 저항이나 부재로 인한 집행불능이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거절 의사에 따른 집행불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⁸⁾

이렇듯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2019년에 민사집행법 개정과 함께 헤이그조약실시법도 개정 민사집행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동반 개정되었다.

II. 개정 민사집행법에서 자녀 인도 강제집행의 규율

■ 민사집행법

제174조(자녀 인도의 강제집행)

①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집행재판소가 결정으로 집행관에게 자녀의 인도를 실시하게 하는 방법
2. 제172조 제1항²¹⁹⁾에 규정하는 방법

119卷 第3号, 国際法学会 (2020), 2.

216) 竹田光広, “(座談会) 国内の子の引渡執行の実情 - 子奪取条約実施法施行以降の動向 -”,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37-39.

217)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17.

218)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271.

219) 제172조(간접강제) ①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 전조 제1항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지연의 기간에 상응하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② 전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2주를 경과한 때(해당 결정에서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일정한 기간의 경과가 그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때)
2. 전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도 채무자가 자녀의 감호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자녀의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때

③ 집행재판소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에게 긴급한 위험이 있는 때 및 그 밖의 심문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집행재판소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서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71조 제2항²²⁰⁾의 규정은 제1항 제1호의 집행재판소에 대하여, 동조 제4항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⑥ 제2항의 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71조 제4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5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설득하는 것 이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을 수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된 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자녀를 면회하게 하거나 채권자 및 그 대리인과 채무자를 면회하게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액의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행한다.

220) 제171조(대체집행) ② 전항의 집행법원은, 제3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정한 채무명의를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한 법원으로 한다.

- ② 집행관은 자녀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 해당 장소 및 그 주위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해당 장소 점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집행재판소는 자녀의 주거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 채무자와 해당 장소의 점유자의 관계, 해당 점유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점유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④ 집행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의한 자의 감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채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⑥ 집행재판소는 채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해당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해당 대리인과 자녀의 관계, 해당 대리인의 지식과 경험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자녀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대리인이 해당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⑦ 집행재판소는 언제든지 전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⑧ 집행관은 제6조²²¹⁾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④ 집행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결정에 기재된 행위를 이행하기 위한 데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사전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② 전항의 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채무명의로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2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6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채무명의로, 그리고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명의로 중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1심을 담당한 재판소 6, 제2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명의로 중, 화해·조정(상급재판소에서 성립된 화해 및 조정 제외) 및 노동심판에 관한 것(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외)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간이재판소, 지방재판소 또는 가정재판소(단, 간이재판소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이 간이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간이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노동심판이 이루어진 노동심판 사건이 계속되었던 지방재판소.

221) 제6조(집행관 등의 직무의 집행 확보) ① 집행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항을 받는 때에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경찰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의2 제5항(제1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행관 이외의

⑨ 집행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6조(집행재판소 및 집행관의 책무)

집행재판소 및 집행관은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따른 자녀의 인도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자녀의 인도를 실현할 때에는 자녀의 연령, 발달의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해당 강제집행이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기본적인 방향

2016년에 착수된 민사집행법 개정 작업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자녀 인도 강제 집행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함에 있어, 자녀 인도청구권의 실체법적 성질에 따라 확일적으로 집행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적 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방식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였다. 이는 자녀 인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집행절차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²²²⁾

그리고 헤이그조약실시법의 규정을 근거로 국내 자녀 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필요한 개정 또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헤이그조약실시법 자체도 국내 절차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²²³⁾

2. 개정 민사집행법의 내용

가. 직접적 강제집행 채택

개정 민사집행법 제174조 제1항은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으로 소위 ‘직접적인 강

자가 집행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저항을 받을 때에 집행관에 대하여 원조를 구할 수 있다.

222) 山本和彦 監修, 論点解説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 きんざい (2020), 208.

223) 개정법 아래에서 도쿄가정재판소의 운용에 관하여는 村井壮太郎, “東京家庭裁判所における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事件の運用について”, 家庭の法と裁判 第28号,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32.

제집행'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가 집행재판소에 신청을 하고, 집행재판소가 집행관에게 자녀의 인도 실시를 명령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이후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신청을 하고, 집행관이 집행장소로 가서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제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흐름이다.

이는 집행기관이 집행재판소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인도청구에서의 직접강제와는 다르며, 오히려 헤이그조약실시법상 강제집행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집행관이 자녀의 인도를 직접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집행재판소가 제3자로 하여금 아동을 반환하게 하는 헤이그조약실시법상 대체집행과도 구별된다.²²⁴⁾

나. 간접강제전치 구조의 신설과 직접적 강제집행의 예외적 허용

종래 민사집행법 체계에서는 국내 사건의 자녀 인도집행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와 직접강제(동산인도집행의 유추적용)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으며, 간접강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 민사집행법은 자녀 인도집행의 경우 자녀의 심신에 가해질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하여, 간접강제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수단으로 보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간접강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하여 집행재판소의 판단을 요하도록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2019년 개정 민사집행법은 간접강제전치 원칙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한 예외적 요건 아래에서만 간접강제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적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구조를 정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²⁵⁾²²⁶⁾

민사집행법 제174조 제2항은 ① 간접강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경우(제1호), ② 간접강제로는 인도 실현의 전망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2호), ③ 자녀의 긴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접적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이는 자녀 인도라는 특수한 집행 대상의 속성을 반영하여,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되, 집행방식에 대한 법원의 통제적 판단을 통해 자녀 보호와

224) 광민희,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66.

225) 헤이그조약실시법은 자녀 반환에 있어 간접강제를 반드시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이그조약실시법과의 비교적 맥락에서 보면, 간접강제전치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간접강제전치의 원칙에 대해서는 운용상 실효성 문제와 절차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226)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237.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74조 제3항). 이때 재판소는 단순히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에 대한 채무자의 반론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 인도에 대한 채무자의 의사, 지금까지의 대응 경과, 그리고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 상태 등도 함께 확인하고 고려한다. 다만, 자녀에게 긴급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심문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²²⁷⁾

라.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 부적용

자녀 인도 집행에 있어, 자녀와 채무자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제2항 및 제3항). 그 대신, 채권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이는 집행 현장에서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공포와 혼란을, 채권자 본인이 현장에 출석하여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채권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대리인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와의 관계, 해당 인물의 지식과 경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6항).²²⁸⁾

마. 집행장소 선택의 확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자녀를 해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법과정에서는, 자녀 인도집행을 제3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해

227)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143.

228)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143.

당 제3자에 대하여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미치는지 검토되었는데 이는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즉,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냐)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의 문제로 정리되었다.²²⁹⁾

채무자의 주거 및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해당 장소의 점유자의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집행재판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²³⁰⁾ 동의를 필요한 이유는 집행관에 의한 권한의 행사(출입이나 문의 잠금 해제 등)가 장소점유자의 재산권 등의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¹⁾ 다만, 재판소 허가의 요건으로서 자녀의 주거일 것과 상당성의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같은 조 제3항) 자녀의 주거 이외의 장소(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서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장소의 점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거기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³²⁾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유연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²³³⁾

바. 집행관 권한의 명문화

자녀 인도에 관한 직접적 강제집행은, 집행기관인 집행재판소의 수권 결정에 근거하여 집행관이 실시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집행관의 조치는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 의한 자녀의 감호를 해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채무자를 설득하는 것에 더하여, 채무자의 거주지,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수색 등이 가능하고(제1호),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자녀, 채무자를 면회시키고(제2호),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제3호). 또한 집행관이 채권자와

229) 山本和彦 監修, 論点解説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 きんざい (2020), 231; 垣内秀介, “子の引渡しを命じる債務名義の執行力の主観的範囲”, 曹時 第70卷 第10号, 東京法曹会 (2018), 1.

230)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268.

231)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58. 따라서 공공도로, 공원에 대하여 동의는 문제되지 않지만, 자녀의 프라이버시나 심신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232) 村井壮太郎, “東京家庭裁判所における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事件の運用について”, 家庭の法と裁判 第28号,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40; 谷英樹,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子の引渡し - 弁護士実務の対応を中心に”,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日本加除出版 (2020), 81.

233) 山川一陽・松嶋隆弘, 民事執行法及びハーグ条約実施法等改正のポイントと実務への影響, 日本加除出版 (2020), 255.

그 대리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같은 조 제9항). 이러한 집행관의 권한은 기존 헤이그조약실시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인해 집행이 가능한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채무자의 주거 및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다.²³⁴⁾

사. 집행관에 의한 위력행사의 제한

민사집행법 제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인도집행을 할 때 자녀에 대한 위력²³⁵⁾의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자녀 이외의 제3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되, 그 과정에서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력의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75조 제8항).²³⁶⁾ 이는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기존 헤이그조약 실시법의 내용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채무자와 자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채무자에게 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제한되었다.²³⁷⁾ 그러나 2019년 개정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을 폐지하고, 채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채권자와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인도를 허용하여, 자녀 인도집행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방식이 유연화되었다.²³⁸⁾

234)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に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145-146.

235)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신체적 저항을 보이는 아이를 억지로 안거나 잡아당기거나 끌고 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싫다고는 하지만 신체적 저항까지는 하지 않는 아이를 손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서 유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池田清貴, “民事執行法等の改正(後編) - 子の引渡しの直接的な強制執行について -”, 養育費・親子交流相談支援センター, <https://www.youikuhi-soudan.jp/pdf/newsletter25.pdf> (2025. 6. 23. 최종 확인)]; 자녀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129].

236)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23.

237)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283.

238)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23.

아. 자녀의 심신에 대한 배려의 명문화

민사집행법 제176조는 자녀의 심신에 대한 배려를 집행재판소 및 집행관의 책무로 명문화하였다.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부터 아동심리학 등의 전문가에게 집행보조자(일본 집행관규칙 제12조)²³⁹⁾ 또는 입회인(제7조)²⁴⁰⁾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있었고²⁴¹⁾ 실무에서는 약 60%의 사건에서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집행현장에 참여하고 있었다.²⁴²⁾ 따라서 위 규정은 아동 심리 전문가를 자녀 인도집행에서 특히 집행보조자로 활용하는 운용방식을 한층 더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²⁴³⁾ 집행보조자인 아동 심리 전문가는 집행관과 함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고, 사전에 협의한 역할분담에 따라 자녀 및 채무자, 기타 가족에게 말을 거는 등 자녀 및 가족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자녀를 인도하고 싶지 않은 심정을 공감하면서 자녀의 인도를 통해 자녀에게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채무자가 자녀를 인도한 후에도 면접교섭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와 만나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의 설명을 통해 채무자가 향후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놀이도구를 가지고 놀면서 긴장감을 풀어주고, 밖에서 채권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자녀가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는데 집행보조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처음에는 저항하던 채무자도 점차 차분해지고 집행에 협조적인 태도로 변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정서불안이 심한 경우나 자녀가 채무자에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할 때,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239) 일본 집행관규칙 제12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행관은 민사집행법(1994년 법률 제4호), 민사보전법(1989년 법률 제91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집행관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사용할 수 있다.

240) 일본 민사집행법 제7조(입회인) 집행관 또는 집행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집행관 등”이라 한다)는, 사람의 거주지에 들어가 직무를 집행할 경우, 거주자 본인, 그 대리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 고용인 기타 상당한 식견이 있는 종사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시정촌의 직원, 경찰관 또는 증인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집행관이 전조(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력을 사용하거나, 경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회가 요구된다.

241)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284; 집행보조자와 입회인의 역할의 차이 등 전문가의 관여에 대해서는 下坂節男,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における実務の実情 - FPICでの立会人等の事例を中心に -”,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2020), 84.

242) 下坂節男,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における実務の実情 - FPICでの立会人等の事例を中心に -”,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家庭の法と裁判研究會 (2020), 83.

243) 쓰루오카 겐이치, “일본의 민간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인도 강제집행 보조 -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의 지원활동 -”,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자료집 (2023. 11. 15.), 185,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0&gubun=195&cbun_code=&searchWord=¤t (2025. 6. 23. 최종 확인).

의견을 들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자녀를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아동심리 및 가족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자녀 복리가 최우선이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²⁴⁴⁾

자. 사전준비 작업 명문화

자녀 인도집행의 원활한 실시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 필수적이다.²⁴⁵⁾ 이에 따라 개정 민사집행규칙에서는 집행관이 다양한 협조와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규칙 제161조에서 채권자에 대한 협력의 요청(제1항), 사건이 계속된 수소재판소나 집행재판소에 대한 협력의 요청(제2항), 가정재판소 조사관, 재판소 기술관으로부터의 의견청취(제3항)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집행현장에 참여하는 아동 심리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 및 현장에서 역할분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⁴⁶⁾ 이에 따라 집행관은 자녀인도의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팀 단위로 준비 및 실시방향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헤이그조약실시규칙에 준하여 개정 전부터 실무상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계기로 도쿄가정재판소에서는 집행관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방식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⁴⁷⁾

3. 자녀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개정 민사집행법에는 자녀의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개정 전 실무상 개별 사안에 따라 강제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는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 민사집행법에서도 국내의

244) 쓰루오카 겐이치, “일본의 민간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인도 강제집행 보조 -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의 지원활동 -”,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자료집 (2023. 11. 15.), 185,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0&gubun=195&cbub_code=&searchWord=¤t (2025. 6. 23. 최종 확인).

245)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21.

246)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24.

247) 村井壮太郎, “東京家庭裁判所における子の引渡し強制執行事件の運用について”, 家庭の法と裁判 第28号,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42-43.

자녀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에 맡기고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았다.²⁴⁸⁾ 한편 종래 일본의 국내 자녀 인도집행에서는 동산의 인도집행 규정이 유추적용되었기 때문에 인도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상한에 대해서는 사물에 대한 지배관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의 관점 등에서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8세 ~ 10세) 운용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헤이그조약실시법이 적용되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의 경우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자체가 1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제4조)을 근거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 대해서도 16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헤이그조약 실시법 제135조).

III. 헤이그조약실시법 등의 동반 개정

민사집행법의 개정에 맞추어, 헤이그조약실시법 또한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개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헤이그조약 실시법의 규정은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준용이 배제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개정 헤이그조약실시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래의 헤이그조약실시법과는 달리 간접강제전치의 원칙을 완화(헤이그조약실시법 제136조),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의 예외 허용(같은 법 제138조 제2항), 채무자동시존재의 원칙을 폐지(개정 전 같은 법 140조 제3항의 삭제, 개정 같은 법 제140조 1항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5항, 제6항의 준용), 집행장소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헤이그조약실시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4항의 준용), 집행재판소 및 집행관의 배려책무(헤이그조약실시법 제140조 제1항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176조의 준용) 등이 규정되었다. 종래 헤이그조약실시규칙은 헤이그조약실시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형태로 규율하고 있었는데, 현행 규칙은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법에 신설된 자녀 인도집행과 관련된 민사집행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헤이그조약실시법 제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8조부터 제164조).²⁴⁹⁾

248) 일본 법무성 민사집행분과 제1차 회의 참고자료는 <https://www.moj.go.jp/content/001209872.pdf>, 89 (2025. 6. 23. 최종 확인).

249)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14; 곽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IV. 시사점

일본은 자녀 인도 강제집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오랜 기간 부재한 상황에서, 실무상 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왔다. 자녀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유추적용의 한계는 분명했으나, 명확한 대안 없이 사례별 대응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헤이그조약실시법의 제정은 자녀 인도 강제집행의 법적 구조를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이 제도의 실무 적용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일반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단순한 협약 이행 수준을 넘어, 국제사건을 계기로 국내 민사집행 전체의 틀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는 예규를 통해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가 변화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과 같은 체계적 입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입법 경로는 그 방향성과 구체적 설계 요소 측면에서 매우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헤이그조약실시법은 초기에 아동에 대한 반환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간접강제를 우선하는 간접강제전치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이 구조는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지만, 곧 실무에서는 간접강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개정에서는 간접강제전치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일정 요건 아래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녀의 복리 평가와 간접강제의 실효성 검토에 따른 단계적 집행 구조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만한 제도적 방향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일본의 경우, 자녀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집행법원인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리 판단과 집행의 실효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녀의 인도라는 민감한 집행에 있어 일정한 요건 아래 직접강제를 허용하되, 그 시작점에서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녀 복리 중심의 사법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71.

또한 일본은, 집행관의 권한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집행의 법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집행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 집행관의 역할과 권한은 예규를 통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함에 따라 동산인도집행에 준한다고 보지만, 그 요건과 한계가 불분명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집행관의 권한 및 행위 유형, 그 한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은 자녀 인도 강제집행이 자녀에게 정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 심리 전문가 등을 집행보조자(일본 집행관규칙 제12조)로 현장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자녀 인도집행을 단순한 법률상 강제 절차로 한정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와 보호의 요소를 절차에 통합한 복합적 집행체제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유아인도집행예규를 통해 자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예규 수준에 머물러 있다.²⁵⁰⁾

따라서 자녀 관련 전문가 참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 또는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자녀 인도집행을 단순한 자녀에 대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유도하는 절차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50) 참고로 우리나라의 집행관규칙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는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집행관규칙 제12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의 “집행관은 민사집행법(1994년 법률 제4호), 민사보전법(1989년 법률 제91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집행관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사용할 수 있다.”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처럼 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자녀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적극 참여시키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절 독일의 법제 및 실무



I.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1. 국제협약과 이행법률 등

독일에서는 1990년 9월 27일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비준되고, 1990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²⁵¹⁾ 이는 국제결혼 증가와 이혼 사례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불법적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독일은 이를 통해 아동의 복리 보호와 법적 권리 강화를 추구했다. 또한 독일은 국제적 아동양육분쟁의 해결을 위해 헤이그아동보호협약(KSÜ),²⁵²⁾ 아동의 양육권 결정의 및 집행, 양육관계 회복에 관한 룩셈부르크 유럽아동양육권협약(ESÜ)²⁵³⁾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1980년 5월 20일 룩셈부르크 양육권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SorgeÜbkAG)」²⁵⁴⁾을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2005년 1월 26일 「국제가족법 분야 특정 법적 수단의 이행 및 시행을 위한 법률」²⁵⁵⁾(이하 ‘국제가사사건절차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²⁵⁶⁾²⁵⁷⁾ 국제가사사건절차법

251) HCCH, “Statustabelle”, 28: Übereinkommen vom 25. Oktober 1980 über die zivilrechtlichen Aspekte internationaler Kindesentführung Inkrafttreten: 1–XII–1983, <https://www.hcch.net/de/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24> (2025. 6. 23. 최종 확인).

252) Haager Übereinkommen vom 19. Oktober 1996 über die Zuständigkeit, das anzuwendende Recht, die Anerkennung, Vollstreckung und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elterlichen Verantwortung und der Maßnahmen zum Schutz von Kindern (BGBl. 2009 II S. 602).

253) Luxemburger Europäische Übereinkommen vom 20. Mai 1980 über die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von Entscheidungen über das Sorgerecht für Kinder und die Wiederherstellung des Sorgeverhältnisses (BGBl. 1990 II S. 220).

254) 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5. Oktober 1980 über die zivilrechtlichen Aspekte internationaler Kindesentführung und des Europäischen Übereinkommens vom 20. Mai 1980 über die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von Entscheidungen über das Sorgerecht für Kinder und die Wiederherstellung des Sorgerechtes.

255) Gesetz zur Aus- und Durchführung bestimmter Rechtsinstrumente auf dem Gebiet des internationalen Familienrechts.

256) 박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27.

257) Gesetze im Internet, “Gesetz zur Aus- und Durchführung bestimmter Rechtsinstrumente auf dem Gebiet des internationalen Familienrechts”,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tfamrvg/> (2025. 6. 23. 최종 확인).

은 국제적인 가족법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였고, 국제협약과 EU 규정을 독일 국내법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U 규정[브뤼셀 II-ter 규정, Regulation (EU) 2019/1111]은 EU 회원국 간 국제아동탈취 사건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 보완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로는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²⁵⁸⁾(이하 ‘가사사건절차법’이라 한다)이 있다.

2. 중앙당국으로서의 연방법무청²⁵⁹⁾

독일 국제가사사건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방법무청(Bundesamt für Justiz)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규정에 근거하여 독일 내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법무청은 필요한 때에는 관할 독일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연방법무청은 아동의 반환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의 위임을 통해 법원에서 혹은 법원 외에서 활동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 관련 절차는 연방법무청이 해당 목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연방법무청은 협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국제가사사건절차법 제6조 제2항).

연방법무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취하며, 국내외 모든 관련 기관들과 직접 교류한다(국제가사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258) Gesetze im Internet,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https://www.gesetze-im-internet.de/famfg/> (2025. 6. 23. 최종 확인).

259) Bundesamt für Justiz, “Hinweise zu internationalen Sorgerechtskonflikten”, https://www.bundesjustizamt.de/DE/Themen/Familieinternational/Sorgerecht/Hinweise/Hinweise_node.html (2025. 6. 23. 최종 확인).

II. 법원이 아동반환을 명한 경우의 이행확보

1.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체계²⁶⁰⁾

독일에서 아동반환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앞서 언급한 국제가사사건절차법과 가사사건절차법이 있다. 가사사건절차법은 가정법원 재판의 집행에 적용되는 국내법으로 국내 가사사건의 자녀 인도집행은 물론이고 헤이그아동반환재판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국제가사사건절차법은 국제가사사건에 전문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헤이그아동보호협약 등의 의무에 대응하고 있고 EU규정 등과 같은 가족법에 관한 유럽의 제반 규칙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종전 상거소국으로부터 독일로 불법하게 탈취된 경우, 독일 법원에서 아동반환을 명하는 재판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절차법과 국제가사사건절차법 등이 적용된다.

2. 자발적인 반환조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아동반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집행단계에서도 자발적 반환이 장려되며,²⁶¹⁾ 이를 위해 독일 법원은 아동반환 재판절차에서 될 수 있으면 재판을 통한 강제력 실현에 의하지 않도록 탈취 부모에게 아동의 임의 반환을 권장한다. 실무에서는 아동반환을 위한 강제집행, 특히 직접강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아동이 임의로 반환되거나, 아동이 탈취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절차가 종결된다.²⁶²⁾

3. 강제집행

해외에서 독일로 아동이 탈취된 사건에서 아동반환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하여는 독일 국내법에 따른다.²⁶³⁾

260) 광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27-28.

261) 광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30.

262) 석광현/이병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120.

263) 따라서 이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사건은 물론이고 독일 국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도 적용된다. 특별히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가. 가정법원의 역할

독일법상 자녀인도 집행권원에 근거한 모든 집행은 가정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주도한다. 가정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 이유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인 만큼 반환 재판은 물론 집행도 자녀의 복리에 대한 고려 아래 가정법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절차는 가사사건절차법 제86조부터 제94조에 의하는데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국제가사사건절차법 제44조²⁶⁴⁾가 추가로 적용된다.²⁶⁵⁾

나. 간접강제

법원에서 자녀의 인도를 명한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녀의 인도를 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법원은 간접강제로서 질서제재(Ordnungsmittel)에 해당하는 질서금(Ordnungsgeld)²⁶⁶⁾을 부과하거나 질서구금(Ordnungshaft)²⁶⁷⁾을 명할 수 있는데,²⁶⁸⁾ 이러한 제재수단의 목적은 자녀 인도라는 목적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법원이 자녀 인도와 같은 명령을 내릴 때는 불이행 시 제재(질서금, 질서구금)를 받을 수 있음을 미리 명시해야 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89조 제2항). 만일 이러한 경고의 문구가 결정문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인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나중에라도 인도 명령 불이행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이 있어야만 그 결정 이후의 인도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 비례성의 원칙

집행은 국가의 주권행위이므로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ssigkeits

이를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264) 국제가사사건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통상의 민사집행과 달리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 있어서는 관할을 가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조치를 명할 권한을 가지는 법원은 아동의 반환명령이 집행가능하다는 점을 선언하는 법원인데 아동의 반환명령을 내린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석광현/이병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상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119].

265) 박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28.

266) 상환은 25,000유로이다(유로환율 2025. 6. 5. 기준 1유로당 1,554.27원으로 계산하면 38,856,750원). 이하 본 연구보고서에서 유로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유로당 1,554.27원의 환율을 적용한다.

267)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구금을 선고할 수 있고 반복해서 구금할 수 있으나 총 구금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민사소송법(ZPO) 제890조].

268) 채무자인 의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절차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prinzip)이 준수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판사는 부모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자녀의 의사도 직접 청취해야 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159조).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가사사건절차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청(Jugendamt)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88조 제2항).²⁶⁹⁾ 자녀의 인도를 명한 경우에도 강제력 사용을 허가하고 직접강제를 명하기 전에 질서금 부과, 질서구금 조치와 같은 제재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²⁷⁰⁾

가사사건절차법상 제재수단의 체계를 보면 우선 질서금의 부과를 한 후 납부불능 등의 경우에 보충적으로 질서구금을 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질서금을 부과할 때,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만일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일정 금액당 1일의 비율로 질서구금에 처한다’는 방식의 대체 집행 명시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사사건절차법 제89조 제1항 제2문은 질서금의 부과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질서구금을 직접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질서구금(이하 ‘1차적 질서구금’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가사사건에서는 주로 면접교섭 거부 등의 단발성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많아 질서구금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1차적 질서구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²⁷¹⁾²⁷²⁾

한편 직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들은 가사사건절차법 제90조에 열거되어 있는데(그러나 반드시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제재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았을 경우(제1호), 둘째, 제재수단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2호), 셋째, 결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제3호)이다.²⁷³⁾

다만,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즉 긴급성이 있다고 보아 강제집행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

269)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7.

270) BT-Drs. 16/6308, 218;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7.

271)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란 친권을 갖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데려가 숨겨버린 자녀 탈취 사건으로서 자녀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차적 질서구금의 전형적 상황이다. 독일의 각급 법원은 이러한 경우 질서금보다는 질서구금이 적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고의적 장기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서는 1차적 질서구금을 고려할 수 있다.

272) Niedersächsisches Vorschrifteninformationssystem (NI-VORIS), <https://voris.wolterskluwer-online.de/browse/document/b9d0d1f1-cc45-4a7a-ac94-95ce806010c> (2025. 6. 23. 최종 확인); Familienrecht-Deutschland.de, https://www.familienrecht-deutschland.de/Oberlandesgerichte/Neue_Seite_23 (2025. 6. 23. 최종 확인).

273) 예를 들어 집행이 지연되면 자녀가 해외로 이동되어 이후의 집행 시도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0].

는데, 상대방이 명백히 임의의 아동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질서구금을 명하는 외에, 직접강제를 명하는 것도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국제가사사건절차법 제44조).²⁷⁴⁾

라. 직접강제

법원은 강제력의 사용 및 직접강제(Unmittelbarer Zwang)²⁷⁵⁾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가사사건절차법 제90조).

(1) 허가 절차

직접강제(가사사건절차법 제90조)의 허가에 대한 결정 절차는 자녀 인도를 명하는 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절차이다.²⁷⁶⁾ 자녀 인도 절차는 친권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151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자녀, 부모, 양육자 및 청소년청에 대한 청취의무(Anhörungspflicht, 가사사건절차법 제159조 내지 제162조)가 적용된다.²⁷⁷⁾ 다만, 가사사건절차법 제92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직접강제를 명령하기 전의 의무자에 대한 청취의무는 집행에 방해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²⁷⁸⁾ 이 규정은 다른 관련 당사자나 청취 대상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²⁷⁹⁾

274) 석광현/이병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117-118.

275) 우리법상 직접강제는 집행기관이 집행관이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시하는 집행방법이나 ‘Unmittelbarer Zwang’는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고 법원의 수권에 의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법상 ‘대체집행’에 가까우므로 ‘Unmittelbarer Zwang’를 원래 용어의 의미에 따라 ‘직접적인 강제집행’ (혹은 ‘강제적인 집행’)이라고 부르는 견해로는 과민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34.

276) BGH NJW 1973, 2288; BayObLG FamRZ 1977, 739 und 1985, 521; OLG Hamm FamRZ 1980, 481;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4; 긴급성이 있고 결정의 조속한 집행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서 질서금 부과 등의 간접강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임시조치를 위한 가처분명령의 방식(가사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으로 인도명령을 내리면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이 즉시 실시될 수 있도록 경찰력 등 직접강제의 사용 및 채무자의 주거 수색과 잠금 해제까지도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Niedersächsisches Vorschrifteninformationssystem (NI-VORIS), <https://voris.wolterskluwer-online.de/browse/document/b9d0d1f1-cc45-4a7a-ac94-95ce806010cc>]. 또한 법원은 의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가처분명령의 집행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처분명령은 결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가사사건절차법 제53조 제2항).

277) OLG Schleswig SchlHA 1979, 20; OLG Düsseldorf FamRZ 1983, 90; OLG Oldenburg FamRZ 1978, 706; 긴급한 위험 상황(Gefahr im Verzug)으로 인해 조치가 생략된 경우 보완 필요,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4.

278)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4.

279)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4.

자녀를 위해 절차보조인(Verfahrensbeistand)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가사사건절차법 제158조 참조), 조정절차(가사사건절차법 제165조)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은 직접강제 명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가사사건절차법 제92조 제3항 제1문). 한편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직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92조 제3항 제2문).

(2) 허가 결정의 내용

직접강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명시적인 결정(가사사건절차법 제90조)을 전제로 한다.²⁸⁰⁾ 일반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강제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경우 집행관은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은 채권자가 집행의 장소·시간에 동의하고 현장에서 자녀를 인계받는 경우에만 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자녀를 발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를 의사에 반하여 수색할 권한이 있으며, 잠긴 문·방 또는 용기를 강제로 개방할 수 있다. 인도 명령 위반 시, 건별로 최대 25,000유로의 질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질서구금에 처할 수 있다. 질서금 부과가 효과가 없을 경우 법원은 최대 6개월의 질서구금을 명할 수 있다.” 등과 같이 가정법원은 집행관에게 직접강제를 통한 자녀 인도집행을 명한다.²⁸¹⁾ 그리고 인도의무를 직접강제의 방식으로 집행하라는 명령은 가정법원이 집행관에게 요청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집행관을 위한 업무지침(GVGA, 이하 ‘집행관지침’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강제력은 자녀의 인도의무자인 채무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²⁸²⁾ 예외적으로 자녀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 허가될 수도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제2문). 다만, 자녀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실질적 재검토를 전제로 한다.²⁸³⁾ 인도 명령이 내려진 이후 상황이 변하였다면 이

280)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6; Cirullies, Dr. (2012), Kindesrückführung und internationale Vollstreckung. Vortrag auf der Herbsttagung der Familienanwälte im Deutschen Anwaltverein. Verfügbar unter, <https://familienanwaelte-dav.de/files/media/familienanwaelte/herbsttagung/2012/Dr.%20Cirullies.pdf> (2025. 6. 23. 최종 확인).

281) AG Bamberg, Beschluss vom 14. 10. 2021 - 0207 F 1098/21, Gesetze Bayern,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1-N-42855?hl=true&utm> (2025. 6. 23. 최종 확인).

282)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3.

283) OLG Düsseldorf FamRZ 1981, 601 mwN (auch zum Umfang der Nachprüfung); BayObLG FamRZ

때에는 명령된 강제가 자녀(반항하는 반환 대상 자녀)의 복리 및 인격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독일 기본법(GG) 제2조 제1항²⁸⁴⁾에 따른다.²⁸⁵⁾ 자녀(외국 국적의 자녀 포함)도 기본권의 주체이며, 연령²⁸⁶⁾에 따라 기본권을 스스로 행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기본권 성숙도).²⁸⁷⁾ 어린 아이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판단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더 큰 비중을 갖는다.²⁸⁸⁾ 따라서 14세 자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²⁸⁹⁾ 그 밖에 더 온건한 수단으로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²⁹⁰⁾ 강제적인 인도가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²⁹¹⁾ 자녀에게 소년 구금처분(Jugendarrest)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된다.²⁹²⁾

(3) 직접강제에 의한 집행

가정법원으로부터 자녀 인도집행에 대한 직접강제를 요청받은 집행관은 집행에 앞선 논의에서 자녀를 인도받을 채권자에게 자녀 인도집행은 채권자가 현장에서 자녀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여야 한다[집행관지침²⁹³⁾ 제156조 제4항].²⁹⁴⁾ 따라서 집행관이 단독으로 저항하는 자녀를 “잡아서” 채권자에게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한다.²⁹⁵⁾ 법원이나 집행관은 집행을 지원받기 위해 청소년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88조 제2항).²⁹⁶⁾ 다만 청

1995, 500; OLG Hamburg FamRZ 1994, 1128 und 1996, 1093;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284) 독일 기본법(GG) 제2조 제1항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을 어기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285) BayObLGZ 1974, 317; FamRZ 1984, 1259; 1985, 737 mwN; vgl. BGH FamRZ 1975, 273;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286) BVerfG FamRZ 2008, 1737; 11세 AG Springe NJW 1978, 834; 10세 KG FamRZ 1966, 155; 8세인 경우 달리보는 OLG Hamm DAV 1975, 156; 9세와 7세의 두 자녀인 경우 OLG Celle FamRZ 1994, 1128 zitiert nach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Fn. 21.

287)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288) VerfG FamRZ 2008, 1737; 2007, 1878;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289) VerfG FamRZ 2008, 1737; 2007, 1878;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290)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4.

291) Vgl. OLG Zweibrücken FamRZ 2001, 1536;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5.

292)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5.

293) 실무상 가정법원의 직접강제 허가 결정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94)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295)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소년청은 집행 현장에 참여하더라도 집행을 보조할 뿐이며 직접 집행을 맡을 수는 없다.²⁹⁷⁾ 집행관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자녀 인도를 위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가사사건절차법 제87조 제3항, 제91조).²⁹⁸⁾ 집행관은 강제력 행사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²⁹⁹⁾ 집행 연기는 집행 중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예를 들어 반환 의무자인 어머니가 자살의 위험을 신빙성 있게 주장하는 경우), 집행관은 집행을 중단하고 연기할지, 또는 철수하여 전화로 경찰이나 의사 등 도움을 요청할지 판단할 수 있다[집행관지침 제65조, 제156조 및 민사소송법(ZPO) 제765a조 제2항 참조].³⁰⁰⁾ 집행관이 자녀를 학교에서 인도받은 경우, 해당 사실은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가능한 즉시(예를 들어 전화로) 집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³⁰¹⁾

(4) 자녀의 개인 소지품 반환

자녀의 개인 물품(의류, 교과서, 신분증, 장난감, 애완동물 등)의 반환 집행³⁰²⁾은 이에 관한 권원(예를 들어 가처분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강제력 행사 결정과 동시에 발부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는 독립적이지 않은 부수절차로 간주된다.³⁰³⁾ 소유권의 최종적인 판단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나중에 이루어진다.³⁰⁴⁾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집행관은 자녀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물품, 예컨대 의류와 학용품을 가져갈 수 있다(집행관 지침 제156조 제6항).³⁰⁵⁾

4. 자녀 탈취에 대한 처벌

불법적인 자녀 탈취는 독일 내에서는 국외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StGB)

296)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297)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298)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299)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300) Sternal/Giers FamFG § 90 Rn. 8;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301)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8.

302) 이에 관해서 Peschel-Gutzeit, MDR 1984, 890; Schüler, DGVZ 1980, 97 zitiert nach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19.

303)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20.

304) BT-Drs. 7/2060, 22;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20.

305) Schüler DGVZ 1980, 102; MüKoFamFG/Zimmermann FamFG § 90 Rn. 20.

제235조는 자녀 탈취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내 자녀 탈취의 경우, 자녀를 다른 부모로부터 일시적 수준을 넘어 물리력, 심각한 위협, 또는 속임수로 데려갔을 때 형사처벌이 적용된다.³⁰⁶⁾ 국외 자녀 탈취의 경우, 자녀를 단순히 국외로 데려가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자녀탈취죄는 친고죄(Antragsdelikt)에 해당하며,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형사 고소를 제기해야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형법(StGB) 제235조 제7항].

III. 시사점

독일은 국제가사사건절차법, 가사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ZPO)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 인도 강제집행을 국제 사건과 국내 사건 모두에 적용 가능한 일반 절차로 정비하였다. 이 체계는 자녀의 복리 중심, 비례성 원칙, 공권력 동원, 전문가 개입 등의 요소를 실정법 내에 명문화하면서, 단순한 권리 집행을 넘어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까지 포괄하는 강제집행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은 자녀 인도에 관한 재판과 그 집행을 모두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본안에서의 복리 판단과 집행 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본안판단은 가정법원이 하지만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원적 구조이며, 이는 본안에서의 복리 판단과 집행 간에 괴리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가정법원이 집행의 단계에서 개입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은 자녀 인도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질서금, 질서구금을 마련하여 두고 이와는 별도로 직접강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단의 다양성을 통해 법원이 사건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자녀 인도집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비례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특히 직접강제를 선택할 경우에도 별도의 결정이 요구되며, 집행관의 구체적 행위는 법률 및 집행법원에 의해 통제된다. 한국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집행 대상이 물건이 아닌 자녀이다 보니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행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독일식 체계는 집행의 법적 정당성, 예측가능성, 통제

306) Vgl. MüKoStGB/Wieck-Noodt StGB § 235 Rn. 37 und 38.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즉, 집행관의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집행관의 집행행위 중 상당 부분은 법원의 명시적 허가를 요한다. 이는 집행관이 사실상 현장의 상황을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실무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집행의 법률적 안정성과 자녀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녀 인도집행 시 집행관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법률상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일정한 경우 자녀에 대한 강제력 행사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녀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방식과 범위는 반드시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제5절 프랑스의 법제 및 실무



I.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1.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및 관련 법률

프랑스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 1982년 9월 16일 비준, 1983년 12월 1일 발효되었고³⁰⁷⁾ 이후 EU 규정(현재 브뤼셀 II ter)과 조화를 이루며 국제적 아동탈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³⁰⁸⁾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정식으로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협정은 공포 즉시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나, 상대국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약의 국내 우위와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³⁰⁹⁾ 따라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은 프랑스 국내 입법을 통해 별도로 조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접 적용되며 프랑스의 경우 따로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반환 집행에 관하여, 현재 민사소송법전, 민사집행법전, 민법전 등의 규정들이 협약 이행을 위한 절차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를 ‘부모 탈취(enlèvement parental)’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형사상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³¹⁰⁾ 부모 탈취에는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행사 한 후 자녀를 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모 일방이 다른 쪽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와 이사하는 경우 또는 다른 쪽 부모에게 자녀를 데려다 주기를 거부하는 상황 등도 이에 해당한다.³¹¹⁾

307) HCCH, “Status table 28: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24> (2025. 6. 23. 최종 확인).

308) Ministère de la Justice, “Enlèvement parental : les conventions applicables”, <https://www.justice.gouv.fr/enlevement-parental-conventions-applicables> (2025. 6. 23. 최종 확인).

309) Legifrance,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ARTI000006527541/> (2025. 6. 23. 최종 확인).

310) Service-public.fr, “Enlèvement parental – Non-représentation d'enfan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191> (2025. 6. 23. 최종 확인); Estelle GALLANT, 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 LA CONVENTION DE LA HAYE DU 25 OCTOBRE 1980, - Droit général de l'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JurisClasseur Droit international, Fasc. 549-30, 01/04/2023.

311) 정도희/배진아,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아동반환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257.

2. 중앙당국³¹²⁾

가. 법무부

프랑스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민사·인장국(Direction des affaires civiles et du sceau)’ 내 ‘상호지원 및 국제사법·유럽법부(Département de l'entraide, du droit international privé et européen, DEDIPE)’에서 담당한다.

나. 중앙당국의 역할

아동이 외국에서 프랑스로 탈취되었고, 이에 따른 아동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프랑스 중앙당국은 불법적으로 상거소국으로부터 이동된 아동을 돌려보내기 위해 우선 협약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탈취 부모가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자발적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청한다. 중앙당국의 요청에 답변이 없거나 자발적인 아동반환이 없는 경우 중앙당국은 해당 사건을 관할 법원의 공화국 검사³¹³⁾에게 전달한다.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공화국 검사는 법원에 아동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가사 담당 판사가 아동의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 공화국 검사는 프랑스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한다.³¹⁴⁾³¹⁵⁾

312) Ministère de la Justice, “Enlèvement parental : l'autorité centrale”, <https://www.justice.gouv.fr/lautorite-centrale> (2025, 6, 23, 최종 확인).

313) 프랑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법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조직이다. 법원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우리 검찰과는 달리, 프랑스 검찰은 각급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법원의 편제에 따라 대법원(La cour de Cassation : 직역하면 파기원) 검찰, 고등법원(La cour d'appel : 직역하면 항소원) 검찰, 지방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 직역하면 대심법원) 부치(附置) 검찰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법원 소속으로 1심을 관할하는 검찰의 수장을 ‘Procureur de la Republique’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라고 한다. 우리와 비교해 지검장급인 공화국 검사 이하에는 부장검사급인 ‘Vice-Procureur(부검사)’와 평검사급인 ‘Substitut(검사보)’가 있다. 각 지방검찰청 내에서 검찰권의 주체는 공화국 검사가 되고 부검사와 검사보는 공화국 검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검찰권을 행사한다. 전통적으로 행정권, 입법권과 구분되는 사법권(Le pouvoir judiciaire)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사법기능을 행사하는 사법기관(L'autorité judiciaire)으로 정의된다[유주성, “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강원법학 제5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402-403].

314) France,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2004”, HCCH, https://assets.hcch.net/upload/abd_return_fr.pdf; 석광현/이병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129-130.

315) 프랑스 법무부는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텍스트에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규정된 메커니즘의 실효성은 중앙당국 간의 직접적인 협력과, 중앙당국이 조율하는 관계자들(외국 중앙당국, 검찰, 변호사, 신청인, 사회복지 서비스)과의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Ministère de la Justice, “Enlèvement parental : l'autorité centrale”, <https://www.justice.gouv.fr/lautorite-centrale> (2025,

3.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이행확보

가. 간접적 수단

■ 민사집행법전

제L131-1조

모든 판사는 직권으로 자신의 결정(décision)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금(astreinte)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

집행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판사가 내린 결정에 강제금(astreinte)을 부과할 수 있다.

제L131-2조

강제금(astreinte)은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다.

강제금(astreinte)은 잠정적(provisoire)일 수도 있고 종국적(définitive)일 수도 있다. 판사가 그 성격을 종국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강제금은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종국적 강제금(astreinte)은 잠정적 강제금(astreinte)이 선고된 후에만, 판사가 정한 기간 동안 명령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강제금(astreinte)은 잠정적 강제금으로 간주되어 집행된다.

제L131-3조

강제금(astreinte)은 종국적 강제금일지라도, 이를 명령한 판사가 사건을 계속 담당하거나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판사가 집행한다.

제L131-4조

잠정적 강제금(astreinte)의 금액(le montant)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 명령 이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종국적 강제금(astreinte)의 금액(le taux)은 그 청산(une liquidation)과정에서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잠정적 또는 종국적 강제금(astreinte)은 판사의 명령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프랑스는 아동반환과 같은 비금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금(astreinte)을 활용하고 있다. 강제금(astreinte)은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누적되며, 이후 상대방이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일시불로 추심(액수확정)하거나 필요시 신규 강제금(astreinte) 부과를 명령할 수 있다.³¹⁶⁾³¹⁷⁾

강제금(astreinte)은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프랑스 민사집행법전 L.131-2 ~ L.131-4에서는 강제금(astreinte)의 잠정적(provisoire) 또는 확정적(définitive) 성격, 금액 산정 기준(의무불이행자의 태도와 어려움 고려) 및 청구와 별개로 판사가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판사는 강제금(astreinte)의 규모와 기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아동의 복리에 중대한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제재를 활용한다.³¹⁸⁾ 한편 프랑스는 「2018-2022년 사법발전계획 및 사법개혁에 관한 2019년 3월 23일 제2019-222호」(이하 ‘사법개혁법’이라 한다)³¹⁹⁾을 통해 강제금(astreinte) 규정을 민법전에 도입하였고 또한 일정한 경우 민사상벌금(amende civile)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재수단은 아동반환사건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³²⁰⁾³²¹⁾

그러나 간접강제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직접강제, 형사제재 등과 같은 공권력 동원 단계로 이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간접강제는 아동의 복리를 고려해서 최대한 물리적 행사를 자제하기 위한 선제적 압박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당국은 간접강제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의무자 또는 완강하게 인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력 동원 등의

316) 강제금은 청산을 통하여 잠재적인 권리가 특정되고 집행 가능한 권리로 변하게 된다[이무상,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레인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조 제60권 제9호, 법조협회 (2011), 258].

317) 강제금(astreinte)은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판사가 주된 이행명령에 부과하여 선고하는 금전이행명령”이다[Roger Perrot, Philippe Théry,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Dalloz (2005), 73].

318) 가사 담당 판사가 아동반환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강제금(astreinte)을 부과한 사건의 예로는 Le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20989638> (2025. 6. 23. 최종 확인).

319) Legifrance,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8261631> (2025. 6. 23. 최종 확인).

320) France,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janvier 2023”, HCCH, <https://assets.hcch.net/docs/5175d97b-45fb-4d1b-b8fb-cd719bfded8e.pdf> (2025. 6. 23. 최종 확인).

321) 민법전에 도입된 강제금(astreinte),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등에 대해서는 국내 가사사건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예외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즉, 간접강제로도 말을 듣지 않는 악의적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공화국 검사가 최종적으로 경찰 등을 투입하게 되는 구조이며 이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요구하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반환을 달성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으로 이해된다.

나. 직접강제

(1) 민사소송법전 개정 이전³²²⁾

프랑스에는 과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에 관해 특별한 국내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민사집행절차 개혁에 관한 1991년 7월 9일 제91-650호 법률」(이하 ‘민사집행개혁법’이라 한다)³²³⁾에 명시된 일반적인 민사 판결 집행 규정을 적용했다. 이 법률은 판결 및 기타 집행권원의 집행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관행적으로 검찰(Ministère Public)이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³²⁴⁾ 이와 더불어 결정 등의 집행문(formule exécutoire)에도 국가의 명령 형식으로 공화국 검사의 집행 지원 의무를 규정³²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반환 절차에서는 공화국 검사가 중앙당국과 협조하여 반환명령이 내려진 후의 집행을 지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공화국 검사는 우선 자발적인 아동 인도를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 반환결정의 실효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경찰, 헌병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³²⁶⁾³²⁷⁾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민사집행개혁법의 개정을 통해 제12-1조 “공화국 검사는

322) France,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2004”, HCCH, https://assets.hcch.net/upload/abd_return_fr.pdf (2025. 6. 23. 최종 확인).

323) Legifrance, “LOI n° 91-650 du 9 juillet 1991 portant réform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172847> (2025. 6. 23. 최종 확인).

324) 예를 들어, 해당 법률 제11조에서는 “공화국 검사는 판결 및 기타 강제 집행권원의 집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본 조문은 2016년 6월 1일 폐지되고, 민사집행법전 제L121-5조에 편입되었다.

325) Legifrance, “Décret n° 47-1047 du 12 juin 1947 relatif à la formule exécutoir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ARTI000046130162/1959-03-02/#LEGIARTI000046130162> (2025. 6. 23. 최종 확인).

326) 한편, 반환 절차에서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직접 프랑스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반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모가 집행관을 통해 상대 부모에게 통지하고,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만약 아동을 탈취한 부모가 법원의 반환명령에 끝까지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화국 검사가 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

327) 공화국 검사가 아동반환집행에 경찰, 헌병 등을 동원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아동이나 부모 모두에게 정서적으로 아주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은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국제적 및 유럽 연합 법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국제적 불법이동과 관련해 내려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국무회의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직접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는 아동반환결정의 집행에 있어 공화국 검사가 공권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³²⁸⁾ 이후 본 조문은 2012년 6월 1일 폐지되고 「법원 조직 및 민사·형사·행정소송절차에 관한 1995년 2월 8일 제95-125호 법률」의 제34-1조로 편입되었다.³²⁹⁾

(2) 민사소송법전 개정

프랑스는 아동반환사건과 관련하여, 「가사절차 개혁에 관한 2004년 10월 29일 제2004-1158호 법령」을 통해 민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civile) 제3권 제1편 제9장에 ‘제5절(Section V: Le déplacement illicite international d'enfants)’을 신설하여 관할, 긴급처분 절차 등에 관한 제1210-4조부터 제1210-6조까지의 조문을 규정하였고³³⁰⁾ 이후 거듭된 개정으로 제1210-12조까지 조문을 신설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아동반환사건에서의 공화국 검사의 권한 및 역할, 공화국 검사 중심의 집행 구조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³³¹⁾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제3권 특정 분야의 특별 규정(Livre I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ertaines matières), 제1편 인(Titre Ier : Les personnes), 제9장 친권(Chapitre IX : L'autorité parentale), 제5절 아동의 국제적 불법이동(Section V : Le déplacement illicite international d'enfants) 제1210-4조 이하는 다음과 같다.³³²⁾

328) Legifrance, “Loi n° 91-650 du 9 juillet 1991 portant réform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23276166/2021-10-28 (2025. 6. 23. 최종 확인).

329) Legifrance,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SCTA000025033279> (2025. 6. 23. 최종 확인).

330) 현행 민사소송법전의 제1210-4조부터 제1210-6조까지와는 규정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Legifrance, “Décret n° 2004-1158 du 29 octobre 2004 portant réforme de la procédure en matière familial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01456182 (2025. 6. 23. 최종 확인).

331) 이하 서술은 현행 민사소송법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관련 규정의 연혁이나 조문의 개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appers Justice, <https://justice.pappers.fr/loi/LEGITEXT000006070716/article/LEGIARTI000039390382> (2025. 6. 23. 최종 확인).

332) Legifrance, “Code de procédure civile: Section V : Le déplacement illicite international d'enfants (Articles 1210-4 à 1210-12)”,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49756> (2025. 6. 23. 최종 확인).

■ 민사소송법전

제1210-4조

국제규범 및 유럽규범에 따라 아동의 국제적 불법 이동과 관련하여 지정된 중앙당국은 사법조직법전(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제L211-12조에 따라 관할 지역 법원에 있는 공화국 검사(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에게 접수된 귀환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I. - 요청이 프랑스 내로 이동되었거나 프랑스에 체류 중인 아동과 관련된 경우, 공화국 검사는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아동의 위치를 찾거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한다. 부모 권한 행사 방식에 관한 본안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화국 검사는 해당 소송 법원에 귀환 요청에 대해 통지한다.

또한 공화국 검사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1°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특히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체류시키고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을 심문하고,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권유하거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진한다 ;

2°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조사, 검토 또는 감정 조치를 명령한다 ;

3° 법에서 규정한 임시 조치를 명령하도록 관할 판사에게 사건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관할 지역 법원 공화국 검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4° 아동의 귀환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개시한다.

II. - 요청이 해외로 이동되었거나 체류 중인 아동과 관련된 경우, 공화국 검사는 해외 중앙당국이 요청한 아동 및 아동의 물리적, 가족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사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공화국 검사는 아동의 반환 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해 관할 지역 법원 공화국 검사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제1210-5조

아동 불법 이동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유럽규범에 따른 청구는 사법조직법전 제 L211-12조에 따라 관할 지역 법원의 가사 담당 판사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반환 요청이 접수되었거나 공화국 검사가 제1210-4조에 따라 요청을 제기한 경우, 아동의 출국을 두 부모의 동의 없이 금지하는 요청도 제1문단에 규정된 판사에게 제기되어야 한다.

제1210-6조

1980년 10월 25일 아동의 국제적 탈취에 관한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신청은 본안에 대해 신속 절차로 제기·심리·판결하여야 한다.

제1210-7조

반환결정을 통보 받는 즉시, 아동이 있는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조직법전 제L211-12조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관할 법원에 속하는 공화국 검사가 그 집행을 담당하며, 공화국 검사는 해당 결정의 대상자인 아동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심문하거나 심문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10-8조

반환결정의 집행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반환 집행을 담당하는 공화국 검사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 결정의 원만한 집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반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toute personne qualifié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반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물리적, 가족적, 사회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toute personne qualifiée)을 동원할 수 있다 ;
- 아동에게 필요한 의학적, 정신과적, 심리학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10-9조

반환결정이 자발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1995년 1월³³³⁾ 8일 제정된 법률 제 95-125호 제34-1조³³⁴⁾에 따라 반환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직접 공권력(la force publique)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화국 검사는 아동이 있는 관할권 내에서 사법조직법 제L211-12조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법원 소속의 공화국 검사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는 아동반환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공화국 검사에게 공권력을 요청하려는 의도를 통지할 수 있으며 특히 결정의 집행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33) 공식 조문에는 ‘1월 8일’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날짜 오키로, 실제 제정일은 ‘2월 8일’이다.

334) Legifrance,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25029749 (2025, 6, 23, 최종 확인).

제1210-10조

제1210-4조, 제1210-7조, 제1210-8조 및 제1210-9조에 근거하여 공화국 검사에 의해 진행된 절차의 문서 사본은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프랑스 중앙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공화국 검사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제1문단에 언급된 문서 사본은 앞서 언급된 협약에 의해 지정된 다른 중앙당국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쪽, 후견인, 또는 아동을 맡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프랑스 중앙당국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제1210-11조

자녀의 양육권 행사에 관한 청구가 제기된 법원에 대해, 2019년 6월 25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EU) 2019/1111 제29조 제3항에 따라 외국 법원이 내린 아동 반환 거부 결정 및 그에 첨부된 문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법원의 법원 서기가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210-12조

아동의 국제적 불법 이동에 관한 결정에 대한 상고 기간은 15일이다.

위 민사소송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당국이 공화국 검사에게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을 전달하면, 공화국 검사는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본안 관할을 가진 국내 법원에 반환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며, 공공질서의 보호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게 아동반환청구의 절차를 직접 개시할 수 있다(제1210-4조). 관할 법원에 속하는 공화국 검사는 법원의 반환명령의 집행을 담당하며, 공화국 검사는 반환의 대상자인 아동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심문하거나 심문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제1210-7조). 또한 반환의 집행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반환집행을 담당하는 공화국 검사는 ① 결정의 원만한 집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반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② 반환 대상 아동의 물리적, 가족적, 사회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③ 아동에게 필요한 의학적, 정신과적, 심리학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제1210-8조).

아동반환이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화국 검사는 아동반환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la force publique)을 요청할 수 있으며,³³⁵⁾ 필요한 경우 반환집행에 따른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찰력 등을 동원할 수 있다(제1210-9조).³³⁶⁾

그러나 아동반환집행은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화국 검사에게도 상당한 부담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³³⁷⁾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반환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어려움이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과도하게 긴 집행 기간(délais trop longs), 공화국 검사의 무대응(inaction d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항소 법원 간의 불균형(disparités entre les ressorts de cours d'appel) 문제 등이다.³³⁸⁾

4. 탈취 부모에 대한 제재

가. 형사상 제재

■ 형법전

제227-5조

미성년인 자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9조

제227-5조 및 제227-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1. 미성년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5일을 초과하여 동인을 보호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프랑스 영토 밖에서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는 경우

335) 제1210-9조는 1995년 2월 8일자 법률 제95-125호의 제34-1조에 따라 필요 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336) France,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janvier 2017", HCCH, <https://assets.hcch.net/docs/a8e498a6-fc8a-4cc1-8d9f-bc062e66aeba.pdf> (2025. 6. 23. 최종 확인).

337) France,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2004", HCCH, https://assets.hcch.net/upload/abd_return_fr.pdf (2025. 6. 23. 최종 확인).

338) Estelle GALLANT, 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 LA CONVENTION DE LA HAYE DU 25 OCTOBRE 1980, - Droit général de l'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JurisClasseur Droit international, Fasc. 549-30, 01/04/2023.

프랑스 형법전은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약취 및 감금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224-1조 내지 제224-5-2조에서 규정하고, 특히 동 법전 제224-5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에 대한 약취 및 감금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형법전은 이와는 별개로 친권행사에 대한 침해로서 기망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한다(제225-5조 내지 제227-11조).

위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한 때에는 1년의 구금형 및 15,000유로(한화 약 2,331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탈취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와 해외로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에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한화 약 6,994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	벌금	구금
최대 5일까지 자녀 탈취	15,000유로	1년
5일 초과 자녀 탈취	45,000유로	3년
해외로 자녀 탈취	45,000유로	3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탈취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되고, 미성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타방 부모와 함께 떠나는 데 미성년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처벌된다.³³⁹⁾

나. 친권 박탈

아동을 탈취한 부모의 행동이 아동의 안전, 건강 또는 정신상태를 명백히 위협에 빠뜨린 경우, 법원은 민법전에 따라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 민법전

제378조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범죄 또는 근친 간 성폭력, 또는 다른 부모에 대한 범죄로 인해 주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법원은 친권을 전면

339) Service-public.fr, “Enlèvement parental – Non-représentation d’enfan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191> (2025. 6. 23. 최종 확인).

적으로 박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형사법원이 친권의 전면 박탈을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일부의 박탈 또는 그 권리의 행사를 박탈하여야 하며, 이때도 예외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근친 간 성폭력 외의 범죄로 인해 주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법원은 친권의 전면 또는 일부 박탈 또는 친권 행사의 박탈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모가 다른 부모에 대한 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자녀가 저지른 범죄 또는 경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형사법원은 친권의 전면 또는 일부 박탈, 또는 그 권리의 행사 박탈을 명할 수 있다.

부모 이외의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하여 친권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친권 박탈 조치가 적용된다.

제378-1조

형사 유죄판결 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녀의 안전, 건강 또는 도덕성이 명백히 위태롭게 되는 경우, 부 또는 모는 친권 전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학대, 상습적이고 과도한 음주 또는 마약 사용, 악명 높은 부도덕한 행위 또는 범죄적 행위, 특히 자녀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에게 가하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압박 또는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보살핌의 결여 또는 지도력 부족을 포함한다.

자녀에 대해 교육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졌고, 부 또는 모가 제375-7조에 따라 허용된 권리와 의무를 2년 이상 자발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친권 전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친권 전부 박탈을 위한 소송은 사법법원에 제기되며, 그 제기 주체는 검찰, 자녀의 가족 구성원 또는 자녀의 후견인, 또는 자녀가 위탁된 아동복지청이다.

제378-2조

다른 부모의 신체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 자녀의 신체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 또는 근친 성폭력 혐의로 인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거나, 또는 수사판사에 의해 기소된 부모의 친권 행사 및 면접·숙박권은, 해당 부모가 가사 담당 판사에게 사건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수사판사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형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률상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379조

제378조 및 제378-1조에 따라 선고된 친권 전부 박탈은, 친권에 관련된 모든 권한, 즉 재산적이든 인격적이든 간에 전부에 법률상 자동으로 적용된다.

판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박탈은 판결 시점에 이미 출생해 있는 모든 미성년 자녀에게 효력을 가진다.

이 박탈은 제205조에서 제20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단, 판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9-1조

판결은, 친권 전부 박탈 대신, 지정된 권한에만 한정하여 친권 일부를 박탈하거나, 친권 행사의 박탈에 그칠 수 있다.

판결은 또한 친권 전부 또는 일부 박탈의 효력을, 이미 출생한 자녀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

II.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1. 개관

프랑스 국내 가사사건의 경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중 일방인 채무자가 자녀 인도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의 강제집행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법률 규정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집행관³⁴⁰⁾은 자녀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집행권원을 통지하고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며, 집행장소에 채권자와 함께 출석하기도 하나, 자녀 인도집행은 가족의 자치권 침해 우려와 자녀의 복리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집행관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집행관은 자녀 인도 거부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불이행 조서(constat de

340) 집행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CBO-Huissiers, “Le rôle d’un huissier dans l’exécution des ordonnances en matière familiale”, <https://cbo-huissiers.com/role-huissier-ordonnance-familiale> (2025. 6. 23. 최종 확인).

non-présentation d'enfant)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⁴¹⁾ 한편 채권자가 경찰이나 헌병대에 도움을 요청해도 경찰 등은 채무자 측에 단순히 전화 등을 통해 자발적 이행을 촉구할 뿐 자녀 인도 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그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³⁴²⁾³⁴³⁾

자녀 인도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의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사법개혁법 제31조를 통해, 민법전(Code civil)에 가사사건 결정 등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을 도입하였다.³⁴⁴⁾ 그 결과 프랑스 민법전 제373-2조, 제373-2-6조 및 제373-2-10조 등에는 판결 후 조정, 강제금(astreinte),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및 공화국 검사에 의한 공권력의 동원 등 의무이행확보수단이 규정되었다.

2.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적 수단³⁴⁵⁾³⁴⁶⁾

가. 강제금(astreinte)

실무상으로는 민사집행법전의 강제금(astreinte) 규정이 가사사건에도 적용될 수

341) 자녀 인도 거부에 관하여는 CBO-Huissiers, “Constat non présentation d'enfant”, <https://www.cb-huissiers.com/constat-non-presentation-denfants-huissier-paris/> (2025. 6. 23. 최종 확인); SCP Albertin Joseph Font Huissiers de justice à Marseille, “Problèmes familiaux: faites vous aider par votre Huissier”, [https://www.hdj13.fr/details-problemes+familiaux+faites+vous+ai](https://www.hdj13.fr/details-problemes+familiaux+faites+vous+aider+par+votre+huissier-37.html) (2025. 6. 23. 최종 확인).

342)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상원의 사법개혁법의 입법토론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Sénat français, “COMPTE RENDU INTÉGRAL DES DÉBATS Séance du 10 octobre 2018”, <https://www.senat.fr/seances/s201810/s20181010/s20181010003.html> (2025. 6. 23. 최종 확인).

343) 프랑스의 경우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강제집행 실무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부모에 의한 자녀 탈취의 경우 형법상의 제재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44) Legifrance,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8261631> (2025. 6. 23. 최종 확인).

345) 프랑스 법무부는 2019년 사법개혁법의 시행을 위해, 민법전 제373-2조, 제373-2-6조, 제373-2-10조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의 개정 취지와 실무 운영방식을 정리한 행정지침(Circulaire JUSC1909309C)을 작성하고, 그 부속문서인 Annexe 12를 통해 판결 후 조정, 강제금(astreinte),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공화국 검사에 의한 공권력의 동원 등을 포함한 법원 결정 등의 이행 수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nistère de la Justice, “Circulaire JUSC1909309C du 29 mars 2019,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 2019-06, Annexe 12 : Exécution des décisions en matière familiale”,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bo/2019/20190329/JUSC1909309C.pdf> (2025. 6. 23. 최종 확인).

346) Legifrance, “Code civil: Paragraphe 3 : De l'intervention du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Articles 373-2-6 à 373-2-13)”,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ARTI000049164431/2024-02-21/> (2025. 6. 23. 최종 확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이혼 소송에서 부부에 대한 명령이나 자녀에 관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사 담당 판사가 일정 금액의 강제금(astreinte)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민법전 제373-2-6조에 가사 담당 판사가 자신의 결정에 강제금(astreinte)을 부과하거나, 이전의 다른 판사의 결정이나 승인된 부모 합의에 강제금(astreinte)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며, 강제금(astreinte)의 부과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이 강제금(astreinte)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L.131-2 ~ L.131-4조를 준용한다].

프랑스는 민법전에 강제금(astreinte)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자녀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포함한 가족관계 관련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³⁴⁷⁾³⁴⁸⁾

나.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강제금(astreinte)의 도입과 더불어 민법전 제373-2-6조에서는 한쪽 부모가 고의로, 그리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결정 등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가사 담당 판사가 그 부모에게 최대 10,000유로(한화 약 1,554만 원)의 민사상벌금(amende civile)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부과 결정은 반드시 결정 등 불이행 발생 후에 내려지는 후속 결정이어야 한다. 민사상벌금(amende civile)은 이미 발생한 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새로운 결정의 향후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갖는다. 따라서 결정 등 불이행 이후의 심리에서 가사 담당 판사는 강제금(astreinte)과 마찬가지로 민사상벌금(amende civile)도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민사상벌금(amende civile)의 액수는 불이행의 중대성, 반복성과 불이행 당사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민사상벌금(amende civile)은 의무불이행 자체에 대한 제재벌의 성격이 강하며 1만 유로(한화 약 1,554만 원)라는 상한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서, 반복적 인도의무 불이행 등 심각한 사례에서 실효성 있는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금전 제재는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347) Dalloz Actualité, fr, “Loi de réforme de la justice : droit de la famille et droit des personnes”,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loi-de-reforme-de-justice-droit-de-famille-et-droit-des-personnes> (2025. 6. 23. 최종 확인).

348) 이는 민사상벌금(amende civil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 직접강제³⁴⁹⁾

민법전 제373-2조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 등과 같은 국제적 아동탈취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사 담당 판사의 결정, 부부 사이의 승인받은 합의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화국 검사의 공권력(경찰력 등) 동원을 허용하고 있다. 헤이그아동반환사건 등과 같은 국제적 아동탈취사건에 한정되었던 공화국 검사의 공권력 직접 동원 권한을 국내 친권 분쟁 등의 집행에도 확대한 것으로 자녀 인도 의무의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공권력(경찰) 사용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마지막 수단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공화국 검사의 공권력 동원은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반드시 공권력 동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³⁵⁰⁾ 또한 강제력의 행사는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지침(Circulaire JUSC1909309C)의 부속문서인 Annexe 12에 따르면 검사의 공권력 동원에 앞서 사전 절차로서 부모 간 갈등을 완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해치지 않도록 조정(médiation) 시도, 민법 제373-2-6조에 근거한 금전적 제재의 부과,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의 시도(예를 들면 집행관을 통한 통지 등)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가 예외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자녀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자녀에게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제집행을 실행할지에 대한 판단과 지휘는 공화국 검사에게 위임된다. 공화국 검사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 등에서 쌓은 경험과 자녀 보호 절차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에 맞는 집행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³⁵¹⁾ 이렇듯 프랑스 제도는 강력한 수단들을 법제화해 두었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9) Ministère de la Justice, “Circulaire JUSC1909309C du 29 mars 2019,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 2019-06, Annexe 12 : Exécution des décisions en matière familiale”,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bo/2019/20190329/JUSC1909309C.pdf> (2025. 6. 23. 최종 확인).

350) 관련 조문 자체에 명확하게 검사의 공권력 동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개혁법 입법 과정에서의 상원 토론을 보면 공권력 동원의 최후수단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자녀 인도집행에 검사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Sénat français, “COMPTE RENDU INTÉGRAL DES DÉBATS Séance du 10 octobre 2018”, <https://www.senat.fr/seances/s201810/s20181010/s20181010003.html> (2025. 6. 23. 최종 확인).

351) Lexbase, <https://www.lexbase.fr/article-juridique/51222355-2> (2025. 6. 23. 최종 확인).

4. 인도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전술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에서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III. 시사점

프랑스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이행 유도과 공권력 개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절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협약 이행의 중심에 중앙당국과 검찰을 두고, 초기 단계부터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면서도, 강제금(astreinte),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등과 같은 금전적 제재수단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화국 검사의 개입을 통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지를 마련해두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210-9조는 반환 결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화국 검사가 직접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입회, 심리검사, 거주지 조사 등이 병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제집행이 아동에게 가하는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고려한 집행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또한 국내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2019년 사법개혁법을 통해 공화국 검사에 의한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명문화하고, 가사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강제금(astreinte)과 민사상벌금(amende civile)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반환 결정 이후 공화국 검사의 소극적 대응, 집행의 지연, 법원의 적극성 차이 등으로 실질적 집행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강제 집행 수단은 존재하되, 그 실효성은 법적 장치와 함께 제도 운영 주체의 의지와 실행력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서 실무적 작동 가능성에 대한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경제적 압박 수단, 공권력 개입 조건, 자발적 이행 유도과 심리적 보호 장치

(전문가 입회 등)의 복합적 설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프랑스는 자녀 인도 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구금형이 가능하도록 형법전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 인도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을 통한 의무이행의 확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제 5장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개선방향

제1절 법률 규정 신설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민사집행법상 동산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유아인도집행예규와 같은 재판예규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은 전술하였다.

재판예규는 재판 집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나 지침을 정한 것이며 사법부 내부규정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예규 자체로는 강제집행 방법을 새롭게 창설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예규에서 민사집행법 제257조³⁵²⁾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집행관은 여전히 동산인도집행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녀 인도집행을 예규로 규율하는 방식 그 자체가 반드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규율 형식이 아닌, 자녀 인도집행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의 부재에 있다. 일본 역시 과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동산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으나,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법적 형식이 어떠하든, 자녀 인도집행이라는 민감하고 복잡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규정의 존재 여부를 넘어, 그 내용이 현실의 집행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관이 집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규를 통해 자녀의 인도집행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고 있지만, 내용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률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직접 규율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특유한 집행 방식을 법률에 도입하여 집행기관에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관련 규칙과 실무지침 등이 마련될 수 있어

352)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에 보다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독일 등은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대법원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제정과 유아인도집행예규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단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그에 따른 실효성은 결국 입법적 개선이 수반될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 단계에서의 논란을 줄이고 부모에게도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임하는 집행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예규를 통한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율은 과도기적 조치임을 시사하면서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³⁵³⁾

한편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지침 역할을 하고 있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유아인도집행예규의 내용이 법률이나 규칙으로 격상시켜도 손색이 없을 만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변화의 시발점 역할을 했던 점을 감안하여 위 예규들의 내용 중 법률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이를 신설 법률 규정으로 마련하고 법률에 포함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규칙에 규정해야 한다.

헤이그아동반환집행과 유아인도집행은 자녀 인도집행이라는 공통 본질을 갖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민사집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녀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면, 그것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준용한다는 식의 규정을 추가하는 식으로 운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각국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집행관의 권한과 자녀의 복리 보호를 동시에 명시한 종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모델이 우리의 법률 개정 시 가장 현실적이고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개정법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우리 법에 참고하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³⁵⁴⁾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민사집행법이라는 별도 법전에서 강제집

353) “대법원, 국제 아동반환 관련 예규 제정… ‘집행지연 해소’”, 법조신문 (2024. 1. 12.),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855> (2025. 6. 23. 최종 확인).

354) 이재석, “유아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안”, 법률신문 (2021. 11. 4.), <https://www.lawtimes.co>.

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집행관 제도 등 제도적 유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본이 과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동산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던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입법을 통해 미성년 자녀 인도 집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일본은 2019년 법 개정 후 시행 초기에는 강제집행에 성공하는 비율이 약 30%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외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의 성공률은 83%에 이를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는데³⁵⁵⁾ 이는 입법에 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자녀인도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엄중한 금전적 제재와 형사처벌 규정 부분은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게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될 내용은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³⁵⁶⁾ 신설하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근거규정은 가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집행관의 권한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한다.³⁵⁷⁾

kr/opinion/173829 (2025. 6. 23. 최종 확인); 김윤정,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법률신문 (2021. 4. 5.),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8855> (2025. 6. 23. 최종 확인).

355) 헤이그아동반환사건만 놓고 보면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44%의 집행완료율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83%의 집행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外務省,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in Japan(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ttps://www.mofa.go.jp/files/100012160.pdf> (2025. 6. 23. 최종 확인); 外務省, “Fact Sheet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1980 Hague Convention(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 Japan November 1, 2024”, <https://www.mofa.go.jp/files/100643807.pdf> (2025. 6. 23. 최종 확인).

356) 민사집행법에만 개정안을 담는 것도 가능하나, 가사소송법의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이 거듭 제출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 제출될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할 내용을 구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57) 가사소송법은 본래 소송절차법이지만,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이행 확보절차 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순수한 집행절차도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사소송법에 몇 가지 절차를 규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정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의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 제145조(미성년 자녀인도청구권 집행) 하나의 규정만 신설하고 집행관의 권한 및 세부 절차 등은 규정하지 않았다.

제2절 법률 개정 방안



I. 가사소송법의 개정

1.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명시³⁵⁸⁾

가. 기존 ‘유아’의 개념 불명확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인도의 대상을 유아(幼兒)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용어는 법령 간 정의가 상이하여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사전적으로 ‘유아’는 어린아이 또는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반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한편 헤이그아동탈취법의 적용대상인 아동은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유아’라는 용어는 법적·실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고 ‘유아’는 자체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 등에서 인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 전반을 포함하는 반면, 이행명령의 경우 인도의 대상으로 ‘유아’로 명시하고 있어, 사전적 의미의 유아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대상 여부, 강제집행 허용 여부, 집행 방식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법적 규율의 공백이라기보다는 용어 사용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해석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³⁵⁹⁾ 따라서 ‘유아’라는 용어 보다는 ‘미성년 자녀’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명확히 해석·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양육에 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교섭 관련 규정의 자녀 역시 ‘미성년 자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58)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385-386.

359) 가사소송규칙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제1항은 유아의 인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아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유아인도집행예규의 유아라는 용어 역시 사전적 의미의 유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성년 자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념상의 불명확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대상을 ‘유아’가 아닌 ‘미성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 인도 제도의 입법적 정비에 있어 인도청구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행 법령 및 실무에서는 자녀의 연령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유아’라는 용어를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여 인도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하되,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물리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범위는 미성년의 자녀 중 16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적 방향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고려에 기초한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강제적인 인도조치가 가지는 정당성과 실효성은 현저히 달라진다.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와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물리적인 분리 및 인도 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자칫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6세 이상 자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양육권 다툼에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도 명시적으로 ‘16세 미만’을 반환의 상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 실무상으로도 16세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저항과 제3자 개입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서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집행관이 그러한 연령대의 자녀를 채무자로부터 분리하여 강제로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는, 집행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극히 낮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집행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집행을 강제하는 것보다, 사법적 설득과 대화 중심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헌법적 측면에서도, 집행의 제한은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익 목적에 기초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원칙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이익 최우선’ 및 ‘아동의 의견 존중’ 원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그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강제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 판결은 “재판을 통해 비양육친이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현실적으로 비양육친에게

인도되지 않는 한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설령 자녀 인도 청구를 하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인도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인정했다. 하급심이긴 하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 6. 8. 선고 99드단857 판결은 “위 ○○○은 만 10세로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의 인도를 명하는 주문 제4항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 ” 라고 했는데, 이는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녀라 하여 곧바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1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인도집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인도집행을 허용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법운용의 경직을 방지하고 부모의 권리구제를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의사와 인권을 고려한 절충적 제도 설계라 할 수 있다. 직접강제를 제한한다고 해도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과 같은 간접강제 수단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는 여전히 가능³⁶⁰⁾하므로 이를 통해 자녀 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독립된 사건 유형으로 규정

현행 가사소송법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하나의 독립된 사건유형으로 정립하고 있지 않다. 대신, 같은 법 제42조의 가집행에 관한 규정이나 제5편 ‘이행의 확보’, 제6편 ‘벌칙’ 등에서 유아의 인도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단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 문제를 전담하여 다룰 수 있는 법적 틀이 부족하며, 절차의 명확성이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 불명확할 뿐 아니라, 해석상 미성년 자녀 전체를 포괄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 인도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집행 실무에 있어서도 대상의 범위, 절차의 방식, 집행의 정당성 등에 관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을 독립된 사건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성격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사소송절차 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다룰 수

360) 현소혜, “집행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 특히 사전처분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발표문 (2017), 15.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양육 질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로서, 향후 가사소송법 체계 정비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집행개시 허가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 인도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직접강제를 담당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며 집행관이 집행절차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금전채권 집행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집행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 인도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거부 반응을 세심히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집행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집행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집행개시에 대한 허가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정법원이 집행을 허가한 경우, 집행관은 그 허가 결정을 바탕으로 집행 현장에서 일정한 강제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자녀가 다소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도, 특별히 강한 거부 의사와 신체적 저항이 없는 한 집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집행관의 부담을 줄이고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의 인도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로 내려진 것이며, 임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위해 다시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과 불필요한 지체를 초래하고 인도명령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행 허가 절차를 도입한다고 해도 이는 새로운 실체심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명령 이후의 경과 기간 동안 자녀의 의사나 정서 상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집행 당시의 상황이 인도명령 당시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장과 심리적 변화를 겪는 존재로, 인도명령 시점의 사정만을 근거

로 기계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할 경우 자녀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집행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인도명령의 실효성을 부정하거나 소송경제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명령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하고 자녀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보아야 한다.

결국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현장에서의 현실적 가능성과 자녀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제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점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도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에 적극 관여하여 집행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³⁶¹⁾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관에 의한 직접강제 개시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되, 실효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이 필요한 집행 자체는 여전히 집행관이 수행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³⁶²⁾³⁶³⁾ 이러한 구조는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집행실시자로서의 집행관의 전문성과 집행의 탄력성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판결 이후 집행개시 허가까지 담당하게 되면, 사건의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관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고도의 복리 판단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정법원이라는 공적 권위 기관이 강제집행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경찰 등 협조기관 역시 협조 요청을 보다 엄중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져 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관 G

처음 헤이그아동반환집행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부담이 매우 컸다. 그래도 공부해보면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집행관들도 경험이 없으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361) 일본과 독일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4장 비교법적 고찰의 해당 부분 참조.

362) 이재석, 『명도집행』 119, 푸른솔 (2021), 75, 812.

363) 하성우, “특정주제 집중연구 최종보고서[연구주제 : 미성년 자녀 탈취에 대한 제재, 구제수단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4), 24.

집행관 H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현장에서 자녀가 울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이 돼서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집행불능 처리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가 집행이의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만약 법원에서 집행을 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법원의 명확한 결정이 있었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원에 개입해서 먼저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

3. 집행개시 허가 요건

가. 간접강제 우선

현재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기 전에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³⁶⁴⁾을 신청하고 과태료, 감치 등의 절차를 거치는 사건은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사건 수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³⁶⁵⁾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명령 등의 순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 제도는 병존하고 채권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채권자가 직접강제의 방법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으로³⁶⁶⁾ 이는 가사소송법상 간접강제 수단이 이행명령을 통한 과태료, 감치의 제재를 거쳤다면 자발적 이행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까지도 직접강제 집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우선 가능한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내는 간접수단을 먼저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강제의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인도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 절차를 채권자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364) 대법원 2016. 2. 11.자 2015오26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

365) 국내 사건을 기준으로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된 54건 중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결정을 받은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366)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375.

방향으로 집행방법과 순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³⁶⁷⁾

과거 일본의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간접강제 원칙에서 직접강제 원칙으로 실무의 태도가 변천되어 왔고 헤이그조약실시법을 제정할 당시 자녀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간접강제가 타당하다는 결론 아래 간접강제 전치주의를 택했고 2019년 민사집행법과 헤이그조약실시법 개정에서 간접강제 전치주의는 다소 후퇴하여 간접강제 원칙, 예외적인 경우 바로 직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변화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간접강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통한 제재, 형사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여 직접강제는 최후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선 간접강제를 시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강제를 시도하는 것이 직접강제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침해가능성을 방지하고 직접강제의 시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³⁶⁸⁾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조기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유아인도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가사소송법상 간접강제 수단 위주의 접근을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³⁶⁹⁾

367)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2015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378.

368) 과거에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보호와 통제의 객체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을 거치면서 아동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대두되었고,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인권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되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명발달권, 의견표명권, 학대로부터의 보호권 등을 명문화하여 아동을 독자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각국의 국내법도 변화를 모색하여 부모의 권리보다는 아동의 복리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은 1958년 제정 이래 부모의 자녀체벌권을 인정해왔으나 아동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2021년 1월 완전히 삭제되어 더 이상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법문에 명시하고 자녀 의사청취 연령 제한 폐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 아동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69) 대법원 2020. 5. 28.자 2020오508 결정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서도 자발적 이행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행강제 등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는 순차적 모델을 절대적 원칙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병행하거나³⁷⁰⁾ 이행명령 절차 중간에 직접강제를 개시하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개정 민사집행법처럼 간접강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 명백하면 바로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식의 재량이 필요하다.

한편, 자녀의 인도 의무는 금전 채무가 아닌 비금전 채무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도 이론상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라, 불이행 시 1일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³⁷¹⁾³⁷²⁾ 미성년 자녀의 인도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상 가사소송법상의 간접강제 절차가 주로 활용되므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를 거쳤는지 여부는 직접강제를 집행하기 위해 먼저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 직접강제 개시 허가 시 고려사항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 인도 강제집행 개시를 허가할지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민사집행에서의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와는 달리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핵심은 자녀의 복리이다. 직접강제를 통해 당장 판결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을 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직접강제는 단순한 절차상 조치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개입인 만큼,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별도의 심사를

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370) 유아 인도의 이행명령 신청사건 계속 중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단행하여 유아를 인도받아 간 경우, 직접강제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행명령의 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2002. 11. 28.자 2020오4 결정 참조.

371) 일본의 경우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종래 간접강제 보충성의 원칙을 완화해서 인도청구권이나 대체적 작위 청구권이라도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이 인정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173조 제1항), 국내에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간접강제 보충성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형석, “강제이행 - 특히 간접강제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263.

37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간접강제와 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2020), 687].

거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자녀 인도에 대한 직접강제를 허가하려면 그러한 집행이 자녀의 복리에 합치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현재 있는 환경이 아주 위험하거나 부적절하여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면 복리에 부합하겠지만, 반대로 현재 환경에 나름 안정적으로 적응한 자녀에 대해 직접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갑작스럽게 거주지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서적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 복리에 반할 수 있다.

결국 집행법원은 직접강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자녀의 나이 및 의사능력 유무, 인도에 대한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판결 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흐름과 그 사이 자녀의 환경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 이후 집행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그 사이 자녀는 원래 살던 부모와 유대가 더욱 깊어졌을 수 있고 인도 거부 의사가 매우 확고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집행 개시 여부를 판단하면서, 판결 확정 후 변동된 사정(자녀의 의사, 건강, 환경, 정서상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직접강제 개시 허가 시 미성년 자녀의 나이 및 의사능력 유무, 인도에 대한 자녀의 의사,³⁷³⁾ 건강 및 심리 상태, 자녀의 양육상황,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³⁷⁴⁾ 이를 통해 직접강제가 최선의 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가능한 자녀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필요적 심문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행 전 절차적 권리 보장도 중요하다. 집행 당사자인 부모들을 법원이 심문하여 의견을 듣고,³⁷⁵⁾ 자발적 이행을 마지막으로

37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 제20조는 미성년자가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바 있다.

374) 집행법원의 허가 시 고려 요소는 집행권원 취득 시의 가정법원의 판단 요소와 중복될 우려가 있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없지 않은데, 다만 허가 시 추가적 고려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로는 전병서, “자(子)의 인도청구의 집행방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67권 3호, 법조협회 (2018), 130.

375) 자녀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녀의 의사도 들어야 할 것이다.

권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간접강제 수단 우선이라는 원칙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신속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평소라면 보장되어야 할 심문절차나 이행권고 절차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심문절차가 필요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직접강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절차 생략은 예외적이어야 하고, 법원이 사전에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일본 개정 민사집행법도 직접강제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타 심문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강제집행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최선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행법원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타 심문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과 의무이행 권고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불복권 보장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 중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그 위법을 주장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즉, 집행법원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와 제16조는 즉시항고³⁷⁶⁾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376)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비록 용어상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47조, 제449조)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성질과 운용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와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를 따르고 있고, 동시에 즉시항고의 제기로 인한 자동적인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집행지연책으로 즉시항고가 남용되었던 전례를 교훈 삼아 입법적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하고 있다.³⁷⁷⁾ 법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에 대한 즉시항고이며, 이는 각각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6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집행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사법심사³⁷⁸⁾를 허용해야 함을 인정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단순한 재산권적 강제집행과 달리, 자녀의 신체적 인도라는 직접적인 인신행위와 관련되며, 당사자 및 자녀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집행절차의 잘못을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행법원의 일회성 판단에 그치지 않고, 상급심의 재검토를 허용하여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집행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즉시항고권을 법률상 명문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지 권리구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다.³⁷⁹⁾

또한, 즉시항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는 자동적인 집행정지 효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자녀 인도 절차가 즉시항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된다. 집행정지를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불복 제도는 보장하면서도 절차 남용은 방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실제 집행 실무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며, 실질적인 복리 보장과도 조화를 이룬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민사집행법 역시 미성년 자녀 인도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집행항고’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즉시항고가 단순히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실무적·제도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와는 법적 구조상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용어상의 유사성에 기대어 민사집행법에서도 ‘즉시항고’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실제로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별개의 독립된 법률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법원 재판의 성격 및 항고의 목적과 절차 역시 민사소송절차와 다르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즉시항고’가 아닌 ‘집행항고’라는 용어로 구별함으로써, 제도의 독자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민사집행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항고(執行抗告)’라는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를 구분된 체계로 다루고 있다[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2016), 199].

377) 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2023), 37.

378)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신청이다[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2023), 38].

379) 전병서, “자(子)의 인도청구의 집행방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67권 3호, 법조협회(2018), 132.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절차적 통제는 보장하되, 인도의 실효성과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의 입법 방향에도 시사점이 크다.

결국,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제도는, 민사집행법의 기존 체계와 비교법적 사례를 고려할 때 충분히 입법적 정당성과 실무상 효용성을 갖춘 제도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⁸⁰⁾

5. 과태료의 실효성 강화

가사소송법에는 유아(개정안 : 미성년 자녀) 인도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제재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1,000만 원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충분한 압박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 인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질서금(Ordnungsgeld)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질서금은 위반 1회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상당히 높은 한도(최대 25,000유로)³⁸¹⁾가 설정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강제금(astreinte)이 있고 이외에도 일회성 민사상벌금(amende civile) 규정을 두어, 고의로 양육권 행사를 방해하는 부모에게 최대 10,000유로³⁸²⁾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나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통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하여 과태료 제재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과태료의 상한금액인 1,000만 원은 독일과 비교하면 약 1/4에 불과하고 프랑스의 강제금(astreinte)은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되고 이외에 민사상벌금의 상한이 한화로 약 1,550만 원 정도인 점까지 감안하면 우리도 의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현행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보다 높이는 것이 타당

380) 전병서, “자(子)의 인도청구의 집행방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67권 3호, 법조협회 (2018), 132.

381) 한화로 38,856,750원이다.

382) 한화로 15,542,700원이다.

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사소송법 제6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금액 1,000만 원은 2009. 11. 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기존 상한액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인데 이미 15년이 지난 현재의 경제 상황(2009년 1인당 GDP는 17,000달러, 2024년 1인당 GDP는 36,000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 비추어 보아도 과태료 상한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

6. 개정안 제안

위에서의 논의를 정리하여, 가사소송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³⁸³⁾

[가사소송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2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u>유아</u> (<u>幼兒</u>)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제42조(가집행) ① ----- <u>미성년 자녀</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결로 <u>유아</u> 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u>미성년 자녀</u> ----- -----.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	제64조(이행명령) ① ----- ----- ----- ----- ----- -----

38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은 비록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지만 전부개정안에 나타난 취지와 주요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고 보이므로 폐기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민사집행법에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 인도 집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규정하였다.

현행	개정안
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u>유아</u>의 인도 의무 3. <u>자녀</u>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생략 〈<u>신 설</u>〉	----- -----. 1. ----- 2. <u>미성년 자녀</u>----- 3. <u>미성년 자녀</u>----- ② (현행과 같음) <u>제64조의2(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u>³⁸⁴⁾ ① 이 조에서 “<u>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u>”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해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한 판결, 심판, 가처분결정 2. 이 법에 의해 미성년 자녀를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상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 ②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할 때 민사집행법 제3조제1항의 집행법원은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 또는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집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384) 민사집행법 직접강제 방식의 인도집행을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제257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제258조)’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문에서도 이러한 용례를 따르기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	1.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④ 집행법원은 제3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녀의 나이 및 의사능력 유무 2. 자녀의 의사, 건강 및 심리상태 3. 자녀의 양육상황 4.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⑤ 집행법원은 제3항의 결정을 할 때 미리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타 심문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 ----- ----- ----- ----- -----

현행	개정안
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u>2천만원</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유아</u> 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u>미성년 자녀</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II. 민사집행법 개정 방안

1. 가사소송법 개정안과의 관계

앞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사소송법은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원칙과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집행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은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의 민사집행법에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민사집행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 집행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한 예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의 개정과 보

조를 맞추어 민사집행법의 개정도 필요하다.³⁸⁵⁾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가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유아인도집행예규 반영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과 유아인도집행예규 개정이 타당하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위 예규들은 현재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적용되고 있고 집행관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두 예규는 미성년 자녀를 ‘유아’, ‘아동’으로 다르게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유아인도집행예규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가.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유아인도집행예규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는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⁸⁶⁾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으로 집행 단계에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피해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추상적 규범이지만 이후 규칙이나 예규에서 구체화할 지침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나. 집행관의 권한 등

유아인도집행예규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는 제1항에서는 집행관이 유아의 복리

385) 가사소송법의 경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신설 규정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두 차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향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24. 10. 25.), 96, <https://lawhome.or.kr/webbook/20241025/index.html> (2025. 6. 23. 최종 확인)]. 다만,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민사집행법에 가사소송법 개정안 중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부분이 함께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386) 이는 개정 전 유아인도집행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초로 좀 더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미성년 자녀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고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제2항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개정안의 경우 ‘자녀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고 집행보조자에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제3항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유아가 있는지 수색하고³⁸⁷⁾ 유아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유아 관련 전문가와 면접시키고,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유아 관련 전문가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정보, 집행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므로 집행관이 이러한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자녀 관련 전문가는 집행 현장에서 미성년 자녀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여 자발적 인도를 이끌어 내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강제력 행사가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완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³⁸⁸⁾ 또한 집행관이 자녀의 반응에 따라 집행 방법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있어 전문가로서 조언³⁸⁹⁾³⁹⁰⁾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자녀의 복리에는 긍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녀 관련 전문가의 집행 참여에 대해서는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경우 청소년국이 참여하고 일본의 경우도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부터 아동 심리 전문가가 집행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자녀 관련 전문가의 집행 참여는 필요하다. 다만, 자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만일 이를 집행에 있어서의 필수적 요건으로 하게 되면 자녀 관련 전문가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³⁹¹⁾ 절차의 지연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387) 현행 민사집행법 제5조는 집행관이 수색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미성년 자녀 역시 수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388) 예를 들어, “새로운 양육환경이 안전하며 부모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도우면, 자녀가 갖는 불안감이나 거부감이 완화될 수 있다.

389) 집행 현장에서 자녀가 극심한 불안을 표출하거나 매우 강한 신체적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는 즉각 심리 안정 조치를 취하고 집행관에게 일시 중지를 건의하는 등 자녀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90) 쓰루오카 겐이치, “일본의 민간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인도 강제집행 보조 -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의 지원활동 -”,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2023. 11. 15.) 자료집, 185,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0&gubun=195&cbub_code=&searchWord=¤t (2025. 6. 23. 최종 확인).

현 예규와 같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3의 장소에서의 인도집행 허용

유아인도집행예규에는 규정이 없으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항상 채무자의 주거나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채무자의 친인척의 집 등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제3의 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인도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 자녀 인도집행이 시도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해당 장소의 관리자나 점유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인 원장 등의 동의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³⁹²⁾ 그러나 이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인도집행의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장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집행관은 자녀가 있는 곳이 채무자의 주거 등과 다른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의 동의나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장소에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항상 채무자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집행기회를 여러 방면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 해당 장소 및 그 주위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야 할 것이다.

391) 현재는 자녀 관련 전문가의 명단을 각 집행관 사무소의 대표집행관이 가지고 있고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녀 관련 전문가를 집행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 지역별로 위촉된 자녀 관련 전문가의 숫자가 많지 않아 자녀 관련 전문가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녀 관련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392) “[배치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학교에서 아동 인도 집행 가능”, BBS NEWS (2025. 6. 5.),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087> (2025. 6. 23. 최종 확인);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여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채권자의 집행 현장 참석

집행관이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채권자가 현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집행관이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로부터 분리하여 즉각 인계해줄 대상이 있어야 자녀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채권자가 집행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예를 들어 채권자가 해외에 있고 당일 집행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라면, 채권자의 대리인(예를 들어 채권자의 부모, 친인척 등 자녀와 친숙한 사람)이 대신 현장에 참석하여 자녀를 인수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자녀를 안전하게 인수받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에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당해 대리인과 자녀와의 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에게 인수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이익 보호를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5. 강제력 행사

유아인도집행예규에는 채무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물리적 행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1항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민사집행법 제5조는 민사집행법 총칙에 규정된 조항으로 민사집행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위 예규가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채무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계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이 없다.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 및 자녀에 대한 강제력의 사용 여부는 사실상 집행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³⁹³⁾³⁹⁴⁾

393)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의 시행 이후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경비노무자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키고 위 경비노무자들이 채무자 측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4) 집행관은 집행관규칙 제26조 및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6조(집행관 등의 직무집행의 확보)는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저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하거나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우리의 민사집행법 제5조와 비교해 보면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8항은 “집행관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일체의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강제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집행 현장에서 자녀가 인도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신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안거나 손을 잡아서 이동하는 정도의 강제력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³⁹⁵⁾ 만일 자녀의 신체에 전혀 접촉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 자녀 인도집행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 및 자녀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강제력은 사용할 수 있고 독일의 경우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도의 강제력을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따라서 강제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자녀에게 과도한 심리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방식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행복추구권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강제력의 사용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병기해야 할 것이다.

침’에 따라 경비노무자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고 경비노무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집행관은 아동반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측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현장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해진다[법무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2025. 2.), 12].

395)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신체적 저항을 보이는 아이를 억지로 안거나 잡아당기거나 끌고 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싫다고는 하지만 신체적 저항까지는 하지 않는 아이를 손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서 유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池田 清貴, “民事執行法等の改正(後編) - 子の引渡しの直接的な強制執行について -”, 養育費・親子交流相談支援センター, <https://www.youikuhi-soudan.jp/pdf/newsletter25.pdf> (2025. 6. 23. 최종 확인)]; 자녀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129].

6. 강제집행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와 강제집행의 조화

미성년 인도집행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얼마나 존중할 것인지와, 이를 집행의무 이행과 어떻게 균형 맞출 것인지이다. 과거 집행실무는 종전 유아인도집행예규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인도 거부 시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고 법원도 이러한 집행실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⁹⁶⁾

미성년 자녀 의사 존중 원칙은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의견 존중)³⁹⁷⁾에도 부합하는 것이긴 하나 한편으로 부모에 의한 부당한 영향이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거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양육 중인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경우,³⁹⁸⁾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오히려 자녀의 장기적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면밀히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인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심인 것은 아니며, 자녀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인 이른바 ‘충성갈등’³⁹⁹⁾은 자녀에게도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녀가 채권자에게 가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심정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⁴⁰⁰⁾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사소송법

396) 법원 “유아가 ‘인도집행’ 거부하면, 의사능력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2013. 2. 1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2803> (2025. 6. 23. 최종 확인).

397)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196개국 (2024년 3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의견 존중)는 “아동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http://inccr.org/uncrc/> (2025. 6. 23. 최종 확인).

398) 심리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직해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사이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가스라이팅은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서 자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모 따돌림 증후군(Parental Alien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마음소풍, “부모 따돌림 증후군, 자녀를 독점하려는 복수심”, https://www.maum-sopoong.or.kr/infor_story/52560 (2025. 6. 23. 최종 확인)].

399) “‘엄마·아빠 사이서 눈치보인다’ 11살의 ‘충성갈등’.. 화상 면접교섭 이후 변했다”, 파이낸셜 뉴스 (2021. 5. 3.),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2001214228> (2025. 6. 23. 최종 확인).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면, 법원은 집행의 허가 여부를 정하는 결정에 앞서 자녀와 면담을 실시하고, 자녀의 거부 의사에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현재 양육환경에서의 자녀의 복리 상태는 어떤지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현재의 강제집행이 미성년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판단하여, 집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집행을 할 때는 집행 현장에서 미성년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단순한 인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에 더하여 강력한 거부 의사와 함께 신체적 저항을 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나이, 의사능력 유무, 표현된 의사의 구체적 내용, 거부의 강도 및 일관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집행 현장의 정서적 분위기, 신체적 위험의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이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다. 자녀의 인도 거부와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집행을 중지하거나, 반대로 모든 경우에 강행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절차적 정당성 모두를 해칠 수 있다. 이처럼 집행현장에서의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집행 허가에도 불구하고 집행 전문가로서의 집행관의 유연하고 합목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⁰¹⁾

과거 대법원은 유아인도집행예규를 통해, 의사능력을 가진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바 있다. 이 예규는 법적 강제력 보다는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복지를 우선한 점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입장이었다. 해당 예규의 내용은 현재 삭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제시한 ‘자녀의 인격을 하나의 주체로 존중하여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시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한다는 가치 아래에서 자녀의 의견, 인격, 그리고 자녀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법원의 인도 명령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련 모든 관계자의 세심하고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⁴⁰²⁾⁴⁰³⁾

400) 山本和彦,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91.

401) 만일 가정법원의 집행에 대한 허가가 있었음에도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처리한다면 채권자는 집행이의의를 통해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02)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던 2014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제24차 회의(2014. 8. 8.)에서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자녀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7. 대법원 규칙에 위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8. 개정안 제안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민사집행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⁴⁰⁴⁾

[민사집행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57조의2(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와 권한 등) ①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할 때 미성년 자녀의 나이, 발달 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집행이 미성년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였는데, 두 번째 의견이 채택되었다. 두 번째 의견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자녀가 반대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점, 자녀의 의사만으로 재판의 집행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보다 큰 틀에서 그 집행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제집행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의사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의사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거부하는 때에도 인도명령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김상용,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6집 제3호, 중앙법학회(2024), 11-12].

403) 특히 집행현장에서는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녀 관련 전문가는 경험과 식견에 기초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을 자녀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맞춰 적절하게 이해시키고 인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집행관의 지휘 아래 집행 실행에 조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데, 집행관은 자녀 관련 전문가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백은형, “아동반환 인도 집행 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 법률신문 (2025. 3. 24.),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479> (2025. 6. 23. 최종 확인).

404) 민사집행법상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개정안은 가사재판에 의한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뿐 아니라 민사재판에 의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도 적용된다. 종래 민사재판에 의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역시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직접강제를 실시하였고 이 경우 유아인도집행예규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현행	개정안
	<u>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미성년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u> <u>②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성년 자녀의 나이,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양육 및 생활 상황,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에 요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인도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자녀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u> <u>④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u> <u>2. 미성년자 자녀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u>

현행	개정안
	3. <u>미성년자 자녀 또는 채무자를 제3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u> 4. <u>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3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출입하게 하는 것</u> ⑤ <u>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 해당 장소 및 그 주위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장소 관리자나 점유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전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u> ⑥ <u>집행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장소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채무자와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과의 관계, 그 관리자 등의 사생활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관리자 등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u> ⑦ <u>집행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제4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해당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u> ⑧ <u>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채권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출석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해당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그 대리인과 자녀의 관계 및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녀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자녀를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⑩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신체 및 정신상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심신에 해로운 과도한 조치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⑪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그 밖의 자의 저항을 받는 때에는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이외의 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III. 헤이그아동탈취법의 개정

헤이그아동탈취법에는 제13조(이행명령 등)에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외 아동반환재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개정 전 유아인도 집행예규를 적용하여 아동반환의 집행을 하였으나,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에는 위 예규를 적용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반환집행과 유아인도집행은 동일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아동과 유아라는 용어 차이는 있으나 둘다 미성년 자녀에 포섭된다는 점도 전술한 바 있다.

헤이그아동탈취법에 직접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으나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별도의 아동반환집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만큼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안은 그대로 헤이그아동탈취법에 준용한다는 규정만으로도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준용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⁴⁰⁵⁾ 다만,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미성년 자녀’와 ‘인도’는 헤이그아동탈취법의 용어와 부합하도록 각각 ‘아동’과 ‘반환’으로, ‘채권자’는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으로 문구를 대체한다.

또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한편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제재인 과태료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은 직접 헤이그아동탈취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헤이그아동탈취법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405) 다만, 가사소송법 개정안 제64조의2 제3항 중 단서 부분(“다만, 미성년 자녀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집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준용하지 않는다.

[헤이그아동탈취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3조(이행명령 등)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는 <u>1천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13조(이행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2천만원</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의2 강제집행 제14조의2(아동반환청구의 집행) ① 아동반 환청구의 집행에 있어서는 가사소송법 제64 조의2 규정 및 민사집행법 제257조의2 규정 을 준용하되 위 규정들의 “미성년 자녀” 및 “자녀”는 각각 “아동”으로, “인도”는 각각 “반 환”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257조의2 제2 항의 “채권자”는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으로 본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4 조의2 제3항 중 단서 부분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전항의 아동반환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관련 규칙의 개정



I. 민사집행규칙의 개정

1. 개정의 필요성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⁴⁰⁶⁾ 집행과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탄력적 운용에 부합한다. 이는 세부 절차는 사건의 다양성과 변화에 맞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보다는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규칙에서는 상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하여 규율하고 법률의 규정 사항을 보충함으로써 법률과 규칙 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2. 민사집행규칙에 규정될 사항에 대한 검토

가.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에 대한 집행 허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 채무자, 미성년 자녀 등을 특정하기 위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집행권원 등은 집행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정보이고 첨부서류로 집행력 있는 관련 사건의 집행권원 정본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가사소송법 개정안 제 64조의2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행명령 등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행명령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직접강제 허용 요건(이행명령 및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집행 허가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행법원이 심사하도록 돕는 절차상 장치로서, 집행법원의 허가

406)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유아인도집행예규의 내용 중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세부사항 등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를 얻기 위해 신청인이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규정을 둬으로써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나. 집행실시 신청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한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⁴⁰⁷⁾ 실제로 인도집행을 진행하려는 단계에서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집행실시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민사집행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가.에서 설명한 신청서는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법원 허가 신청 단계라면, 본 단계의 신청서는 집행법원의 집행 허가 후 집행관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신청서를 통해 채권자는 인도집행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집행관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신원확인에는 필요한 정보(사진 등)와 집행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행관은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집행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집행이 필요한 이유와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면(민사집행법 개정안 제257조의2 제6항 참조) 그 허가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집행장소에 출석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민사집행법 개정안 제257조의2 제9항 참조)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게 한다.⁴⁰⁸⁾ 이러한 상세 정보 제출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마주할 상황을 예측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안전 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집행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높인다.

다. 제3의 장소에서의 미성년자 인도집행 허가 신청서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자녀를 인도

407) 민사재판에 따른 자녀 인도 명령은 일반적으로 제3자가 자녀를 불법으로 탈취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신속한 회복이 필요하고, 이행명령 등 간접강제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집행실시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가 곧바로 집행관에게 자녀 인도 명령의 집행을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08) 대리출석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의 동의 없이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서는 집행법원이 관리자 등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므로(민사집행법 개정안 제257조의2 제6항 참조) 그러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허가 신청서에는 반드시 집행 대상 자녀의 위치와 그 장소의 관리자 등의 정보, 그리고 왜 그 장소에서 인도집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적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해당 장소에서의 집행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위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관리자 등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 집행관은 제3의 장소에서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관리자 등의 재산권이나 주거권 침해 문제는 위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대리출석 허가 신청서

민사집행법 개정안 제257조의2 제8항은 채권자가 집행 현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집행관이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채권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직접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와 자녀를 대면할 경우 감정적인 충돌로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상황이 예상되거나, 채권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자녀를 인계받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대신 채권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 개정안 제257조의2 제9항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인도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은 자녀를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집행현장에 출석하고 자녀를 인도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신청서에는 누구를 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해당 인물이 자녀 인도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는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고, 법원은 이 신청에 관하여 판단할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해당 대리인의 자녀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마.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자녀의 심리와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심리 전문가 등의 집행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2024년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을 통해 ‘자녀 관련 전문가’ 제도⁴⁰⁹⁾를 도입하였고, 실무상 이를 기반으로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자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⁴¹⁰⁾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제186조의6은 위 예규의 해당 내용을 민사집행규칙 차원에서 체계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2항⁴¹¹⁾은 기존 예규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으로, 집행관이 자녀 인도집행을 할 때 자녀 관련 전문가가 자녀의 연령과 의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해를 돕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리적 조력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항에서는 자녀 관련 전문가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집행관과 당사자 모두가 자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3항은 집행과정에서 자녀 관련 전문가가 관찰한 자녀의 반응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 주요 사정을 집행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제4항과 제5항은 집행 종료 후 자녀 관련 전문가가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반응, 자녀와 채권자 및 채무자 간 정서적 유대관계,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수행 경과 및 제약 요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차에서 자녀 관련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집행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⁴¹²⁾

자녀 관련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409)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상으로는 ‘아동 관련 전문가’라고 지칭하고 있다.

410) 이후 국내 가사사건에 적용되는 유아인도집행예규도 개정을 통해 자녀 관련 전문가(예규상 유아 관련 전문가)의 집행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411) 이해의 편의를 위해 후술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중 제186조의6 각 조항을 특정하여 설명하였다.

412) 자녀의 복리를 위해 도입된 자녀 관련 전문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자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실질적인 참여가 아니라 단순한 동행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신속한 집행완료에 치중한 나머지 자녀 관련 전문가에게 자녀와 대화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그 역할이 제한되는 등 형식적으로 제도가 운용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집행이라는 본래의 자녀 관련 전문가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 보고서 제3장의 제3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사례 분석 중 헤이그아동반환집행 사례(2) 참조.

의 자녀의 반응, 정서 상태, 부모와의 상호작용, 현장의 분위기 등이 보다 정확히 기록될 수 있고, 집행관의 집행방식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도 마련된다. 보고서에는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받았던 제약이나 주위의 협조가 부족했던 상황이 포함될 수 있어, 집행관의 협력 태도 및 현장 운용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보고서는 해당 사건의 집행법원인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가정법원은 이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제도 개선과 교육자료, 정책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자녀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인 위촉, 해촉 절차 등은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및 유아인도집행예규에서 규정되어 이미 실무에서 운용되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제186조7은 위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평가 관련 내용을 민사집행규칙 내로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자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되, 그 추천은 가정법원장의 실무적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위촉기간, 해촉사유, 업무평가 절차, 후속 위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규칙에 명확히 하여, 제도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5항 및 제6항은 집행관이 집행 후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위촉 여부나 향후 자녀 관련 전문가 활용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자녀 관련 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과 자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7항은 실무상 유연한 제도 운용을 위하여 위촉 절차,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기타 행정사항 등을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경직성을 피하고 실제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사. 통역인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 참여

미성년 자녀 인도 강제집행은 단순한 물적 대상의 인도와 달리, 인격을 가진 자녀의 의사와 반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집행의 방식과 과정에

따라 자녀에게 장기적인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증가, 해외 체류 이력, 장애 아동의 사례 등으로 인해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정서적·신체적 취약성을 지닌 자녀가 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장애 관련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에 집행관이 이와 같은 특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나 외부 인력 활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즉, 집행관이 집행의 원활한 수행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역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되,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무 효율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본 개정 조문인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제186조의8은 기존의 ‘자녀 관련 전문가 제도’와는 별도로, 통역인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법원의 위촉 없이도 일회적·보조적으로 참여 가능한 실무 협력 인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아.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 등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민사집행규칙 제187조에서 유체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를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적용한 것이다.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는 것은 보통 미성년 자녀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 목적이 달성된 상황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는 집행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집행이 끝났다는 통지⁴¹³⁾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마무리를 알리는 동시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발적 협력을 계속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집행을 제3의 장소(예를 들어 학교, 친척 집 등)에서 실행한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도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 집행하였다면 학

413) 특히 채무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는 필요하다. 다만 통지의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제8조(최고·통지)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등이 집행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집행 장소에 메모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 측도 집행관이 자녀를 인도하였음을 알아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집행조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단순한 물적 대상의 인도집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사집행법 제1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6조는 강제집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서의 기재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특화된 조서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집행관이 작성하는 집행조서는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복잡성이나 민감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녀의 반응이나 특이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집행불능의 이유가 단순화되어 적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집행 후 이의신청, 재집행 여부 판단 등에서 법원이 적절한 판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자녀 권익 보호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개정 조문인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제186조의 10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특화된 실질적 기록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설한다.

차. 비밀준수의무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집행과 달리, 자녀라는 인격 주체가 개입되고, 가족 내부의 민감한 갈등, 정서적 요소, 복잡한 생활환경 등의 요소가 얹혀 있는 특수한 집행 절차이다.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자녀 관련 전문가 포함)는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상태, 부모 간의 양육 갈등, 거주지, 가족관계, 과거의 사건 등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자녀 및 당사자의 사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누설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 자녀의 장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녀 인도집행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언론이나 외부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의 무심한 언행이나 제3자와의 비공식적 대화 등이 심각한 정보 누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가, 집행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미성년 자녀 및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해 집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유아인도집행예규에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되 기존 내용 중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의 보호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의 비밀’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당해 집행과 무관한 제3자에게’도 추가하였다.

카. 개정안 제안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민사집행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u><각 신설></u>	<u>제186조의2(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u> <u>① 가사소송법 제64조의2 제3항에 따른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u> <u>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u> <u>2. 집행권원의 표시</u> <u>3. 미성년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u> <u>4.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었음에도 채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 사실</u> <u>5.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및 그 위</u>

현행	개정안
	<u>반에 대한 제재 없이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이유</u> ② 제1항에 따른 집행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보 2.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 인도를 명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었던 경우 각 결정 정보 3. 자녀의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집행을 허가받아야 하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u>제186조의3(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실시를 위한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u> 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실시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집행권원의 표시 3. 미성년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소 4.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는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인 경우 그 장소 5.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는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자나 점유자(이하 “관리자 등”이

현행	개정안
	<u>라 한다)의 성명, 해당 장소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이유 및 법원이 별도로 해당 장소에 대한 집행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사항</u> 6. <u>법원이 법 제257조의2 제9항의 결정⁴¹⁴⁾을 한 경우 그 결정 내용 및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u> 7. <u>채권자가 원하는 집행 실시 기간이나 일정</u> ② <u>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u> <u>1. 집행력 있는 정본</u> <u>2. 가사소송법 제64조의2 제3항에 따른 집행허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결정 정본</u> <u>3. 집행관이 집행 실시 현장에서 채무자와 미성년 자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 <u>4. 채무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활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u> <u>5. 법 제257조의2 제6항의 허가 결정⁴¹⁵⁾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정본</u> <u>6. 법 제257조의2 제9항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정본</u>

414) 제257조의2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4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해당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그 대리인과 자녀의 관계 및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녀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집행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자녀를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415) 제257조의2 ⑥ 집행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장소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채무자와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과의 관계, 그 관리자 등의 사생활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관리자 등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할

현행	개정안
	<u>제186조의4(법 제257조의2 제6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u> ① 법 제257조의2 제6항에 따른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관리자 등의 성명 2. 위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장소에서 집행이 필요한 사정 및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이 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u>제186조의5(법 제257조의2 제9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u> ① 법 제257조의2 제9항에 따른 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2. 신청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리인과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u>제186조의6(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등)</u>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자녀 관련 전문가 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중 일방에게 편파적 이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집행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자녀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미성년 자 녀의 인도를 집행할 때 집행관의 요청에 따 라 채무자를 설득할 수 있고, 자녀의 나이,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자녀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③ 자녀 관련 전문가는 미성년 자녀의 인도 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찰한 자녀의 신체 및 심리 상태, 채권자 및 채무자와 자녀의 정 서적 유대 및 자녀의 반응, 그 밖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녀 관련 전문가는 집행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행동적 반응에 관한 사항 2. 미성년 자녀와 채권자 및 채무자 간 정서적 유대에 관한 사항 3. 집행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준 집행상황에 관한 소견 4.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역할 수행 경과 및 제약 요인 5. 그 밖에 자녀 관련 전문가로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제4항의 보고서는 서면 또는 집행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

현행	개정안
	며, 집행법원은 필요시 해당 보고서를 법원 행정처에 송부할 수 있다. ⑥ 자녀 관련 전문가는 사실에 기반한 관찰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4항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6조의7(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법 제257조의2 제3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녀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자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자녀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자녀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녀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4. <u>자녀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u> ④ 제1항에 따라 자녀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자녀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할 때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자녀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자녀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u>제186조의8(통역인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참여)</u> ① 집행관은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1. <u>미성년 자녀 또는 당사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한 통역인</u> 2. <u>미성년 자녀 또는 당사자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이동, 정서적 안정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u>

현행	개정안
	<u>② 전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통역인 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 자녀 또는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 정서적 안정, 이동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u> <u>제186조의9(인도청구의 집행 종료의 통지)</u> <u>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목적이 달성되어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청구의 집행을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실시된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도 집행 완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u>제186조의10(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 조서의 특칙)</u> <u>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을 실시한 집행관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 <u>1. 인도된 미성년 자녀가 집행권원에 적시된 자녀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u> <u>2. 집행 경과에 대한 요지(집행완료 또는 집행불능의 결과 포함)</u> <u>3. 미성년 자녀가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인도된 경우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법원의 허가 여부</u>

현행	개정안
	4. 법 제257조의2 제5항에 따라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장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을 한 경우, 그 장소에서의 집행에 대한 법원의 허가 유무 및 경위 5. 집행 과정에서 보인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반응 등 자녀의 복리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6. 집행에 참여한 자녀 관련 전문가가 보고하거나 전달한 주요 소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 제186조의11(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을 수행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미성년 자녀 및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당해 집행과 무관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의 개정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라 진행되는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아동반환집행에는 개정 가사소송법과 개정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바 있다. 헤이그아동반환사건과 국내 가사사건 모두에서 자녀의 복리, 정서적 안정, 집행의 적절성 등을 공통된 기준으로 고려해 왔고, 각 사건에 있어서 집행관련 예규의 내용 역시 사실상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헤이그아동반환집행도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절

차를 그대로 준용하여 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과 실무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자녀의 국적의 차이, 집행에 따른 자녀의 해외이동 등 사건의 국제적 성격은 존재하나, 실제 집행 절차는 국내 사건과 구별되지 않으며, 집행관의 역할, 자녀 관련 전문가의 참여, 조서 작성 방식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신설된 민사집행규정에 대한 준용조항을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에 두어,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4조의2에 따른 반환명령의 집행에도 민사집행규칙상 신설되는 제186조의2부터 제186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미성년 자녀 집행 절차가 동일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로써 자녀의 권익 보호, 집행관의 권한 행사, 자녀 관련 전문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국제적 신뢰 확보 및 자녀 복리 중심의 집행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제8조(가집행)의 ‘유아’는 가사소송법 개정에 발맞추어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데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아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유아’라는 용어를 ‘아동’으로 변경하고 문구도 적절히 수정하기로 한다.

[헤이그아동탈취법 대법원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집행) ----- 서 아동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
〈신 설〉	제10조(준용규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아동반환청구의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186조의2부터 제186조의11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 또는 “자녀”는 각 “아동”으로, “인도”는 “반환”으로 본다.

제4절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 대한 검토



법원의 미성년 자녀 인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가 이에 불응하여 자녀 인도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간접강제(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와 직접강제 등으로 자녀 인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도 명령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장기간 자녀가 한쪽 부모에게만 일방적으로 양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도집행을 시도해도 자녀의 완강한 거부, 채무자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집행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및 감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를 통해 일정한 유형의 자녀 인도 불이행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폭행·협박 또는 기망 등의 요건이 있어야 적용되며, 단순히 인도 명령을 거부하고 자녀를 숨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 자녀의 정당한 인도 거부’에 대해 1년의 구금 또는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녀 인도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형사적 제재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인도 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인도 불이행이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법원의 자녀 인도 명령은 단순한 민사적 강제수단을 넘어 형벌에 의한 실질적 위력을 갖춘 명령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형사처벌 규정의 존재 자체가 부모들로 하여금 인도 의무의 중대성을 인식하게 하여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복적 불이행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추가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장기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을 보다 엄정하게 다룰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자녀 인도 문제는 단순한 권리 이전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간의 애정, 보호, 복리를 둘러싼 민감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일방적 의도나 악의를 전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도 명령을 거부하는 부모의 상당수는 자녀의 복리를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타당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법원의 판단과 충돌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형사처벌로 귀결되어야 할 범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형벌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수단이며, 형사법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법리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내부의 양육 갈등에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곧바로 입법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수준에서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자녀 인도 불이행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법원의 명령이 실질적 집행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그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형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법제도 논의의 장에 올리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만약 향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를 일반 형법에 ‘미성년 자녀 인도 불이행죄’와 같은 독립 조항으로 두기보다는,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보다 분명한 아동복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부모의 자녀 인도 불이행이 장기화되어 아동의 학습권,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유지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아동복지 침해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한 지연이나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구성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 명령 불이행 문제의 형사처벌 도입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입법 제안을 하지 않으며, 다만 자녀 복리의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고 법원의 결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향후 형사처벌 규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시작되어야 함을 제기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형사처벌 규정 도입은 가족 내부 갈등이라는 특수성과 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법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입법 논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5절 집행 현장에서의 개선방안



현재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유아인도집행예규가 적용되는 집행 현장에서의 개선방안은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위 예규들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으로 통계 등을 추출할 만한 집행에 관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실무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 제정 이후 몇 건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있었으므로 이들 사례의 검토를 통해 앞으로 집행 현장에서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⁴¹⁶⁾

I. 집행 현장에서의 미성년 자녀 복리 우선 및 설득 노력

현재 집행 현장에서는 설득과 타협보다는 신속한 집행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집행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 있어 집행장소에 들어간 후 자녀 인도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5~10분 정도로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며, 본 연구보고서의 집행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채무자와 자녀를 설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설득을 시도했다라도 결국엔 곧바로 속전속결 형식으로 채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녀를 안아서 들고 나오는 식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규의 제·개정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예규가 민사집행법상 동산인도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녀를 동산처럼 빼앗는다는 인식⁴¹⁷⁾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녀 인도집행의 사례를 공유하며 평가하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집행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예규의 등장에 따라 몇 십년 동안 지속되어온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

416) 법무부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2025. 2.)”을 만들어 집행관 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다.

417) 최근 집행완료한 사건들의 집행조서 내용 중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집행장소에 들어가서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사건본인 000을 빼앗아 집행보조자를 통하여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사건본인 000을 집행보조자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 “집행장소로 들어가 ... 방문목적을 고지한 후, 바로 사건본인 000과 000을 빼앗아 집행보조자를 통하여 채권자 및 대리인에게 인도하였다.”

어서 자녀의 인도 거부 의사는 곧 집행불능이라는 공식'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무조건적인 인도집행이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는 자칫 인격권의 주체인 자녀를 한낱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와 자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는 특히 자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 관련 전문가 A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을 해봤는데 사전준비와 돌발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채무자가 자발적 인도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라 자녀를 인도하는 것을 순순히 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녀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너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채무자 측에서 소리치고 저항하니 자녀도 소리치고 저항했는데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인도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안 간다고 버티는 자녀를 안고 나왔지만 이후 자녀와 헤어질 때 자녀는 바로 밝은 모습을 보였고, 인천공항에서도 자녀가 채권자 일행들과 웃고 있는 것을 보면 자녀의 속마음은 채권자와 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법원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고 직접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다소 강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혹시 가능하다면,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법원에서 인도되어 간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후상황을 알 수 있다면 자녀들 복리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동 관련 전문가 B

헤이그아동반환집행을 한 경험이 있다. 사전준비도 하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집행현장에서는 순식간에 안전요원이 채무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자녀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채무자는 울고 항의하고 나를 매우 심하게 비난했다. 집행은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 모든 집행 인력이 매우 불편감을 느꼈고 특히 집행관도 물건이 아닌 아이를 이런 형식으로 집행 인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토로했다. 강제집행을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법적 의무를 순리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알겠으나 어린 자녀를 물건처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우 많은 고민과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집행에 앞서 반드시 자녀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이나 의사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도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을 추가해서 더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지 고민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감치를 한다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한편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집행사건의 관리 현황 및 조서 작성 개선

전산시스템인 집행관통합시스템상 미성년 자녀 인도, 유아인도, 아동반환 등의 사건명은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이 접수될 때 국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동산인도로 34건, 기타로 18건, 부동산 인도로 2건을 접수 처리하였다.⁴¹⁸⁾ 수많은 동산 인도 등 사건 중에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을 추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해 전국 집행관 사무소에 얼마만큼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이 존재하고 처리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를 추출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조속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관한 사건명으로 전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집행관통합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전국적인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이들 데이터를 기초로 실무적인 개선 방안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사건의 집행조서는 관련 집행조서의 형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유체동산인도집행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으로 생성하여 처리하거나 수작업처리정보 형식⁴¹⁹⁾을 생성하여 등록하고 있었다. 전산상으로 생성된 수작업처리정보(형식적 조서)에는 집행에 관한 기본정보와 집행결과 정도만 입력되어 있었고 집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작업처리한 조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즉, 전산에 등록한 형식적 조서에는 실제 집행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집행완료 또는 집행불능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과 같이 정서적, 물리적 긴장 상황이 수반되는 집행절차의 경우, 집행조서를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집행 경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향후 제도 개선 및 집행방식의 보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 집행조서의 형식 및 작성 방식에 대한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418) 헤이그아동반환사건의 경우도 동산인도, 기타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419) 집행조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였다.

.....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헤이그아동반환집행 및 유아인도집행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본 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법과 제도적 미비 및 현실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법원의 역할, 간접강제와 직접강제의 운용 방식, 미성년 자녀 인도 의무 불이행 시 제재수단, 집행관련 전문인력의 역할 등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률과 제도의 미비함을 보완할 입법 필요성과 절차 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에 있어서는 간접강제를 우선하고 직접강제는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상 간접강제 수단을 거친 후에 가능하도록 하되 가정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여 허가를 받게 하고,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과태료를 강화하고 실제 인도집행 현장에 임하는 집행관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과 세부사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개정 내용은 헤이그아동반환집행에도 준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 인도 의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다만,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적 관계, 자녀의 복리 중심의 접근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입법 제안에 이르지 않고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향후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헤이그아동반환집행예규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인도집행예규가 불러온 인도집행 현장의 변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법률 개정과 정책 뒷받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아래, 자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인도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심신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배려를 조화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법률 및 규칙 개정안과 정책제언들은 장기적인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축적된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제도 변화 이후 강제집행 성공률과 미성년 자녀의 정서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자녀의 관점에서 집행 절차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신규 입법례와 국제협약의 발전을 꾸준히 추적하여 우리의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집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 재판의 실효성 확보 내지는 사법 정의 실현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본 연구보고서는 주로 법률, 규칙과 제도적 미비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자녀 인도집행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가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해결 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가사소송법 개정자료집 (2015).

곽민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현황에 관한 연구 - 중앙당국의 실무상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법무부 (2015).

국제아동인권센터 외 공저, 선언에서 이행으로 -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30년 -, 틈새의 시간 (2021).
김상용, 가족법연구Ⅱ, 법문사 (2006).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1).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법무부,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2009).

_____,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2025).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사소송실무 (2025).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3).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자녀중심 가사재판 (201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2021).

_____,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2021).

_____,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20).

_____, 법원실무제요 비송·과태료 (2024).

서현웅,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 제도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0).

석광현/이병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상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6판), 박영사 (2023).

수원가정법원, 2023 한 권으로 읽는 자녀 관련 사건의 이해와 조사 (2023)

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안춘수, 국제사법(제2판), 법문사 (2023).

오종근 외 2명, 독일 민법전 가족법, 박영사 (202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7개정판), 박영사 (2016).

이재석, 명도집행 119, 푸른솔 (2021).

임종미,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2023).

전병서, 민사소송법(제4판), 박영사 (2023).

최광선, 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 민법전, 박영사 (2023).

[논문]

강윤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있어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 민사집행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3).

곽민희, “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와 헤이그 협약의 적용”,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_____, “자녀인도의 강제집행과 실무 -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_____,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사안에서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 합의지원(Co-mediation) 모델의 검토”,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_____,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 연구”, 법무부 (2023).

_____,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청구요건 검토 - 아동의 상거소 및 양육권 침해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23).

_____,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3조(1)(b) ‘중대한 위험’의 해석 지침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3조(1)(b)에 관한 모범실무지침(2020)으로부터의 시사 -”, 가족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22).

_____,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국내이행입법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실시법으로부터의 시사 -”,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4).

_____,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적용사건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이행입법의 쟁점별 분석 -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를 대상으로 -”,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_____,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자녀인도청구의 실무상 쟁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권재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반환재판의 강제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_____,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김두년,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57집, 한국법학회 (2015).

- 김미경, “자녀 국제인도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내용과 사례”,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_____,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현황과 전망 - 제5회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2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상용,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26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24).
- 김아영, “다문화가정의 미성년 자녀 탈취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제48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 _____, “국제혼인부부사이에서의 아동탈취 현상과 대응방안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 김 연, “가사소송상 이행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제14집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김 연/박주현, “[토론문]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8).
- 김운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고찰”, 실무연구 -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자료집 VIII, 서울가정법원 (2002).
-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법조 제66권 제3호, 법조협회 (2017).
- 김형석, “강제이행 - 특히 간접강제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석광현, “국제가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들께 드리는 고언(苦言)Ⅱ”,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4).
- _____,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_____,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회고, 현상과 전망”, 국제거래와 법 제1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송효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이행의 확보 및 관할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중심으로 -”, 법조 제723호, 법조협회 (2017).
- 오흥록, “간접강제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집행문 부여 절차, 청구이의의 소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민사판례연구회 (2015).
- 유아람, “간접강제의 법리와 실무상 문제”, 민사집행법연구 제7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1).
- 유주성, “프랑스 검찰의 인사제도와 비교법적 함의”, 강원법학 제5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 윤지영, “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 -”, 형사판례연구 제22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4).
- 이노홍,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이동진, “간접강제 : 비교법 · 실질법 · 국제사법적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95호, 한국법학원 (2023).
- 이무상, “간접강제 -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_____, “프랑스법에서의 아스트레인트(astreinte)에 관한 소고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조 제60권 제9호, 법조협회 (2011).
- 이병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79호, 한국법학원 (2004).
- _____, “[국제가족법 논점 4] 가족법 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협약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연구 제1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6).
- _____,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 _____,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친자법적 재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 _____, “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 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 _____, “헤이그아동보호협약의 실무적 운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 이재민, “간접강제 보충성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 _____, “간접강제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 이제정, “가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실무상 문제점 -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을 중심으로 -”, 실무연구 - 법관 가사재판실무연구 모임 자료집 VIII, 서울가정법원 (2002).
- 이종혁, “국제가사사건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 임채용,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장지용, “아동의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 유럽연합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9).
- 전병서, “자(子)의 인도청구의 집행방법에 관한 연구”, 법조 제67권 3호, 법조협회 (2018).
- 전후재,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 법적 성질, 보충성,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 정도희/배진아,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아동환환 사례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정선주, “한국의 비송절차 - 2015년도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제19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정지원, “가사사건과 강제집행”,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4).

최성수, “미국 판례에 나타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상 상거소와 결정기준의 설정”,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하성우, “특정주제 집중연구 최종보고서[연구주제 : 미성년 자녀 탈취에 대한 제재, 구제수단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4).

현소혜, “집행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 특히 사전처분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발표문 (2017).

_____, “헤이그아동탈취협약상 아동반환재판과 본안재판의 관계”,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 (사)한국사법학회 (2021).

황기식/강혜정, “국제아동탈취사건 해결 정책에 관한 글로벌 비교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8권 제1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8).

2. 국외문헌

加藤誠・宮下節子, “家庭裁判所における子の引渡しをめぐる紛争とその解決の実情”,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高田裕成編著, 家事事件手続法 理論・解釈・運用, 有斐閣 (2014).

谷英樹,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子の引渡し一弁護士実務の対応を中心に”,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日本加除出版 (2020).

内野宗揮・剣持淳子,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の法令解説・運用実務, きんざい (2020).

内野宗揮・吉賀朝哉・松波卓也, Q&A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制, きんざい (2020).

内田義厚, “子の引渡執行の過去・現在そして未来”, 村上正子・安西明子・上原裕之・内田義厚, 手続からみた子の引渡し・面会交流, 弘文堂 (2015).

大塚慶之, “子の引渡執行の実務”, 新民事執行実務 第15号, 民事法研究会 (2017).

_____, 臨床実務家のための家族法コンメンタール(民法親族編), 勁草書房 (2016).

渡邊隆浩・片山真一, “東京地方裁判所執行官による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の実務運用について”,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稲田知江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一事例を基に一”,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瀬本比呂志, “子の引渡しに関する家裁の裁判と人身保護請求の役割分担—子の引渡しに関する家裁の裁判の結果の適正な実現のために—”, 判タ 第1081号 (2002).

梶村太市, “子の引渡しの裁判管轄と執行方法”, 家族法学と家庭裁判所, 日本加除出版 (2008).

本間義信, “子の引渡請求の執行方法”, 伊藤眞ほか編 民事執行保全判例百選, 有斐閣 (2005).

山口亮子, “幼児引渡請求の性質”, 水野紀子ほか編 民法判例百選Ⅲ親族・相続(第2版), 有斐閣 (2018).

山崎恒,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直接強制の可否”, 判タ 第1100号 (2002).

山本和彦 監修, 論点解説 令和元年改正民事執行法, きんざい (2020).

山本和彦, “ハーグ条約の概要と子の返還執行手続”, 新民事執行実務 第12号, 民事法研究会 (2014).

———, 子の引渡手続の理論と実務, 有斐閣 (2022).

山川一陽・松嶋隆弘, 民事執行法及びハーグ条約実施法等改正のポイントと実務への影響, 日本加除出版 (2020).

西岡清一郎, “民事執行法改正後の子の引渡執行”, 新民事執行実務 第18号, 民事法研究会 (2020).

小津亮太, “国内の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における専門家の関与の取組みと留意点”,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水野有子・中野晴行, “面会交流の調停・審判事件の審理”, 東京家事事件研究会編 家事事件・人事訴訟事件の実務—家事事件手続法の趣旨を踏まえて—, 法曹会 (2015).

窪田充見, 家族法(第3版), 有斐閣 (2017).

垣内秀介, “子の引渡しを命じる債務名義の執行力の主観的範囲”, 曹時 第70巻 第10号, 東京法曹会 (2018).

園尾隆司監修・杉山初江, “民事執行における子の引渡し”,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竹田光広, “座談会 国内の子の引渡執行の実情 — 子奪取条約実施法施行以降の動向 —”, 新民事執行実務 第14号, 民事法研究会 (2016).

中野貞一郎・下村正明, 民事執行法, 青林書院 (2016).

織田有基子, “ハーグ子奪取条約の履行確保の側面 — 条約実施法等改正を中心に —”, 国際法外交雑誌 第119巻 第3号, 国際法学会 (2020).

村上正子,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 早稲田大学法務研究論叢 第6号, 早稲田大学法務研究科 (2021).

———, “条約実施法の施行とその影響”, 村上正子・安西明子・上原裕之・内田義厚, 手続からみた子の引渡し・面会交流, 弘文堂 (2015).

村井壮太郎, “東京家庭裁判所における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事件の運用について”, 家庭の法と裁判 第28号,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秋山靖浩, “離婚後の夫婦間における子の引渡請求と権利濫用”, 法学教室 第453号, 有斐閣 (2018).

許末恵, “親権と監護—民法 第766条, 第818条及び第819条の成立”, 日本評論社 (2016).

下坂節男,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における実務の実情 — FPICでの立会人等の事例を中心に —”, 改正民事執行法における新たな運用と実務, 家庭の法と裁判研究会 (2020).

BT-Drucksache 13/4899.

BT-Drucksache 14/4722.

BT-Drucksache 16/6308.

BT-Drucksache 7/2060.

Campbell, Claudia, Aufenthaltsbestimmungsrecht und Umzug mit dem Kind ins Ausland, NJW-Spezial 2022.

Erb, Volker/Schäfer, Jürgen,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Band 4: § 185–262, 4. Auflage, C.H.Beck, 2021 (MüKoStGB/Bearbeiter).

Hahne, Meo-Micaela/Schlögel, Jürgen/Schlünder, Rolf, BeckOK FamFG 52. Edition (Stand: 01.12.2024), C.H.Beck, 2024.

Haußleiter, Martin, FamFG –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Kommentar, 2. überarbeitete und ergänzte Auflage, C.H.Beck, 2017 (Haußleiter/Bearbeiter).

Rauscher, Thomas, Münchener Kommentar zum FamFG –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FamFG) mit Internationalem und Europäischem Zivilverfahrensrecht in Familiensachen (IZVR, EuZVR), Band 1: §1–270, 4. Auflage, C.H.Beck, 2025 (MüKoFamFG/Bearbeiter).

Salgo, Ludwig, Wie man aus einer ungünstigen Situation eine das Wohl des Kindes gefährdende machen kann – Grenzen der Staatsintervention zur Durchsetzung des Umgangsrechts, FPR 2008.

Schulte-Bunert, Kai, Das neue FamFG, 1. Auflage, Luchterhand, 2009.

Schwab, Diet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0: Familienrecht II – §§ 1589–1921 RelKErzG · VBVG · SGB VIII · SaRegG, 9. Auflage, C.H.Beck, 2024 (MüKoBGB/Bearbeiter).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r Bericht – Statistik über Familiensachen – 2023, 09. 08. 2024.

Sternal, Werner, FamFG :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Kommentar, 21. Aufl, C.H. Beck, 2023 (Sternal/Bearbeiter).

Estelle GALLANT, 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 LA CONVENTION DE LA HAYE DU 25 OCTOBRE 1980. – Droit général de l'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JurisClasseur Droit international, Fasc. 549–30, 01/04/2023.

Ministère de la justice, Les chiffres clés de la justice Édition (2024. 1. 24.).

Roger Perrot, Philippe Théry,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Dalloz (2005).

Véronique Chauveau, Hansu Yalaz, Déposer une demande de retour d'un enfant déplacé ou retenu en France de manière illicite, Fiche pratique n° 4228, 14 Mai 2024.

3. 언론기사 (2025. 6. 23. 최종 확인)

“강남 한복판에서 러닝머신을 걷는 미국 남자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2023. 3. 26.), <https://www.fnnews.com/news/202303261144562452>.

“‘국제아동탈취 사건’ 집행지연 문제 해소될까”, 법률신문 (2023. 12. 14.), <https://www.lawtimes.co.kr/news/194061>.

김윤정, “법조광장 유아인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일본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 법률신문 (2021. 4. 5.),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8855>.

“[단독] ‘딸 뺏겼다’ 프랑스 엄마의 도움 요청, 한국 검찰은 2번이나 외면했다”, 로톡뉴스 (2019. 10. 22.), <https://lawtalknews.co.kr/article/IZA6WF2R689B>.

“[단독]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방한 ... “한국, 개선 여지 없다면 내년에도 아동탈취 협약 불이행 국가””, 코리아헤럴드 (2022. 12. 5.),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1205000711>.

“[단독] 한국, 브라질 인도 등과 美 국무부 ‘아동탈취국’ 3년 연속 오명”, TV조선 (2024. 4. 30.),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30/2024043090076.html.

“대법원, 국제 아동반환 관련 예규 제정... ‘집행지연 해소를’”, 법조신문 (2024. 1. 12.),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855>.

“미 국무부, ‘부모의 아동납치 방지협약 불이행 국가’에 한국 포함시켜”, 뉴스1 (2025. 5. 3.),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772812>.

미셸 버니어-토틸, “기고 부모 일방의 아이 탈취, 용납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2023. 2. 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296>.

“박용진 의원, 국제아동탈취 협약 관련 대법원 예규 제정 환영”, 글로벌뉴스통신 (2023. 12. 14.),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86>.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대법원, 학교에서 아동 인도 집행 가능”, BBS NEWS (2025. 6. 5.),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087>.

백은형, “아동반환 인도 집행 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 법률신문 (2025. 3. 24.),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6479>.

“빼앗긴 자녀 되찾으려 하는 외국인 아빠들... ‘질서’ 없는 아동반환청구 강제집행 현장[법조 Zoom In: 법정시그널]”, 동아일보 (2024. 9. 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0/126602222/1>.

“법원 ‘아이 거부하면 유아인도 강제로 못해’”, 조선일보 (2013. 2. 1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1/2013021100131.html.

“법원 ‘유아가 ‘인도집행’ 거부하면, 의사능력 고려해야””, 뉴스토마토 (2013. 2. 1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2803>.

““법정서 전처 9번 이기고도 아들 못봐” 4년째 생이별 아빠의 눈물”, 중앙일보 (2023. 8. 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0675#home>.

송미강, “[기고] 실효성 없는 한국의 ‘국제아동탈취’ 처리규정”, 미주 중앙일보 (2023. 9. 21.), <https://news.koreadaily.com/2023/09/20/society/opinion/20230920192451317.html>.

“승소한 「낳은 정」 아들 찾게 됐다/ 「유아인도」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서 유권해석”, 중앙일보 (1982. 6. 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39932#home>.

“‘아동 탈취국’ 불명예 뒤늦게 벗어난 사연”, 조선일보 (2024. 5.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01/OFRTTQDI5CR7PCAN35JW75JKE/.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유아 인도 판결 나오면 “반드시 집행해야””, 법률신문 (2025. 4. 17.), <https://www.lawtimes.co.kr/news/207297>.

““엄마 · 아빠 사이서 눈치보인다” 11살의 ‘충성갈등’.. 화상 면접교섭 이후 변했다”, 파이낸셜 뉴스 (2021. 5. 3.), <https://www.fnnews.com/news/202105032001214228>.

“유아를 강제차압 실부슬하로 송환”, 동아일보 (1934. 7. 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072000209203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4-07-20&officeId=00020&pageNo=3&printNo=4891&publishType=00020>.

이성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서의 ‘아동 거부권’ 삭제는 아동 인권침해, 복원해야”, 국제신문 (2024. 10. 16.),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20&key=20241016,99099004128>.

이재석, “법조광장 유아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안”, 법률신문 (2021. 11. 4.), <https://www.lawtimes.co.kr/opinion/173829>.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법률신문 (2020. 8. 24.), <https://www.lawtimes.co.kr/news/163673?serial=163673>.

“자녀 무단 탈취 한국행 ... 애타는 미국 배우자들”, 미주 중앙일보 (2022. 12. 30.), <https://news.koreadaily.com/2022/12/29/society/generalsociety/20221229222604178.html>.

“‘전 부인이 내 아들, 한국으로 납치’ ... 시애틀 한인 제이 성씨, 한국 정부 공개 비판 나서”, 미주 한국일보 (2023. 12. 2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1226/1495252>.

“한국, 2년째 ‘아동 탈취국’ 오명...법무부 “문제점 개선 노력””, 파이낸셜뉴스 (2023. 5. 3.),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736536644>.

“<独自>子供の引き渡し、強制執行「成功」は3割 最高裁”, 産経新聞 (2021. 2. 20.), <https://www.sankei.com/article/20210222-ZYD3YM2GJVJDFKPFVRL3GAY6YE/>.

4. 인터넷 자료, 웹페이지 등 (2025. 6. 23. 최종 확인)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http://incrc.org/uncrc/>.

법무부, “국제아동탈취”, <https://www.moj.go.kr/moj/304/subview.do>.

_____, (보도설명자료) 모 언론, 「한국 2년 연속 ‘아동 탈취국’ 오명 ... 미국 국무부, “한국, 집행 절차 지연」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https://moj.go.kr/bbs/moj/183/570421/artclView.do>.

심리상담센터 마음소풍, “부모 따돌림 증후군, 자녀를 독점하려는 복수심”, https://www.maum-sopoong.or.kr/infor_story/52560.

일본 법무성 민사집행분과 제1차 회의 참고자료, <https://www.moj.go.jp/content/001209872.pdf>.

쓰루오카 겐이치, “일본의 민간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인도 강제집행 보조 -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의 지원활동 -”,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 자료집 (2023. 11. 15.),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0&gubun=195&cbub_code=&searchWord=¤t.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24. 10. 25.), <https://lawhome.or.kr/webbook/20241025/index.html>.

池田 清貴, “民事執行法等の改正(後編) - 子の引渡しの直接的な強制執行について -”, 養育費・親子交流相談支援センター, <https://www.youikuhi-soudan.jp/pdf/newsletter25.pdf>.

Adeline Gouttenoire, “L’impact sur le droit de la famille de la loi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Lexbase (2019. 4. 24.), <https://www.lexbase.fr/article-juridique/51222355-2>.

AG Bamberg, Beschluss vom 14. 10. 2021 - 0207 F 1098/21, Gesetze Bayern,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1-N-42855?hl=true&utm>.

Bundesamt für Justiz, “Hinweise zu internationalen Sorgerechtskonflikten”, https://www.bundesjustizamt.de/DE/Themen/Familieinternational/Sorgerecht/Hinweise/Hinweise_node.html.

Cirullies, Dr. (2012), Kindesrückführung und internationale Vollstreckung. Vortrag auf der Herbsttagung der Familienanwälte im Deutschen Anwaltverein. Verfügbar unter, <https://familienanwaelte-dav.de/files/media/familienanwaelte/herbsttagung/2012/Dr.%20Cirullies.pdf>.

Dalloz Actualité, “Loi de réforme de la justice : droit de la famille et droit des personnes.”, Éditions Dalloz (2019. 3. 25.),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loi-de-reforme-de-justice-droit-de-famille-et-droit-des-personnes>.

Estelle GALLANT, 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 LA CONVENTION DE LA HAYE DU 25 OCTOBRE 1980. – Droit général de l'enlèvement international d'enfants, JurisClasseur Droit international, Fasc. 549–30, 01/04/2023.

France,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2004”, HCCH, https://assets.hcch.net/upload/abd_return_fr.pdf.

_____,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janvier 2017”, HCCH, <https://assets.hcch.net/docs/a8e498a6-fc8a-4cc1-8d9f-bc062e66aeba.pdf>.

_____, “Réponses au Questionnaire de janvier 2023”, HCCH, <https://assets.hcch.net/docs/5175d97b-45fb-4d1b-b8fb-cd719bfded8e.pdf>.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Status table and full text, HCCH, entry into force: 1 December 1983, <https://www.hcch.net/de/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24>.

Jae Sung Park, “Challenges in Enforcing Convention Cases in Korea and Overcoming Them”, 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 6, 25.), https://www.hcchapweek2025.org/_files/ugd/887f5d_f6763fa1321443e1b5ea5a5d736063fc.pdf.

Lexbase, <https://www.lexbase.fr/article-juridique/51222355-2>.

Ministère de la Justice, “Circulaire JUSC1909309C du 29 mars 2019,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 2019-06, Annexe 12 : Exécution des décisions en matière familiale”,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migrations/portail/bo/2019/20190329/JUSC1909309C.pdf>.

Niedersächsisches Vorschrifteninformationssystem (NI-VORIS), <https://voris.wolterskluwer-online.de/browse/document/b9d0d1f1-cc45-4a7a-ac94-95ce806010cc>.

“Parents Face New Custody Conundrums in Midst of COVID-19 Pandemic”, <https://www.gdblaw.com/Parents-Face-New-Custody-Conundrums-in-Midst-of-COVID>.

Sénat français, “COMPTE RENDU INTÉGRAL DES DÉBATS Séance du 10 octobre 2018”, <https://www.senat.fr/seances/s201810/s20181010/s20181010003.html>.

外務省, “Fact Sheet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1980 Hague Convention(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 Japan November 1, 2024”, <https://www.mofa.go.jp/files/100643807.pdf>.

_____,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in Japan(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ttps://www.mofa.go.jp/files/100012160.pdf>.

_____, “ハーグ条約と国内実施法の概要” (2024), https://www.mofa.go.jp/mofaj/fp/hr_ha/page22_000843.html#section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s://kosis.kr/index/index.do>.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홈페이지, <http://incrc.org>.

독일 변호사 Hasselbach 홈페이지, <http://www.kanzlei-hasselbach.de>

독일 연방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bmj.de>.

독일 연방법무청 홈페이지, <https://www.bundesjustizamt.de>.

독일 연방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auswaertiges-amt.de>.

독일 연방정부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www.gesetze-im-internet.de>.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index.do>.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j.go.jp>.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

프랑스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uv.fr>.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 <https://www.senat.fr>.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diplomatie.gouv.fr>.

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https://lawhome.or.kr>.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https://www.hcch.net>.

CBO-Huissiers(일드 소재 프랑스 집행관 사무소) 홈페이지, <https://cbo-huissiers.com>.

FPIC(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fpic-fpic.jp>.

Lexbase(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www.lexbase.fr>.

MiKK e.V., [국제 아동 양육 분쟁 조정센터(Mediation bei internationalen Kindschaftskonflikten)]
홈페이지, <http://www.mikk-ev.de>.

SCP Albertin Joseph Font Huissiers de justice à Marseille(마르세유 소재 프랑스 집행관 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hdj13.fr>.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발효일 2013. 3. 1] [다자조약, 제2128호, 2013. 2. 14]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하고, 불법한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과 아울러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

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

제2조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은 이용 가능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한다.

제3조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는 다음의 경우에 불법으로 본다.

가. 이동 또는 유치 직전에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고 있던 국가의 법에 따라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된 양육권을 침해하고,

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그 양육권이 실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었거나,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

위 가항에서 말하는 양육권은 특히 법의 작용,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졌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동이 16세에 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이 종료된다.

제5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양육권’은 아동의 일신 보호에 관한 권리와 특히 아동의 거소지정권을 포함한다.

나. ‘면접교섭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의 상거소 이외의 곳으로 아동을 데려갈 권리를 포함한다.

제2장 중앙당국

제6조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연방제국가, 하나를 초과하는 법제를 가진 국가 또는 자치지역기구를 가진 국가는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각 중앙당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할 자유가 있다.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 국가는 신청이 그 국가 내의 해당 중앙당국에 전달 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제7조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이 협약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각 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소재 파악

나.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추가적 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다.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라. 바람직한 경우,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마.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자국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바.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의 추진 또는 확보 조치

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률 조연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법률구조 및 법적 조연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촉진

아.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 제공
자.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 상호 교환 및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모든 장애 제거

제3장 아동의 반환

제8조

양육권이 침해되어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아동의 상거소의 중앙당국 또는 그 밖의 모든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대하여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의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한 경우, 아동의 생년월일

다. 신청인의 아동반환 청구의 근거

라. 아동의 소재 및 아동과 함께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신청서에 다음을 첨부하거나, 다음에 의해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마. 모든 관련 결정 또는 합의의 인증등본

바. 아동의 상거소국의 중앙당국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자격 있는 자가 발급한 그 국가의 관련 법에 관한 증명서 또는 선서진술서

사. 그 밖의 모든 관련 서류

제9조

제8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당국은 아동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직접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하고, 촉탁 중앙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

아동소재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한다. 관련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절차개시일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신청인

또는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촉탁국 중앙당국의 신청에 따라 지연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수탁국의 중앙당국이 회답을 받은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회답을 전달한다.

제12조

아동이 제3조상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를 당했고,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에 그러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련 당국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아동의 반환을 역시 명한다.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다른 국가로 탈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거나 아동반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 아동의 일신보호를 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함 또는

나.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음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동 반환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가 규정하는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 및 행정 당국은 아동의 상거소의 중앙당국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제공된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고려한다.

제14조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상거소국의 법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이 아동의 상거소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경우라면 적용되었을 그 법의 증명 또는 외국결정의 승인을 위한 특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곧바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하기 전에 그 이동 또는 유치가 협약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나 그 밖의 확인을 아동의 상거소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그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결정 또는 그 밖의 확인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신청인이 그러한 결정 또는 확인을 취득하도록 가능한 한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제16조

제3조에서 의미하는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의 통지를 받은 후,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있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아동이 반환되지 않음을 결정할 때까지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신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양육권의 본안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탁국에서 양육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거나 승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

이 장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에 관한 결정은 어떠한 양육문제의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수탁국의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반환은 거부될 수 있다.

제4장 면접교섭권

제21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추진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아동 반환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면접교섭권의 평화로운 향유 및 그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협력의무를 진다. 중앙당국은 가능한 한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체계화하거나 보호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의 수행을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일반 규정

제22조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상의 비용과 지출의 지급보증을 위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담보, 보증 또는 예치금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식도 요구될 수 없다.

제24조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그 밖의 서류는 자국의 언어로 작성하고,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 중의 하나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그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를 함으로써 그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그 밖의 서류에 프랑스어 및 영어 모두는 아니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

체약국의 국민 및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고 그곳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각 중앙당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체약국의 중앙당국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은 이 협약에 따라 제기된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히, 절차 또는 적절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조언자의 참여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지출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반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를 함으로써 자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에 관한 제도에 의해 지불할 수 있는 한도 외에는 이전 문단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자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아동의 반환을 명하거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령을 발함에 있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적절한 경우, 아동을 이동하거나 유치한 자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한 자에게 여행비용,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발생한 비용 또는 지급된 비용, 신청인의 변호사 비용 및 아동반환비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 의하여 또는 신청인을 위하여 발생한 필요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이 협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중앙당국은 그 신청을 수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 중앙당국은 신청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청을 전달한 중앙당국에게 그 이유를 즉시 통지한다.

제28조

중앙당국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임장을 신청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이 협약은 제3조 또는 제21조에서 의미하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되거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직접 제출된 신청은 그것에 첨부되거나 중앙당국에 의해 제공된 문서 및 그 밖의 정보와 함께 다른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

아동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 단위별로 적용 가능한 법제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국가와 관련하여

가. 그 국가에 있어서 상거소란 그 국가의 하나의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상거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상거소국의 법이란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는 그 국가의 지역 단위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2조

아동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각 인적 분류에 적용 가능한 법제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국가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법이란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3조

각 지역 단위마다 아동의 양육에 관한 개별 법규를 가진 국가는, 통일된 법제를 가진 국가가 이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4조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 협약과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당국의 관할권 및 증거법에 관한 1961년 10월 5일 협약」의 양 협약에 둘 다 가입된 당사국간에는 이 협약이 우선한다. 그 밖에 이 협약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실시를 위하여 문제발생국과 수탁국 간의 유효한 국제 법률문서 또는 수탁국의 그 밖의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협약은 체약국들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에 발생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에 대해서만 체약국들 간에 적용된다.

제39조 또는 제40조 하에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체약국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 단위 또는 지역 단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36조

이 협약 중 어떠한 조항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이 아동의 반환에 대한 제약을 한정하기 위하여 그들 간에 그러한 제약을 내포하는 협약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장 최종조항

제37조

이 협약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제14회 회기 당시에 회원국이었던 국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며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제38조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이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가입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가입 후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회원국도 그러한 선언을 해야 한다. 그 선언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며 이 외무부는 그 인증등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국에 송부한다.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 있어서 수락선언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국제관계를 위하여 자국이 책임지는 모든 영역이나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협약이 미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될 당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선언 및 이후의 적용범위 확장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제40조

이 협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법제가 적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단위를 가진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이 협약이 그 지역 단위의 전부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만 미친다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선언은 언제라도 또 다른 선언을 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선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되며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단위를 명시한다.

제41조

체약국이 행정·사법·입법의 권한을 그 국가 내의 중앙당국 및 다른 당국에 분배하는 정부 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서명이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가입 또는 제40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의 내부적 권한분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모든 국가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까지 또는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당시에 제24조 및 제26조 세 번째 문단 규정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그 외의 유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는 언제라도 이미 행해진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유보의 효력이 종료된다.

제43조

이 협약은 제37조 및 제38조에서 규정된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그 이후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 1) 그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
- 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협약이 미치는 지역 또는 지역 단위에 대해서는 그 조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

제44조

협약은 제43조 첫 번째 문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는 그 후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협약은 폐기되지 않는 한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모든 폐기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폐기는 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 또는 지역 단위에 한정할 수 있다.

폐기는 이를 통보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 밖의 체약국에 대해서는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45조

네덜란드 외무부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 및 제38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1) 제37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수락과 승인
- 2) 제38조에 규정된 가입
- 3) 제43조에 따라 협약이 발효하는 날짜
- 4) 제39조에 규정된 적용범위의 확장
- 5) 제38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선언
- 6) 제24조 및 제26조 세 번째 문단에 규정된 유보 및 제42조에 규정된 유보의 철회
- 7) 제44조에서 규정된 폐기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0년 10월 25일에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1통의 원본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제14회 회기 당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각 회원국에 송부된다.

유보

협약 제42조 및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기타 서류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협약 제42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에 관한 제도에 의해 책임지는 한도 이외에는 제26조 두 번째 문단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자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1.] [법률 제11529호, 2012. 12. 11., 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소재 발견
2.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3.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본안 재판을 중지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2. 인터넷·신문·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3.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조사
4. 각 계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5.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제3장 재판절차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2조(청구권자 등)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행명령 등) ①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번역문)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1529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각 체약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1.] [법무부령 제784호, 2013. 2. 28., 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다만,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탈취된 아동의 자발적 반환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4.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및 아동이 해당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5.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6. 체약국에서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와 신청인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7. 그 밖에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에 대한 해당 체약국 공용어로 된 번역문 또는 해당 체약국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당국(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신청 등 전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협약 제3장 또는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통계 수집)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법무부령 제784호, 2013. 2. 2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정 2013. 5. 1. [대법원규칙 제2465호, 시행 2013. 5. 1.] 법원행정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지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 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부 칙 〈제2465호, 2013.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정 2024. 1. 10. [재판예규 제1869호, 시행 2024. 4.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을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아동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집행보조자의 수당)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
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개정 2025. 1. 15. [재판예규 제1894호, 시행 2025. 2.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①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에 따른 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유아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아의 연령, 유아의 양육 및 생활상황,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유아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유아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유아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유아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유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유아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유아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유아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유아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유아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유아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유아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집행보조자의 수당) 유아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
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유아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03.09.17 제917호)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5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유아 관련 전문가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한 내규

개정 2025.01.16. [법원행정처내규 제135호, 시행 2025. 2.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 ① 법원행정처장은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적정 수의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유아 관련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아동 관련 전문가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 또는 재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중에도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유아 및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1 양식의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은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제6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6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⑤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 재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 그 사실을 각급 법원장, 지원장 및 집행관사무소 대표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경력카드 작성 및 관리)

법원행정처장은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별지 2 양식의 경력카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집행관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장, 지원장 및 집행관사무소 대표 집행관에게 제공한다.

제4조(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평가)

집행관은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건의 집행이 완료된 날(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집행 불능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별지 3 양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6. 제13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아 및 아동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研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와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 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절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현안 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 백광균	2020. 11. 6.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 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현안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2021. 10. 14.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라오스·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현안 1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2022. 7. 8.
현안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2022. 12. 12.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열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및 신속화 방안 - 민·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2025. 4. 23.
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2025. 5. 14.
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2025. 5. 20.
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2025. 5. 27.
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2025. 7. 10.
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2025. 7. 11.
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2025. 7. 17.
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 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2025. 7. 23.
현안 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5. 4. 7.
현안 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2025. 4. 8.
현안 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5. 4. 11.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2025년 7월 14일 인쇄

2025년 7월 23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376-8 95360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